

# 신흥국의 세정연구

## 인도

2022. 12.



· 연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권순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박하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이나현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시후

· 책임의 면제(Disclaimer):

각 국가의 세정은 그 국가의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므로 가장 최신의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 보고서는 각국의 세정을 이해하는 최소한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최신 세정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각 국가의 법령·과세관청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합니다.

# 목 차

제1편 총론	1
제1장 경제·사회 환경 및 진출 규모	3
I. 경제·사회 환경	3
1. 경제 환경	3
2. 사회 환경	4
II. 한국인 진출 규모	5
제2장 조세제도	7
I. 역사적 배경	7
1. 주요 조세 제도의 변화	7
2. 과세당국의 구조	7
II. 조세 체계	14
1. 조세법의 범원성	14
2. 조세 구조	14
III. 세무행정	16
1. 세무조사	16
2. 조세불복제도	18
제3장 최신 조세제도 동향	22
1. 소비세 폐지 후 GST 도입	22
2. 부유세 폐지	22
3. 배당분배세 폐지	23
4. 새로운 조세제도(new regime) 도입	23
제2편 주요 세법	25
제1장 소득세	27
I. 개관	27

II. 납세의무자	28
1. 정규거주자(Resident and Ordinarily Resident, ROR)	28
2. 비정규 거주자(Resident but Not Ordinarily Resident, NOR)	30
3. 비거주자	31
III. 법인 과세대상 소득	31
1. 사업소득 또는 전문적 소득(Profits and gains of business of profession)	32
2. 자본소득(Capital gain)	41
3. 기타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s)	50
IV. 개인 과세 대상 소득	54
1. 근로소득(Salaries)	55
2. 거주용 부동산 소득(Income from House Property)	60
V. 비과세 소득	62
VI. 공제 항목	65
1. 비용 공제	65
2. 공제가 불가능한 비용	66
VII. 납부세액 산출	67
1. 손실공제	67
2. 이월공제	68
3. 소득공제	69
4. 세율	70
5. 납부세액 산출 흐름	85
VIII. 신고·납부 및 징수체계	86
1. 신고	86
2. 납부	90
IX. 원천공제제도	106
1. 원천공제제도 일반	106
2. 원천공제 대상	107
3. 원천공제 납부 절차 및 제재	109

# 목 차

<b>제2장 상품 및 서비스세(GST)</b> .....	<b>110</b>
I. 개관.....	110
II. 납세의무자.....	111
III. 과세대상 거래.....	112
1. 재화의 공급.....	112
2. 용역의 공급.....	113
3. 공급 장소 및 시기.....	114
IV. 과세표준 및 세율.....	117
1. 과세표준.....	117
2. 세율.....	118
V. 영세율 및 면세.....	120
VI. 산출세액.....	121
1. 매입세액공제.....	121
2. 납부세액의 산출.....	123
VII. 신고 및 납부.....	125
1. 신고.....	125
2. 납부.....	126
3. 이자 및 과태료.....	127
VIII. 환급.....	128
IX.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129
1. 사업자 등록.....	129
2. 세금계산서.....	132
<b>제3장 국제조세</b> .....	<b>140</b>
I.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과세.....	140
1. 일반.....	140
2. 고정사업장.....	141

II. 이중과세 방지조치.....	142
1. 일반.....	142
2. 인도의 이중과세 방지조약 체결 현황.....	142
3. 일방적 이중과세 방지조치.....	146
<b>제4장 기타조세.....</b>	<b>148</b>
I. 연방정부 소비세.....	148
1. 과세대상.....	148
2. 세율.....	148
3. 신고 및 납부.....	149
4. 제재.....	150
II. 인지세.....	150
1. 과세대상.....	150
2. 세율.....	151
3. 신고 및 납부.....	154
III. 증권거래세.....	160
1. 과세대상.....	160
2. 세율.....	160
3. 이자 및 과태료.....	161
<b>제3편 투자환경, 투자정책 및 투자이슈.....</b>	<b>163</b>
<b>제1장 투자환경.....</b>	<b>165</b>
I. 입지.....	165
1. 입지여건 및 비용.....	165
2. 주요 주별 부지 인센티브.....	166
II. 노무.....	167
1. 임금수준.....	167

# 목 차

2. 인도의 노동시장	168
3. 사회보험제도	169
4. 노무관리	169
5. 노사분규	170
III. 지식재산권	171
1. 지식재산권 개요	171
2. 지식재산권 주요법령	172
IV. 물류	172
1. 해상운송	172
2. 항공운송	173
3. 육상운송	173
V. 공공서비스	173
VI. 법인 설립	174
1. 회사설립제도	174
2.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175
<b>제2장 외국인 투자정책 및 투자이슈</b>	<b>176</b>
I. 투자정책	176
1. 외국인투자법	176
2. 외국인투자 제외 및 제한업종	176
3. 인도의 투자유치기관	177
II. 투자이슈	177
1. 인도 정부의 투자 이슈	177
III. 유관기관	178
<b>참고문헌</b>	<b>179</b>

## 표 목차

### 제1편 총론

〈표 1-1-1〉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입 실적.....	6
〈표 1-1-2〉 인도 진출 한국 금융기관.....	6
〈표 1-1-3〉 한국의 대인도 투자 현황.....	6
〈표 1-2-1〉 CBTD 각 위원에 배당된 업무 .....	10
〈표 1-2-2〉 인도의 조세체계.....	14
〈표 1-2-3〉 GST로 흡수된 간접세 항목.....	15
〈표 1-2-4〉 Faceless e-assessment 절차.....	17
〈표 1-2-5〉 심사청구 비용.....	19
〈표 1-2-6〉 심판청구 비용.....	20

# 목 차

## 제2편 주요 세법

〈표 2-1-1〉 인도 거주자 판단요건	30
〈표 2-1-2〉 인도 비정규 거주자 판단요건	31
〈표 2-1-3〉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감가상각률	39
〈표 2-1-4〉 자산별 장·단기 자산 구분	43
〈표 2-1-5〉 과세연도별 물가지수	44
〈표 2-1-6〉 무상취득 또는 저가매입 시 기타소득금액	51
〈표 2-1-7〉 퇴직적립금 과세체계	57
〈표 2-1-8〉 거주용 부동산 소득 계산방법	61
〈표 2-1-9〉 주요 비과세 항목	64
〈표 2-1-10〉 소득별 손실과 상계가능한 소득	68
〈표 2-1-11〉 이월 가능한 공제	69
〈표 2-1-12〉 주요 소득공제 항목 및 허용 한도	69
〈표 2-1-13〉 법인의 소득세율	71
〈표 2-1-14〉 60세 이상 80세 미만 개인 거주자 세율	71
〈표 2-1-15〉 80세 이상 개인 거주자 세율	72
〈표 2-1-16〉 기타 개인 세율	72
〈표 2-1-17〉 자본이득세에 대한 자산별 세율	72
〈표 2-1-18〉 새로운 조세체계하에서의 세율	73
〈표 2-1-19〉 구 제도와 비교 시 새로운 제도가 더 나은 경우	75
〈표 2-1-20〉 섹션 115BAA 적용에 따른 유효 과세율	77
〈표 2-1-21〉 법인의 부가세	77
〈표 2-1-22〉 개인의 부가세	78
〈표 2-1-23〉 한계 경감(개인/HUF/AOP/BOI/법적 납세의무자)	79
〈표 2-1-24〉 한계 경감(법인)	79
〈표 2-1-25〉 MAT 이월공제액에 의한 세액조정 예시	82
〈표 2-1-26〉 조정 총소득 계산	83

〈표 2-1-27〉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제출 기한.....	87
〈표 2-1-28〉 주요 가산세 항목 및 가산세액.....	88
〈표 2-1-29〉 중간예납 비율.....	90
〈표 2-1-30〉 주요 원천징수 대상.....	106
〈표 2-2-1〉 GST로 통합된 인도의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간접세 및 부과금.....	110
〈표 2-2-2〉 인도 GST의 세율.....	119
〈표 2-2-3〉 간이과세사업자 적용 세율.....	119
〈표 2-2-4〉 매입세액공제 적용 순서.....	121
〈표 2-2-5〉 유통 단계상 GST 부과 흐름도.....	124
〈표 2-2-6〉 GST 신고서식 및 제출 기한.....	126
〈표 2-2-7〉 GST 납부 및 환급 관련 지연 이자표.....	127
〈표 2-3-1〉 비거주 외국인 과세대상 소득 관련 정리.....	140
〈표 2-3-2〉 인도의 이중과세 방지조약 체결 국가.....	143
〈표 2-4-1〉 인도의 연방정부 소비세 세율.....	149
〈표 2-4-2〉 동산 및 부동산 양도와 채권에 적용되는 연방정부 인지세 세율.....	152
〈표 2-4-3〉 임대 증서에 적용되는 인지세 세율.....	153
〈표 2-4-4〉 인도의 증권거래세 세율.....	160

### 제3편 투자환경, 투자정책 및 투자이슈

〈표 3-2-1〉 유관기관.....	178
---------------------	-----

# 목 차

## 그림 목차

### 제1편 총론

[그림 1-2-1] 인도 재무부 조직 구조.....	9
[그림 1-2-2] CBDT 조직 구조.....	12
[그림 1-2-3] CBIC 조직 구조.....	13
[그림 1-2-4] 행정심 구조.....	18
[그림 1-2-5] 사법심 구조.....	18

### 제2편 주요 세법

[그림 2-1-1] 차감할 납부세액 산출 도식.....	85
[그림 2-1-2] (부록1) 소득세 신고 서식(Form ITR-1).....	91
[그림 2-1-3] (부록1) 소득세 신고 서식(Form ITR-3).....	93
[그림 2-1-4] (부록1) 소득세 신고 서식(Form ITR-5).....	98
[그림 2-1-5] (부록1) 소득세 신고 서식(Form ITR-6).....	102
[그림 2-2-1] (부록1) GST 신고 서식 (매출서식 Form GSTR-1).....	135
[그림 2-4-1] 물리적 인지 예시 (인화식 인지).....	155
[그림 2-4-2] 물리적 인지 예시 (날인 형식).....	156
[그림 2-4-3] e-스탬핑 예시.....	157
[그림 2-4-4] 하리아나 주의 디지털 인지 예시.....	158
[그림 2-4-5] NeSL의 디지털 인지 예시.....	159

• 신흥국의 세정연구 인도 •

# 제1편 총론

제1장 경제·사회 환경 및 진출 규모

제2장 조세제도

제3장 최신 조세제도 동향



# 제1장 | 경제·사회 환경 및 진출 규모

## I 경제·사회 환경

### 1. 경제 환경<sup>1)</sup>

인도의 2020년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는 약 9조달러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고 있으며,<sup>2)</sup> 소비 시장 역시 13억 6천만명 인구 중 구매력 있는 중산층이 6억명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중산층의 규모는 2000년대 이후 이어진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1일 생활비가 1.9달러 미만인 인구가 20%에 달하는 등 극빈층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기도 하나,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인 억만장자 역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이러한 초고액 자산가 수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는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중에서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꾸준히 이어진 경기 부진으로 인해 2012년부터 2년간 5% 미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모디 총리의 국민민주연합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경제 개혁으로 2014년 이후부터 다시 7%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하여 초고속 성장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인도는 청년 노동자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나라로 현재 서남아시아 지역 최고의 경제대국이며, 이후 미국, 중국과 함께 3대 경제대국으로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는 GDP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는 다른 개발도상국과 다른 성장 모델을 취하고 있다. 주요 산업은 석유화학, 섬유화학, 기계, 제약, 보석가공, 광산업, 통신, IT 산업, 자동차, 인프라 건설업 등으로,<sup>3)</sup> 특히 IT 산업의 경우 서

1)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 경제”, [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0451/view.do?seq=22&page=1](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0451/view.do?seq=22&page=1), 검색일자: 2022. 7. 21.

2) World Bank - Data, “GDP, PPP (current international dollar)”,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PP.CD>, 검색일자: 2022. 7. 21.

3) 외교부, 국가/지역 정보,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27](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27), 검색일자: 2022. 7. 15.

비스 수출 부문에서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역시 55%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물리적인 인프라와 대외개방도를 비롯한 기업 환경, 교육과 의료 등 사회 서비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등은 열악한 수준으로, 인도는 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 순위에서 2014년 134위<sup>4)</sup>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의 대대적인 경제 개혁 및 사회 개발 정책들로 2020년에는 63위<sup>5)</sup>까지 순위가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기업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 2. 사회 환경<sup>6)7)</sup>

인도는 주(state)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를 비롯한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일찍부터 정착 되어 왔다. 인도는 의회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28개의 주와 8개의 연방직할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직할령 중 델리와 푸두체리는 자체적인 입법부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6개 직할령은 중앙에서 관할한다.

지방자치체가 잘 발달되어 있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같이 과감한 중앙집권적 개혁과 빠른 속도의 개발 추진은 어려우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도모에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다.

또한 인도 사회에는 힌두교의 기본 교리로서 카스트 제도의 관습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카스트 제도는 아리안 족이 소수의 지배 계급으로서 다수의 피지배 계급인 토착민들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 시작된 독특한 계급제도이다. 피부색과 직업에 따라 크게 최상위에 승려 계급인 ‘브라만’, 군인 및 통치 계급인 ‘크샤트리아’, 상인 계급인 ‘바이샤’와 천민 계급인 ‘수드라’로 나눌 수 있고, 각 계급 안에 다시 다양한 하위 카스트들이 존재한다. 친목은 동일 카스트 간에만 이루어지며 개인의 직업 이동이 흔하지 않아 개인이 소속된 카스트에 의해 신분이나 직업과 같은 사회적 위치가 결정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 카스트 하위 계급에 대한 교육 및 직업의 혜택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카스트 제도는 국내법상 폐지되었으나, 최근 정치인들 사이에서 카스트를 지지 기반으로 삼는

4)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2014, p. 3

5) 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 2020, p. 4

6)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 경제”, [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0451/view.do?seq=22&page=1](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0451/view.do?seq=22&page=1), 검색일자: 2022. 7. 21.

7)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 사회문화”, [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0451/view.do?seq=23&page=1](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0451/view.do?seq=23&page=1), 검색일자: 2022. 7. 21.

등 오히려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또한 실제로도 카스트 제도는 교육과 결혼, 교육, 직업 선택과 같은 개인의 전반적인 사회활동에 여전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 사회는 이러한 계급 제도를 통해 안정과 결속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했으나, 인권 침해와 사회 정체를 야기한 부정적 측면도 크다.

인도는 광대한 지역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종과 언어, 종교 등이 공존하고 있으며, 양극화된 빈부 격차와 함께 뿌리 깊은 신분 제도 등 이질성과 다양성을 함께 갖춘 사회적 분위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통과 관습을 깊이 따르고 있어 매우 보수적이며, 이러한 보수적 풍속을 해치는 외국인을 풍속 사범으로 체포하거나 처벌하기도 한다. 이러한 풍속의 일례로 복장 법령에 따라 여성들은 공적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전통 의상인 사르와르 카미즈나 사리를 입어야 하며, 일부 대학에서는 여학생에게 이를 강요하기도 한다. 또한 인도의 일부 주에서는 금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식당의 경우에도 금주일이 있거나 판매 시간이 제한되기도 한다. 또한 주류 판매 역시 일반적으로 호텔이나 대형 식당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다.

## II 한국인 진출 규모

우리나라와 인도는 1973년 처음 수교를 맺었으며, 재외국민은 2022년 현재 10,674명에 이르고 있다.

인도는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 대상 국가 중 2.42%의 비중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sup>8)</sup> 품목별로는 선박류와 자동차가 수출액이 감소하고, 철강제품을 비롯한 석유화학 등 11개 품목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무선통신기기는 124.8%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다.<sup>9)</sup> 또한 한국의 대(對)인도 수입 비중은 높지는 않으나, 2021년에는 수입액이 무려 64.4% 증가하여 전년 대비 교역 증가율이 벨기에와 호주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8) KOTRA, 무역투자 빅데이터 - “한국 무역현황”, <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korea#search/ALL/ALL/2021>, 검색일자: 2022. 7. 15.

9) KOTRA, 무역투자 24 - “국가별 시장 정보”, <https://www.kotra.or.kr/bigdata/marketAnalysis>, 검색일자: 2022. 7. 21.

10) KOTRA, 무역투자 빅데이터 - “한국 무역현황”, <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korea#search/ALL/ALL/2021>, 검색일자: 2022. 7. 15.

〈표 1-1-1〉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입 실적

(단위: 억달러,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	금액	120.3	116.0	150.6	156.1	151.0	119.4	156.0
	증감률	-5.9	-3.6	29.8	3.7	-3.3	-20.9	30.7
수입	금액	42.4	41.9	49.5	58.8	55.7	49.0	80.6
	증감률	-19.6	-1.2	18.1	18.9	-5.4	-11.9	64.4
수지		77.9	74.1	101.1	97.2	95.3	70.4	75.5

자료: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무역통계서비스, <https://stat.kita.net/newMain.screen>, 검색일자: 2022. 7. 15.

금융기관은 2022년 기준으로 총 10개 기관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 중 은행은 4개, 보험사 2개, 자산운용사 1개, 국책은행 및 자동차 금융 등 기타 금융기관이 3개이다.

〈표 1-1-2〉 인도 진출 한국 금융기관

	금융기관명
은행(4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보험사(2개)	삼성화재, 현대해상 화재보험
자산운용사(1개)	미래에셋자산운용
기타(3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현대캐피탈

자료: KOTRA 해외경제정보 Dream, “한국 기업 투자”, [https://dream.kotra.or.kr/dream/cms/com/index.do?MENU\\_ID=1850#;](https://dream.kotra.or.kr/dream/cms/com/index.do?MENU_ID=1850#;), 검색일자: 2022. 7. 15.

2021년 인도 내에 설립된 한국의 신규법인은 56개로 2019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추정되므로 이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56개 법인 중 제조업 관련 기업이 25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1-3〉 한국의 대인도 투자 현황

(단위: 천달러, 개)

	2019	2020	2021
투자금액	452,580	624,829	335,311
신규법인 수	129	75	56

자료: KOTRA, 해외경제정보 Dream, “한국 기업 투자”, [https://dream.kotra.or.kr/dream/cms/com/index.do?MENU\\_ID=1850#;](https://dream.kotra.or.kr/dream/cms/com/index.do?MENU_ID=1850#;), 검색일자: 2022. 7. 15.

## 제2장 | 조세제도

### I 역사적 배경

#### 1. 주요 조세제도의 변화<sup>11)</sup>

인도는 2017년 여러 가지 간접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한 GST 제도를 도입했다. GST 제도 시행 이전에는 인도의 간접세는 주정부별로 각각의 다른 세목과 세율을 적용하여 주 간 재화가 이동되는 경우 거래세가 부과되는 등의 복잡한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GST 제도 도입으로 인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부과하던 간접세가 GST로 통합되어 단일한 세율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GST로 인해 확보된 세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 50:50의 비율로 귀속되게 되었다. 주 간 거래에는 연방정부가 IGST(통합GST)를 부과한 후 각 주에 분배한다. 그러나 주류와 석유제품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GST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의 간접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어서 해당 재화에는 기존 간접세인 물품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증여세법은 1998년 폐지되어 자산의 무상증여는 수증자의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다. 가족 간 증여와 가족 이외의 자로부터 5만루피 이하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1985년 폐지되어 현재는 상속 및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순자산 300만루피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1% 세율로 부과하던 부유세(Wealth Tax)는 2015. 4. 1. 회계연도부터 폐지되었다.

#### 2. 과세당국의 구조

##### 가. 과세당국의 역사<sup>12)13)</sup>

11) KOTRA. 『2022년 인도 비즈니스 가이드』, 2022. p. 66.

12) Income Tax Department,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https://incometaxindia.gov.in/Pages/about-us/central-board-of-direct-taxation.aspx#cbdtl>, 검색일자: 2022. 11. 17.

13) Income Tax Department, "History of Direct Taxation", <https://incometaxindia.gov.in/Pages/about-us/history-of-direct-taxation.aspx>, 검색일자: 2022. 11. 17.

인도의 소득세 징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상위기관인 중앙수입국(Central Board of Revenue)은 1924년 중앙재정수입위원회법(The Central Board of Revenue Act)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1939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세금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를 수행하던 조직을 행정조직인 중앙수입국에서 분리하여 'Appellate Assistant Commissioners'를 따로 창설하였다. 행정과 사법의 기능이 분리된 결과 1941년 항소 재판소가 새롭게 설치되게 되었다. 1940년 인도 전역의 소득세 부서의 업무 진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목적으로 소득세 부서에 검사국을 설치하였다.

수사기법에 대한 강조로 1947년 소득과세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1956년 대법원이 해당 기구의 존재가 권리남용적 위법성을 가진다고 판결하여 폐지되었다. 그러나 소득세 부과를 위한 심도 있는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52년 조사국이 설립되었다. 1954년 부서 담당자의 업무 수행 적합성 평가가 필요해지면서 소득세 부서에 내부감사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1961년에는 최초로 세무조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더불어 소득세 담당관이 수행한 작업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중앙수입국은 설립 당시 직접세와 간접세 전부의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직접세 및 간접세 전부에 대한 관리를 한 조직이 처리하는 것에서 비효율성이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중앙수입국은 'Central Boards Of Revenue Act, 1963'에 의거, 1964년 1월 1일 직접세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와 소비세 및 관세 위원회(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로 분리되게 되었다.

직접세의 징수 및 관리를 전담하는 직접세위원회(CBDT)는 우리나라의 국세청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1964년 조직을 창설하면서 소득세법 관리에 대한 기능적 책임을 지는 법정 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각 주별로 소득세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부위원과 소득세 담당관을 두었다.

1970년까지 당국이 직접 수행하던 체납 세금의 회수 업무가 직접세위원회의 위원에게 이관되었고, 1972년 1월 1일 세금 회수 담당관제도가 도입되었다.

#### 나. 과세당국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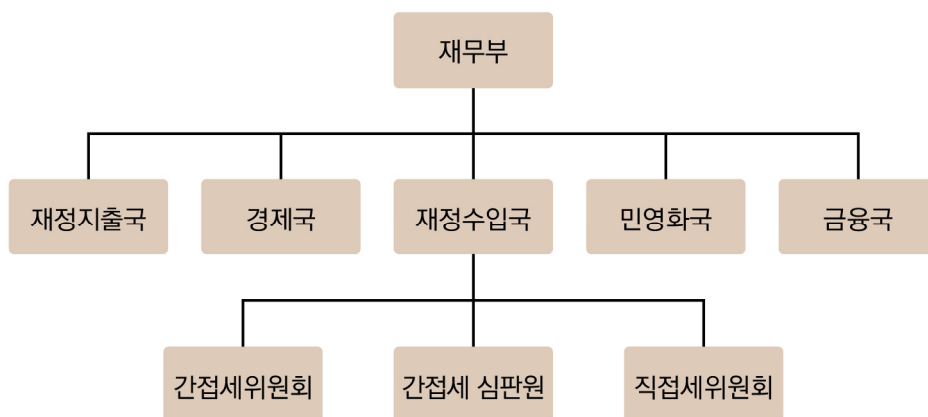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인 인도의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는 재정지출국(Department of Expenditure), 경제국(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민영화국(Department of disinvestment), 금융국(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 재정수입국(Department of Revenue) 등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부의 재정수입국이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역할과 유사하고 연방정부의 직접세는 직접세위원회(CBDT), 간접세 분야는 간접세위원회(CBIC)가 담당하고 있고 각 위원회의 장을 Chairman이라고 부르며 위원들은 Member라고 한다.

우리나라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도의 직접세 심판원(ITAT)은 법무부 산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접세심판원(CESTAT)은 재무부의 재정수입국 산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2-1] 인도 재무부 조직 구조



자료: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 세법 이해』, 2016. p. 19.

인도의 과세당국은 소득세·부유세 등의 징수를 담당하는 직접세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와 관세 및 간접세 징수를 담당하는 간접세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CBIC)로 구분된다.

그중 CBDT가 우리나라의 국세청의 역할을 수행하고 CBIC가 우리나라의 관세청 역할을 수행한다. 독립조직인 우리나라의 국세청·관세청과 다르게 두 위원회는 인도 재무부 산하 재정수입국(Department of Revenue)에 소속되어 재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1) 직접세위원회<sup>14)</sup>

우리나라의 국세청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세위원회(CBDT)는 1963년 중앙세입위원회법(the Central Board of Revenue Act, 1963)에 근거하여 기능하는 법정 기관이다.

1924년 중앙세입국법(Central Board of Revenue Act, 1924)의 제정으로 세금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상위 기관인 중앙세입국(Central Board of Revenue)이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세입국은 직접세와 간접세 모두의 징수를 담당하였으나 한 기구에서 직접세와 간접세 모두를 관리하는 것이 복잡해지자 1963년 제정된 중앙세입법(Central Board of Revenue Act, 1963)을 통해 직접세와 간접세를 각 담당하는 두 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중앙세입국은 1964년 1월 1일 직접세위원회와 소비세·관세위원회로 분리되었다.

직접세위원회(CBDT)는 우리나라의 국세청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인도 정부 재무부 산하 세무부의 일부로 직접세 정책 및 인도의 장기 계획 설립 등의 직접세 관련 행정을 담당한다. 직접세위원회는 의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되고 위원회와 집행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11개의 부속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9개의 지역을 관할한다.

〈표 1-2-1〉 CBDT 각 위원에 배당된 업무

직접세이사회의 공통 업무	소득세 부서의 구성 및 구조
	이사회 작업 방법 및 절차
	세금 징수, 탈세방지, 탈세 적발
	소득세 부서 직원 채용, 교육 및 복무 조건 조율
직접세위원장 단독 업무	행정 계획
	소득세 국장 및 소득세 간부 임원 인사 이동
	해외연수
	고충처리 및 감사 관련 업무
	세금 계획 및 직접세 관련 입법 문제
	의회의 직접세 자문위원 및 직접세 자문위원 관련 문제

14) Income Tax Department, "JURISDICTION", <https://incometaxindia.gov.in/Pages/jurisdiction.aspx>, 검색 일자: 2022. 1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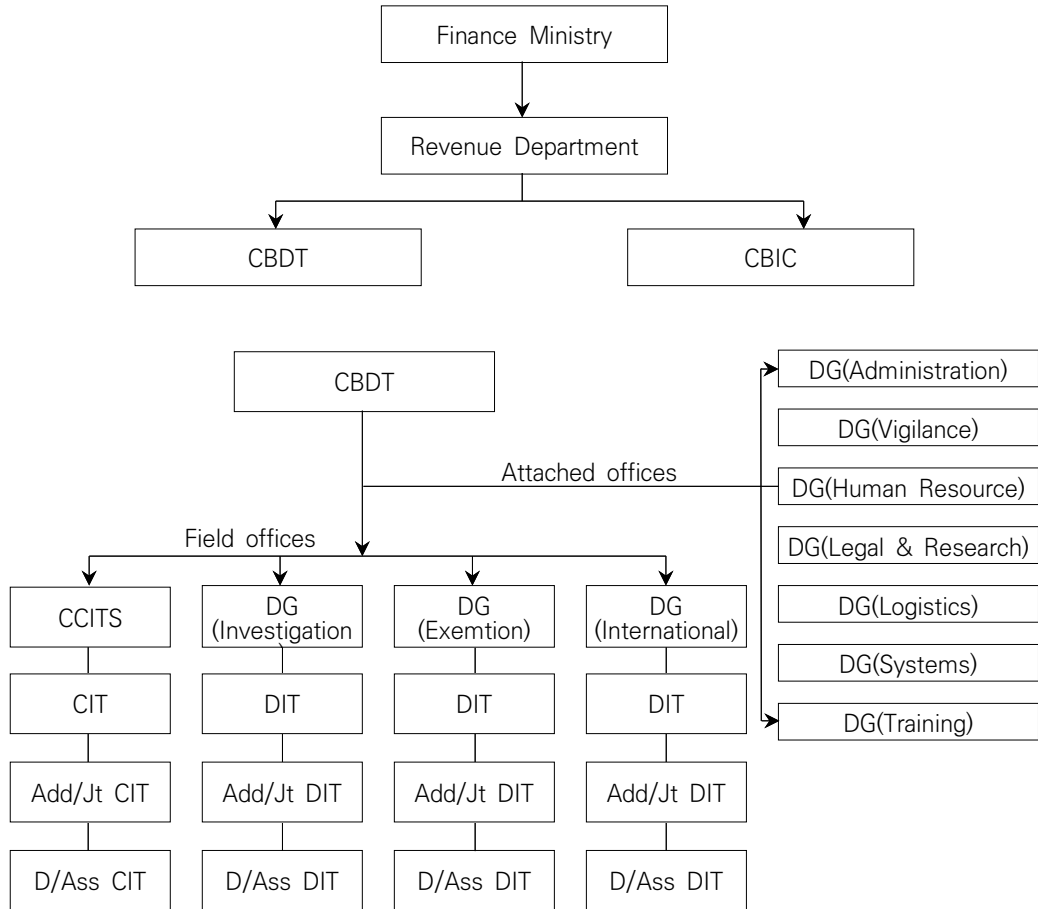
〈표 1-2-1〉의 계속

직접세위원회에 각 배당된 업무	감사 및 사법	소득세법 제288조에 따른 모든 사법적 문제
		민사소송법에 관한 모든 문제
		검사 및 공공회계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
	소득세 및 수입	소득세법, 초과이윤세법, 회사부가세법, 호텔영수증세법과 관련된 모든 사항
		이자세법, 강제예금법에 관한 모든 사항
		세입 예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조사	탈세 방지 및 적발과 관련된 기술적, 행정적 문제
		탈세 민원 처리
		소득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의 제기, 취하, 소득세 최고위원의 작업에 대한 감독
	법제 및 시스템	직접세 관리와 관련된 위원회보고서 작성 등 작업
		직접세 및 부동산 거래금지법과 관련된 조세정책 및 법률문제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모니터링
	납세자 서비스	납세자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문제
		조세회피방지 및 적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재산세법, 지출세법, 상속세법, 증여세법의 모든 사항
		이사회업무의 전반적 조정
		동부지역(Bihar, Odisha, North East, Jharkhand, West Bengal) 소득세 최고 위원들의 업무 감독 및 통제
		과세표준 확대에 관한 모든 사항
	행정	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행정 문제
		해외 연수를 제외한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
지출 예산에 관한 모든 사항		
모든 임원 및 직원들에 대한 징계 관련 사항		

자료: 인도 소득세부서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인도 전역의 field Office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감독하며 기능별로 구분된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각 위원들은 감사 및 사법, 소득세 및 수입, 조사, 법제 및 시스템, 납세자 서비스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CBDT 조직은 CBDT 업무를 보조하는 부서, 세금 징수를 수행하는 field Office, CBDT와 field Office를 지원하는 Attached Office로 이루어진다.

[그림 1-2-2] CBDT 조직 구조



- \* DG : Director General(국장급)
- \* CCIT : Chief Commissioner of Income Tax(지방청장급)
- \* CIT : Commissioner(지방국장급 또는 세무서장급 이상)
- \* DIT : Director of Income Tax(세무서장급 또는 과장급)
- \* Add/Jt CIT/DIT : Additional/Joint CIT/DIT(서기관급)
- \* D/Ass CIT/DIT : Deputy/Assistant CIT/DIT(사무관급)

자료: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 국세청 조직 관련 검토", [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0454/view.do?seq=102188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45](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0454/view.do?seq=102188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45), 검색일자: 2023. 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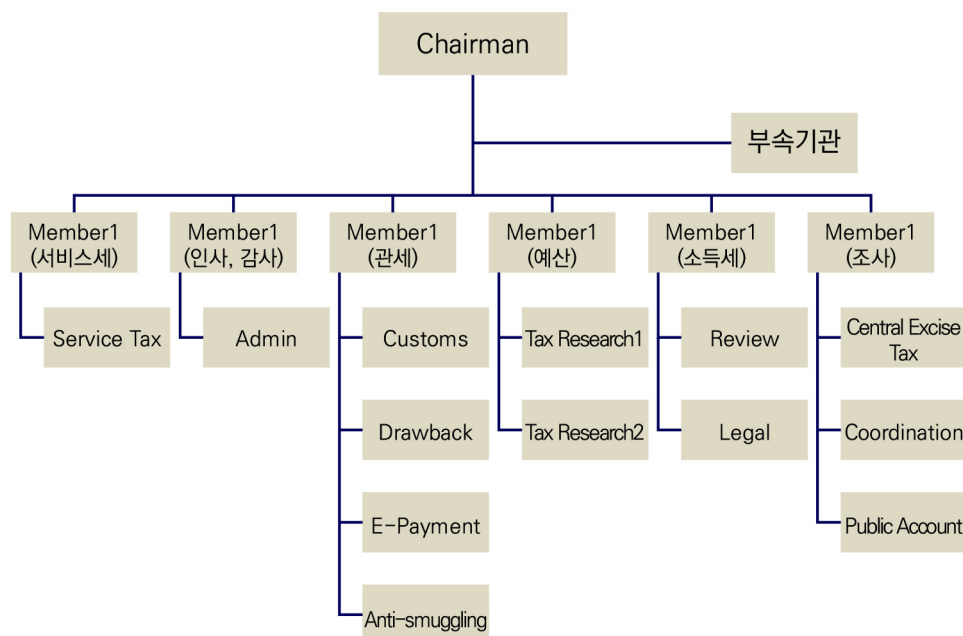
2) 간접세위원회<sup>15)</sup>

우리나라의 관세청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세위원회(CBIC)는 인도 정부 재무부 산하 세무부의 일부로 관세, 연방정부 소비세, 연방정부 물품 및 용역세, GST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정책 수립, 밀수 방지 및 관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은 관세청이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와 제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를 담당하고 국세청은 간접세와 직접세를 관할하나 인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간접세를 간접세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sup>16)</sup>

간접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와 field Office를 지원하기 위한 13개의 실무부서, 교육원, 연구소로 구성된다. 각 위원들은 서비스세, 인사·감사, 관세, 예산, 소득세, 조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1-2-3] CBIC 조직 구조



자료: 관세청, 『인도 수출통관 알기』, 2019. p. 15.

15)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Who We Are", <https://www.cbic.gov.in/htdocs-cbec/whoware/whoware>, 검색일자: 2022. 11. 15.

16) 관세청, 『인도 수출통관 알기』, 2019. p. 15.

## II 조세 체계

### 1. 조세법의 법원성

인도는 연방제 국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헌법을 통해 각 독립적 권한 행사를 보장받고 있고 재정에 대한 입법적 권한 역시 「헌법」 제246조에 근거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배분되어 있다.

「헌법」 제265조에서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조세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징수 권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각 조세의 징수를 위해서는 각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 2. 조세 구조

인도의 조세는 부과 권한의 주체에 따라 연방정부세와 주정부세로 나누어진다. 연방정부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다만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주세로 별도 과세된다)를 직접세로 부과하고 관세, 연방상품·서비스세, 통합상품·서비스세, 연방소비세를 간접세로 부과한다. 주정부는 인지세 및 재산세를 직접세로 부과하고 지출세, 주 상품·서비스세,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로 부과한다.

〈표 1-2-2〉 인도의 조세체계

연방정부	직접세	소득세(Income Tax)
	간접세	관세(Customs duty)
		연방 상품·서비스세(Central Goods&Service tax, 'CGST')
		통합 상품·서비스세(Integrated Goods&Service tax, 'IGST')
		연방소비세(Central excise duty)
주정부	직접세	인지세(Stamp duty)
		재산세(Property Tax)
	간접세	지출세(Expenditure Tax)
		주 상품·서비스세(State Goods&Service Tax)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자료: 본문 내용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가. 직접세

인도의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는데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여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로 소득세가 대표적인 직접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다른 세목으로 구분하여 개인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구조이나 인도의 소득세법 (Income Tax Act)은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 객체에 대해 동일하게 단일 소득세법상에서 계산 절차를 규정한 후 납세 의무자별로 달리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제시하는 구조이며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차이가 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납세자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되고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여 적용된다.

## 나. 간접세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GST가 대표적인 인도의 간접세이다. GST를 통해 사업자는 공급하는 서비스의 거래에 서비스가격에 대한 세금을 포함시켜 거래징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조세를 전가하게 된다.

GST는 각 주마다 개별적으로 부과하던 간접세를 단일화한 제도로 2017년 7월에 도입되었다. 주별로 서로 다른 간접세 제도는 인도 기업활동에 복잡성을 야기해 왔는데 이와 같이 상이한 간접세 항목을 GST 제도로 통합한 것이다. GST 도입 이전에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관하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부과하고 서비스의 공급에는 연방정부가 간접세를 부과하여 왔다.

〈표 1-2-3〉 GST로 흡수된 간접세 항목

연방정부 부과 세목	주 정부 부과 세목
·Central excise duty	·State VAT / Sales tax
·Duties of excise	·Luxury tax
·Additional duties of excise	·Octroi and entry tax
·Additional duties of customs	·Entertainment and amusement tax
·Special additional duty of customs	·Taxes on advertisement
·Service tax	·Purchase tax
·Central surcharges and cesses	·Taxes on lotteries, betting and gambling
	·State surcharges

자료: KOTRA, 『2022년 인도 비즈니스 가이드』, 2022. p. 66.

### III 세무행정

#### 1. 세무조사

##### 가. 익명·비대면 세무조사(Faceless e-assessment) 도입<sup>17)</sup>

2020년 8월 인도 정부는 CBDT에 익명·비대면 세무조사(Faceless e-assessment)를 도입하였다.

많은 인구를 가진 인도는 비대면 세무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납세자가 해당 부서를 반복하여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적절한 조정을 모두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납세자와 소득세 부과기관 간 디지털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며 의사소통 방식이 온라인만 가능하므로 납세자가 개인적으로 조사관을 대면하지 않게 되어 이로 인한 부패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여 비대면 세무조사를 도입하게 되었다.

익명·비대면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관(Assessing Officer)과 납세자는 온라인으로만 소통하여 대면 만남이 완전 차단되므로 세무 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접촉을 시도할 수 없고 이에 납세자 역시 담당 조사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 세무조사와 차이를 가진다.

##### 나. 익명·비대면 세무조사(Faceless e-assessment) 과정

세무조사관은 중앙세무조사센터(National Faceless Assessment Centre)를 통해 배정된다. 과거에는 관할지역의 조사관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중앙세무조사센터를 통한 배정으로 다른 관할 담당의 조사관이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과거에는 조사관 한 명이 세무조사 전 과정을 진행하였으나 익명·비대면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 검증, 검토, 기술을 담당자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세무조사의 종료는 한 명이 임의로 종료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조사관이 세무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나 익명·비대면 세무조사의 시행으로 법인세 신고 내역 및 GST 신고 내역 간 불일치 여부 등에 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 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17) Income Tax Department, "Faceless e-assessment", <https://incometaxindia.gov.in/Pages/faceless-scheme.aspx>, 검색일자: 2022. 11. 17.

비대면 세무조사의 수행을 위해 구축한 E-filling 포털을 이용하여 세무 공무원이 납세자 계정에 접속하거나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해 납세자와 상호 소통한다. 세무서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납세자는 필요한 서류 및 첨부 파일을 E-filling 포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세무서에 답변을 해야 하고 납세자의 응답은 세무서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연락 및 자료 수집 또한 온라인 시스템과 전자 메일을 통해 이루어진다.

세무조사 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뒤 부과되는 처분의 내용과 벌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납세자와의 조정이 제안되는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National e-Assessment Center에 최종 평가명령 초안을 제출하고 National e-Assessment Center는 제출된 초안을 검토하여 평가를 완료한다.

조사과정 및 결과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National e-Assessment Center 평가를 확정하여 벌금부과, 오류수정, 명령에 대한 구제 신청 등을 관할하는 평가관에게 모든 사건 기록을 전송한다.

〈표 1-2-4〉 Faceless e-assessment 절차

단계	절차	수행 내용
1단계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지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tional e-Assessment Center는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피평가자에게 조사를 통지해야 함</li> <li>· 피평가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응답을 제출할 수 있음</li> </ul>
2단계	평가 단위에 사례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tional e-Assessment Center는 자동 할당 시스템을 통해 전자 평가 목적으로 선별한 피평가자 사례를 특정 평가 단위에 할당함</li> <li>· 사례가 할당된 경우 National e-Assessment Center에 피평가자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기술부서의 기술지원을 제안할 수 있음</li> </ul>
3단계	소득세 평가명령 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명령에 따라 피평가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뒤 해당 명령의 사본과 벌금 부과를 통지함</li> <li>· 조정이 제안되는 경우 피평가자에게 명령 초안에 따라 평가가 완료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피평가자에게 통지함</li> <li>· 조사부는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National e-Assessment Center에 최종 평가명령 초안을 제출함</li> <li>· National e-Assessment Center는 평가명령 초안에 따라 평가를 완료함</li> </ul>
4단계	평가의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tional e-Assessment Center는 평가명령 초안과 비교하여 피평가자의 이익에 반하는 변경이 없는 경우 평가 확정하고 피평가자의 이익에 반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피평가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함</li> <li>· National e-Assessment Center는 평가가 완료되면 벌금부과, 오류수정, 명령에 대한 구제 신청 등을 관할하는 평가관에게 해당 사건의 모든 기록을 전송함</li> </ul>

자료: Faceless Assessment Scheme(2019) 제5조의 내용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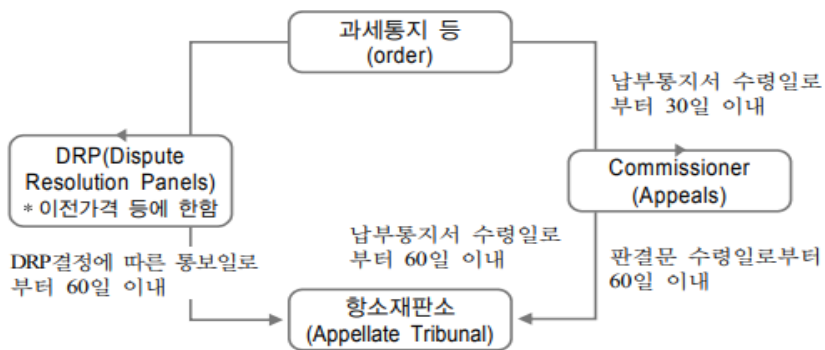
## 2. 조세불복제도<sup>18)</sup>

인도의 조세불복제도는 과세관청(Commissioner, Appeals) 또는 분쟁해결위원회 (Dispute Resolution Panel)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독립된 행정심판소인 Appellate Tribunal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법원에 제기하는 조세소송 3단계의 구조이다.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소송제기 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사법심은 고등법원이 1심, 대법원이 2심이면서 최종심의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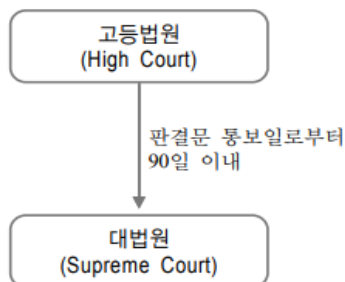
분쟁의 사전 방지를 위해 재무부 산하의 사전답변국(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AAR)에서는 납세자에게 법률적 또는 사실판단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2-4] 행정심 구조



자료: 국세청, 『인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p. 158

[그림 1-2-5] 사법심 구조



자료: 국세청, 『인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p. 158.

18) IBFD, "India - Judicial System - 2. Administrative Phase",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judsys\\_in\\_s\\_2.&refresh=1671352843183%23judsys\\_in\\_s\\_2\\_](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judsys_in_s_2.&refresh=1671352843183%23judsys_in_s_2_), 검색일자: 2022. 12. 18.

### 가. 사전답변국(AAR)

인도의 사전답변국은 재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장인 인도 대법원 퇴임판사와 법무부에서 1명, 재무부에서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답변을 구하는 질문은 2,500루피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허가된 양식의 신청서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전 판단을 구하는 질문은 과세당국의 심사 또는 법원의 재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이 없어야 하고 세금 회피와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사전답변국은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답변해야 하고 사전답변국의 답변은 구속력을 가진다.

### 나.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Resolution Panels, DRP)

「소득세법」 144C에 따른 분쟁해결위원회는 국제거래에서 이전가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분쟁해결 기구이다. 납세자는 예비과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분쟁해결위원회에서는 결정 세액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증액도 할 수 있다. 분쟁해결위원회는 청문을 완료하고 초안 명령이 납세자에게 전달된 달 말일로부터 9개월 내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다. 심사청구(Commissioner Appeals)

「소득세법」 제246조에 따라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소득세심의위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의 대상은 ① Deputy Commissioner의 명령을 제외한 명령, ②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액, ③ 벌금부과 명령, ④ 회사의 등록취소 명령 등이 있다. 이러한 소득세 심사청구는 과세통지와 같은 처분 등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납세자로부터 세금신고서가 제출되고 그에 대한 세금이 불복 청구일 전까지 납부된 경우에만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표 1-2-5〉 심사청구 비용

불복청구 금액	심사청구 수수료
10만루피 이하	250루피
10만루피 초과 ~ 20만 루피	500루피
20만루피 초과	1,000루피

자료: 인도 소득세법 제249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불복청구서가 접수된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1년 이내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라. 심판청구(Appellate Tribunal)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Appellate Tribunal는 우리나라의 조세심판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인도 법무부 산하에 구성되어 있으며 과세관청과는 독립된 기관이다.<sup>19)</sup> 「소득세법」 제252조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의 과세처분,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에 대해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납세자 및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또는 심사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표 1-2-6〉 심판청구 비용

불복청구 금액	심사청구 수수료
10만루피 이하	500루피
10만루피 초과 - 20만 루피	1,500루피
20만루피 초과	1,000루피를 한도로 불복청구 금액의 1%

자료: 인도 소득세법 제253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심판청구 전 납세자는 신고 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하며 불복세액의 20%를 추가로 예치해야 심판청구 신청이 가능하다.

Appellate Tribunal은 심판청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심판결정을 할 것이 권고된다.

마. 조세소송

1) 고등법원 소송(Appeal to High Court)

「소득세법」 제260A조에 따라 심판청구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고등법원(High court)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고등법원은 소 제기 기한을 도과한 것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를 허용할 수 있다. 고등법원은 납세자의 불복이 법률상 해석과 관련한 경우에만 심리를 진행한다.

19) 국세청, 『인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p. 162

항소가 제기된 경우 고등법원 소속 판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해당 항소사건을 심리하며 다수결에 따라 결정한다.

## 2) 대법원 소송(Appeal to Supreme Court)

「소득세법」 제261조에 따라 고등법원이 대법원에 항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고등법원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장 | 최신 조세제도 동향

### 1. 소비세 폐지 후 GST 도입<sup>20)</sup>

인도의 기존 간접세 제도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모두 부과한 간접세가 소비세의 다수를 규정했다. 주들은 주로 부가가치세(VAT)의 형태로 세금을 징수하였고, 모든 주는 다른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따라 주 간 상품 판매는 CST(연방 주세)가 적용되어 연방정부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었고, 유흥세, 입시세(入市稅), 지방세와 같은 간접세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의해 함께 부과되었다. 이러한 소비세 제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의 많은 중복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ST와 관련하여 2000년 법률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7년 후인 2017년 3월 29일 인도 의회에서 통과되어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GST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후술할 GST 장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 2. 부유세 폐지<sup>21)</sup>

기존 인도 세법은 재산에 대해 부유세(wealth tax)를 부과했다. 이러한 부유세는 납세자들 사이에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였지만, 2015년(2015-16) 세금 환수를 위해 발생한 비용이 파생된 혜택보다 더 많아 폐지되었다.

과거 부유세는 개인, HUF 및 법인에 적용되었으며, 평가일 기준 개인, HUF 또는 법인의 총 순재산이 300만루피를 초과할 경우, 300만루피 초과 금액에 대해 1%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과세대상 순 자산은 부유세 과세대상 자산 가액에서 면제대상 자산 및 자산과 관련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부유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주거용/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 또는 부속 토지, 자동차, 귀금속, 영업용 이외 보트 및 항공기, 특정지역 토지 등이 포

20) cleartax, "Goods & Services Tax GST (India) What is GST? Indirect Tax Law Explained", <https://cleartax.in/s/gst-law-goods-and-services-tax/?ref=articles-search>, 검색일자: 2022. 9. 12.

21) cleartax, "Wealth Tax India", <https://cleartax.in/s/wealth-tax/?ref=articles-search>, 검색일자: 2022. 9. 12.

함되었으며, 가족 등이 보유하여 간접적으로 소유한 자산 또한 부유세 대상 자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다. 이러한 부유세의 납기일은 소득세 신고서의 납기일과 동일했다.

### 3. 배당분배세 폐지<sup>22)</sup>

인도 소득세법은 과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제1150조에 의거하여 DDT(Dividend Distribution Tax)라는 배당분배세를 부과함으로써 투자자가 인도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배당이 법인에 의해 지급된 경우 배당을 수취하는 주주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지만 그러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2020년 예산안에서 이러한 배당분배세를 폐지하고, 일반적인 배당소득 과세와 같이 배당을 수취하는 주주가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배당과 관련한 자세한 인도 세법 내용은 후술할 기타소득 파트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 4. 새로운 조세제도(new regime) 도입

2020년 예산안 및 2019년 조세 수정 조례를 통해 인도 국세청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새로운 세율을 도입하였다. 도입된 새로운 세율은 개인의 경우 50만루피 이상, 법인의 경우 일괄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일부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새로운 조세제도가 도입되어도 기존의 세율이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양자택일할 수 있고, 어떤 제도가 더 자신에게 유리할지는 납세자 자신이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VI. 납부세액 산출 장의 세율 파트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22) cleartax, "Dividend Distribution Tax", <https://cleartax.in/s/dividend-distribution-tax/?ref=articles-search>, 검색일자: 2022. 9. 12.



• 신흥국의 세정연구 인도 •

## 제2편 주요 세법

제1장 소득세

제2장 상품 및 서비스세(GST)

제3장 국제조세

제4장 기타조세



## 제1장 | 소득세

### I 개관

인도의 과세연도는 3월 31일에 종료되므로 과세기간은 직전연도의 4월 1일부터 당기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해당 기간 동안 취득한 전체 소득을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정의한다.

인도의 소득세는 상술한 바와 같이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목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4조는 납세 의무자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소득 분류를 적용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소득은 그 원천에 따라 5가지로 구분된다.

- ① 급여 소득(Salaries)
- ② 부동산 관련 소득(Income Form house property)
- ③ 사업 또는 전문적 소득(Profits and gains of business of profession)
- ④ 자본소득(Capial gains)
- ⑤ 기타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s)

이상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총 소득금액이고 이와 같은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과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된 경우 해당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총소득에서 특정 수당(예: 손실 및 기부금)을 공제하면 과세대상 총소득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 II 납세의무자<sup>23)24)25)26)27)</sup>

인도의 소득세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소득세와 달리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 객체에 대해 동일하게 단일 소득세법상에서 계산 절차를 규정한 후 납세 의무자별로 달리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제시한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법인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liable to tax", in relation to a person and with reference to a country, means that there is an income-tax liability on such person under the law of that country for the time being in force)로 정의하며, 여기서 person이란 자연인인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의 납세의무자의 개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Income-tax Act, 1961, ACT2 제31조에서는 납세의무자인 'Person'에 대해 ① 개인, ② 힌두 비분리 가족, ③ 회사(a company), ④ 유사 파트너십(firm), ⑤ 조합, ⑥ 지방당국, ⑦ 위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인위적으로 조직된 법적 납세의무자(artificial juridical person)<sup>28)</sup>로 분류한다.

인도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6조에 의거, 거주 형태에 따라 납세부담의 범위가 결정된다.

납세의무자는 거주자(Resident in India)와 비거주자(Non-Resident in India)로 구분되고 거주자 개인과 힌두 비분리 가족은 다시 정규거주자(Resident and Ordinarily Resident, ROR)와 비정규거주자(Resudent but Not Ordinarily Resident, NOR)로 나누어진다.

### 1. 정규거주자(Resident and Ordinarily Resident, ROR)

정규거주자는 ① 인도 내에서 수령한 소득, ② 인도 내에서 발생한 소득, ③ 인도 밖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3) IBFD, "Individual Income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b\\_in\\_s\\_1.1.%23gthb\\_in\\_s\\_1.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b_in_s_1.1.%23gthb_in_s_1.1.), 검색일자: 2022. 7. 27.

24)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 세법 이해』, 2016, p. 90.

25)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 s, 61<sup>st</sup> edition, 2020, p. 166.

26) KOTRA, 『2022년 인도 비즈니스 가이드』, 2022, p. 67.

27) 국세청, 『인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p. 38.

28) 특별법 등으로 설립된 공공회사 등을 포함함

### 가. 개인(Individual)

개인의 경우는 1) 회계연도에 인도에 체류한 날이 182일 이상이거나 또는 2) 직전 회계연도 중 인도에 체류한 날이 60일 이상이면서 직전 4년 동안 체류한 날이 365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외국으로 인도되는 선박에 탑승한 선원이나 해외에서 일하는 인도 시민이 방문 목적으로 인도에 오는 경우에는 위 60일 제한이 182일로 증가하며, 회계연도 동안 외국 출처가 아닌 인도 출처에서 인도에 방문한 개인의 총소득이 150만루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 거주자로 판단하는 기간을 120일(이전 182일)로 단축한다.

2020년 5월 8일자 CBDT 시행규칙에서는 2020년 3월 22일 이전에 인도를 방문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인도를 떠날 수 없었던 개인의 경우는 거주자 판단 시 2020년 3월 22일에서 2020년 3월 31일 사이의 체류 기간은 기산되지 않음을 정하고 있다.

거주자로 판단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개인이 1) 과거 10년 중 2년 이상을 인도에서 체류한 경우 또는 2) 과거 7년 중 730일 이상을 인도에서 체류한 경우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규 거주자로 판단한다.

### 나. 법인(Company)

인도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Company)이란, ① 인도 회사법(Companies Act, 1956에 의해 설립되고 등록되었으며, 회사, 기관, 협회 또는 단체의 주요 사무소가 인도에 있는 것을 의미)<sup>29)</sup>, ②인도 외 국가의 법률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설립된 회사, ③ 1922년 인도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 회사로서 평가되거나 평가된 기관, 협회 또는 실체이거나 1970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시작되는 모든 평가 연도에 대해 이 법에 따라 평가되거나 평가된 것, ④ CBDT(직접세 중앙위원회)의 일반 또는 특별 명령에 의해 설립 및 인도인 여부에 관계 없이 명령에 의한 기간 동안 회사로서 지정된 기관, 협회 실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그 과세대상 인격이 법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거주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인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거나 사업을 인도에서 전부

29) Income-tax Act, 1961, (26)

관리·통제하는지 여부이고,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업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인도에 두고 관리·통제한 경우 거주자로 판단한다.

다. 힌두 비분리 가족(HUF)·유사파트너십(Firm)·조합(AOP)·기타 납세자

HUF는 힌두사회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혈통으로 엮힌 우리나라의 종중과 유사한 개념이다.

위 대상들은 과세기간 동안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도 내에서 경영하고 통제하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하는데, 사업에 대한 통제와 경영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표 2-1-1〉 인도 거주자 판단요건

거주자 판단	요건
개인(Individual)	· 개인이 회계연도에 인도에 체류한 기간이 182일 이상인 경우 · 개인이 직전 회계연도 중 인도에 체류한 기간이 60일 이상이고, 직전 4년 동안 체류한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법인(Company)	· 인도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업이거나 사업을 인도에서 전부 관리·통제하는 경우 · 외국기업인 경우, 전년도에 사업 전부를 인도에서 관리·통제하고 경영하는 경우
HUF, Firm, AOP, 기타납세자	과세기간 동안 실체를 가진 사업의 일부 또는 인도 내에서 경영하고 통제하는 경우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비정규 거주자(Resident but Not Ordinarily Resident, NOR)

개인과 힌두 비분리 가족은 비정규 거주자가 될 수 있다.

비정규 거주자는 ① 인도 내에서 수령한 소득, ② 인도 내에서 발생한 소득, ③ 인도 밖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인도 내에서 설립한 사업이거나 인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정규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HUF이더라도 ① 10개 회계연도 중 9개 회계연도에 인도에 비거주 상태였거나 또는 ② 7개 회계연도 중 인도에 체류한 기간이 729일 이하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정규 거주자로 판단한다.

〈표 2-1-2〉 인도 비정규 거주자 판단요건

구분	요건
개인(Individual)	· 10개 회계연도 중 9개 회계연도에 인도에 비거주 상태였던 경우 · 7개 회계연도 중 인도에 체류한 기간이 729일 이하인 경우
HUF	· 10개 회계연도 중 9개 회계연도에 인도에 비거주 상태였던 경우 · 7개 회계연도 중 인도에 체류한 기간이 729일 이하인 경우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3.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① 인도 내에서 수령한 소득, ② 인도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III 법인 과세대상 소득

인도의 소득세는 상술한 바와 같이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별로 달리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제시하므로 Income-tax Act, 1961, ACT14에서는 납세 의무자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소득 분류를 적용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한다. 해당 장에서는 인도 소득세법상 기업과 그와 유사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 객체에 대해 서술하며, 더 정확히는 Income-tax Act, 1961, ACT2의 제31조 3항에 해당하는 ‘a company’에 해당하는 과세 객체를 이해의 편의상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Income-tax Act, 1961, ACT2의 제31조 3항에 해당하는 ‘a company’란 ① 인도 회사(Companies Act, 1956에 의해 설립되고 등록되었으며, 회사, 기관, 협회 또는 단체의 주요 사무소가 인도에 있는 것을 의미)<sup>30)</sup>, ② 인도 외 국가의 법률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설립된 회사, ③ 1922년 인도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 회사로서 평가되거나 평가된 기관, 협회 또는 실체이거나 1970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시작되는 모든 평가 연도에 대해 이 법에 따라 평가되거나 평가된 것, ④ CDBT(직접세 중앙위원회)의 일반 또는 특별

30) Income-tax Act, 1961, (26)

명령에 의해 설립 및 인도인 여부에 관계 없이 명령에 의한 기간 동안 회사로서 지정된 기관, 협회 실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로서 분류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그 과세대상이 인도 법률상 '법인'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서술과 이해의 편의상 법인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ACT14에서 규정된 소득 분류는 ① 급여 소득(Salaries), ② 부동산 관련 소득(Income Form house property), ③ 사업 또는 전문적 소득(Profits and gains of business of profession), ④ 자본소득(Capial gains), ⑤ 기타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s)으로 구분되며 해당 장에서는 법인이 부담하는 과세대상 소득인 사업 또는 전문적 소득, 자본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서술한다.

## 1. 사업소득 또는 전문적 소득(Profits and gains of business of profession)<sup>31)</sup>

### 가. 사업소득 또는 전문적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인도의 기업에 부과되는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 또는 전문적 소득, 자본소득, 기타소득이다. 그중 사업 또는 전문적 소득(Profits and gains of business of profession)은 인도 「소득세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과 전문적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사업의 이익은 제조, 무역 또는 상업과 관련된 상거래 활동을 의미하며,<sup>32)</sup> 전문적 용역에 대한 소득이란 특정한 지적 기술을 통하여 제공하는 법률·의학·엔지니어링·건축·회계·기술자문·인테리어 용역 등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업 또는 전문적 소득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 ① 사업 또는 전문적 용역에 대한 수입: 전년도에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사업 또는 전문적 용역 제공에 따른 이익
- ② 다음으로 인한 보상 또는 기타 지불 :
  - (a) 인도 법인 또는 기타 법인의 업무 전체 또는 실질적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계약의 해지/수정과 관련된 자에 대한 보상
  - (b) 에이전시 조건의 종료 또는 수정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활동의 일부를 위해 인도에서 에이전시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보상
  - (c) 정부, 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을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31)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2021, p. 207.

32) Income-tax Act, 1961, 2. (13A)

법률에 따라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한 보상

- ③ 상거래, 전문가 또는 유사한 협회가 회원을 위해 수행하는 특정 서비스로부터 얻는 소득
- ④ 해외거래로부터의 소득
- ⑤ 이익 또는 특전의 가치
- ⑥ firm의 파트너로서 수령하는 대가
- ⑦ 유가증권 이자(납세의무자의 사업이 투자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으로 분류됨)
- ⑧ 철거, 파괴, 폐기 또는 이전되는 유형자산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금액
- ⑨ 투기성 거래로 부터의 수입(speculative transactions)

③의 협회로부터의 소득의 경우, 상공회의소와 같은 공동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가 협회를 뜻하며, ⑨의 투기성 거래로부터의 수입이란 인도 소득세법에서 정확히 정의하지는 않으나 주식 및 주식을 포함한 상품의 매매 계약이 상품 또는 대금의 실제 인도 또는 양도에 의해 체결되는 거래를 의미하며, 후술할 손실 공제를 위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의 수익과 분리하여야 한다.

#### 나. 사업소득 또는 전문적 소득의 비용항목

이러한 사업 또는 전문적 소득의 경우 위의 이익에 차감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소득세법」 제30조에서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 ① 사업장에 관한 비용
- ② 기계장치, 공장, 가구에 대한 수리 및 보험료
- ③ 감가상각 및 투자 수당
- ④ 차, 커피, 고무 계발 계좌 - National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의 차, 커피, 고무 협회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 계좌에 납세자가 예치 시 예치금 또는 그러한 사업 이익의 40% 중 적은 금액을 이익에서 차감한다.
- ⑤ 인도에서 석유 또는 천연가스를 탐사, 시추, 제조하기 위한 계좌 - State Bank of India 등의 은행의 특별 계좌에 납세자가 예치 시 예치한 금액과 동액 또는 그러한 사업 이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이익에서 차감한다.

- ⑥ 과학 연구를 위한 지출
- ⑦ 원격 통신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한 자본적 지출
- ⑧ 특수 사업을 위한 공제 - 특수 사업이란 콜드체인 시설 등과 관련된 유통, 저장 사업, 농작물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를 운영하는 사업, 석유, 천연가스 등을 유통, 저장하는 사업 등을 포함함
- ⑨ 기타 비용

위와 같은 항목은 비용으로 차감이 가능하지만, 지출했지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는 항목 또한 존재한다.

- ① 정당이 발행한 기념품 등의 광고비
- ② 인도 밖에서 지출했거나 인도 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 회사에 대해서 지출한 이자, 로열티, 기술 서비스를 위한 요금, 급여 등 - 인도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지출에 한하며 원천징수된 경우 비용 공제 가능
- ③ 고용인에게 제공되는 특전에 대해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세금
- ④ 소득세
- ⑤ 관계자에 대해 지급하는 시장 환율을 초과하는 이자
- ⑥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 중 10,000루피를 초과하는 부분(물품운반을 위한 수단의 운행, 임대 또는 대여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35,000루피까지 공제 가능함)
- ⑦ 승인된 펀드에서 지불되지 않은 퇴직금 지급
- ⑧ 고용주가 승인하지 않은 기금에 대한 기여
- ⑨ 법인의 사회적 책임에 소요되는 비용

피평가자에 의해 작성된 손익계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비용이 부과거나 공제 가능한 비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과세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 또는 전문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익과 손실 계정을 소득세법에 맞게끔 수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규칙을 활용한다.

- ① 이익과 손실 계정에서 차감되었으나 소득세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지출인 경우 이익에 가산하고, 비용 중 부분적으로 손실로 차감되지 않는 경우 그 부분만 이익에 가

산한다.

- ② 이익과 손실 계정에서 차감 가능한 지출이 누락된 경우, 이익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③ 과세 가능한 수익이 이익과 손실 계정에서 누락되어있는 경우, 이익에 가산되어야 한다.
- ④ 사업 또는 전문적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거나 과세되지 않는 소득 모두 이익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다. 감가상각<sup>33)</sup>

##### 1) 감가상각 대상 자산

- A. 유형자산: 건축물, 기계 또는 시설, 가구 등
- B. 무형자산: 노하우, 특허권, 저작권, 트레이드마크,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권리 등 이와 유사한 모든 상업적 권리

위와 같은 자산을 제외한 투자금, 영업권 등과 같은 지출에 대한 자산은 감가상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건축물(Building)'은 건축물이 토대로 하고 있는 토지가 사용으로써 감가되지 않는 한 감가상각 대상에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감가상각 대상으로는 도로, 다리, 배수로, 우물, 그리고 관 우물을 포함한다. 건축물은 완전히 독립되어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건축물의 일부 또한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된다. '시설'이란 배, 차량, 도서, 과학 기구, 수술 도구 등 사업 소득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들을 의미한다. '시설'에는 동물, 차나무, 건물, 가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961년 소득세법」 섹션 43에 따라 실제 비용은 '피평가자에게 자산에 발생한 비용으로, 어떤 사람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충족한 비용의 해당 부분만큼 감소된 비용'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자산 등의 취득 시 보조금 형식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러한 보조금의 가액은 감가상각 대상 가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CBDT의 수정 사항에 따라 피평가자가 자산 또는 그 일부를 취득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비용을 수표, 은행 환어음 또는 전자 청산 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10만루피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한 경우 그러한 비용은 감가상각 대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33)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270.

## 2) 감가상각 처리를 위한 조건

인도 세법상 감가상각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자산은 납세자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이 소유되어야 한다.
- (2)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납세자의 사업소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3) 'Block of Assets'(자산 묶음 단위)

인도 세법상 감가상각은 자산 묶음 단위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산 블록은 수명, 특성 및 유사한 용도에 따라 분류된다. 또한 자산 분류 시 자산군 내 감가상각 비율을 고려하여 감가상각 비율이 동일한 자산의 군별로 자산 블록으로 식별한다. 자산 묶음은 아래와 같이 크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 A. 유형자산: 건물, 기계, 식물 또는 가구
- B. 무형자산: 노하우, 특허, 저작권, 상표,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기타 사업 또는 상업적 권리

## 4) 감가상각 방법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은 전년도에 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한정하며, 결산서에 감가상각에 대해 반영했음을 불문하고 강제적으로 감가상각 처리한다. 자산은 자산의 묶음으로 분류되며, 자산의 묶음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비율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그러나 발전 또는 전력 분배와 관련된 산업 자산의 경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중 취득 자산인 경우 기초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되, 취득 후 사업에 사용한 일수가 180일 이하인 경우 정상 감가상각의 50%만을 감가상각한다. 기중 손상 또는 매각한 자산의 경우 또한 기초에 손상 또는 매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계산하며, 일할계산하지 않는다.

**예제 (블록별 자산 및 기중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 계산)**

·아래의 사례에서 감가상각 가액을 구하시오

1. 시설 및 기계 블록 기초 가액	500,000
1-1. 시설 및 기계 블록 기중 취득 가액(당기 사용 일수 180일 이하)	40,000
2. 가구 블록(기중 취득 후 당기 사용 일수 180일 이상)	20,000
3. 자동차 블록(기중 취득 후 당기 사용 일수 180일 이하)	300,000

**해설**

자산	블록1	블록2	블록3
	기계 - 15%	가구 - 10%	자동차 - 15%
기초가액	500,000	0	0
기중 취득가액(당기 사용 일수 180일 이상)	0	20,000	0
기중 취득가액(당기 사용 일수 180일 이하)	40,000	0	300,000
기중 매각가액	0	0	0
감가상각 전 장부가액	540,000	20,000	300,000
감가상각	78,000	2,000	22,500
상세 계산	$(5,00,000 \times 15\%) + (40,000 \times 15\% \times 1/2)$	$20,000 \times 10\%$	$300,000 \times 15\% \times 1/2$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	462,000	18,000	277,500

자료: cleartax, "Depreciation under Income Tax Act", <https://cleartax.in/s/depreciation-income-tax-act>, 저자 일부 수정

새로운 시설 또는 기계(선박 또는 항공기를 제외)를 취득하고 설치하여 물품 또는 물건의 제조 또는 생산 사업 또는 발전, 송전 또는 배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0%의 추가공제를 허용하며, 사업에 사용된 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 10%의 추가공제를 허용한다. 이때 10%의 잔여 추가공제는 차기에 공제를 허용한다. 단, 시설 또는 기계가 설치되기 전이거나 납세자 외의 사람이 인도 내, 외에서 사용하거나 사무실 또는 거주, 숙박지에 설치되거나 사무용품, 운송수단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2015년 3월 31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고 Andhra Pradesh, Bihar, Telangana, West Bengal에 위치하며 2015년 3월 31일에서 2020년 4월 1일 사이 시설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35%의 추가 공제를 허용한다.

예제 (기중 감가상각 자산 취득 및 감가상각 특례 계산)			
·아래의 사례에서 2021-22년도의 감가상각 가액을 구하시오			
1. 시설 및 기계 블록의 W.D.V 기초 가액		1,200,000	
2. 2020.5.15일에 생산 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시설 및 기계		1,000,000	
3. 2020.6.10일에 구매한 자산			
(i) 사무실 비품		100,000	
(ii) 게스트 하우스에 설치한 에어컨		60,000	
(iii) 차량		400,000	
4. 2020.10.11일에 생산 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시설 및 기계		300,000	
해설			
·2021-22년도 감가상각 비용의 계산			
1. 시설 및 기계 W.D.V (15%)		180,000	
2. 2020.5.15일에 생산 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시설 및 기계			
일반 감가상각 (15%)		150,000	
추가 감가상각 (20%)		200,000	350,000
3. (i) 사무실 비품 (15%)		15,000	
(ii) 게스트 하우스에 설치한 에어컨 (15%)		9,000	
(iii) 차량 (15%)		60,000	
4. 2020.10.11일에 생산 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시설 및 기계			
일반 감가상각 (7.5%)		22,500	
추가 감가상각 (10%)		30,000	52,500
		감가상각 금액	666,500
· 시설 및 기계는 15%의 감가상각률이 적용되며 2020.5.15일에 생산 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시설 및 기계의 경우 물건의 제조 또는 생산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20%의 추가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무실, 게스트 하우스, 차량의 경우 직접적으로 제조 또는 생산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가상각을 할 수 없으며, 2020.10.11일에 생산 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시설 및 기계는 사업에 사용된 기간이 180일 이하이므로 일반 감가상각 및 추가 감가상각 모두 정상 감가상각의 50%만을 허용하며, 다음 회계연도에 나머지 50%를 감가상각한다.			

자료: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280.

## 5) 감가상각의 손금 산입 한도(감가상각률)

〈표 2-1-3〉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감가상각률

Sl.No	자산 클래스	자산 유형	감가상각률
1	건물	하숙집 및 호텔을 제외한 주거용 건물	5%
2	건물	하숙집 및 호텔	10%
3	건물	목조 건축물과 같은 순전히 임시 건축물	40%
4	가구	전기 부속품을 포함한 모든 부속품/가구	10%
5	시설 및 기계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15%
6	시설 및 기계류	2019년 8월 23일 이후부터 2020년 4월 1일 이전에 구매하여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사용하게 된 렌터카를 제외한 자동차	30%
7	시설 및 기계류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트럭/택시/모터 버스	30%
8	시설 및 기계류	2019년 8월 23일 이후부터 2020년 4월 1일 이전에 구매하고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사용하게 된 임대 사업에 사용되는 트럭/택시/모터 버스	45%
9	시설 및 기계류	컴퓨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40%
10	시설 및 기계류	연례 간행물인 직업을 수행하는 평가자가 소유한 책	100%
11	시설 및 기계류	연례 출판물이 아닌 직업을 수행하는 평가자가 소유한 책	60%
12	시설 및 기계류	대출 도서관 운영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평가자가 소유한 도서	100%
13	무형자산	프랜차이즈, 상표, 특허, 라이선스, 저작권, 노하우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기타 상업적 또는 사업적 권리	25%

자료: cleartax, 'Depreciation under Income Tax Act', <https://cleartax.in/s/depreciation-income-tax-act>

## 6) 미상각 감가상각비

미사용 감가상각비는 당해 이익을 감가상각비가 초과하여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을 시 발생한다. 이러한 미사용 감가상각액은 당기에 급여 소득을 제외하는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있고 평가 연도에 관계없이 무기한 이월될 수 있으며 해당 감가상각과 관련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이월할 수 있다. 단 미상각 감가상각비를 이월한 후 차기 발생한 소득과 상계할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와 같이 당해연도 관련사항을 먼저 조정하는 등 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당기 발생한 비용(결손금)
- ② 이월된 사업 손실
- ③ 미상각 감가상각비

이러한 미상각잔액 차감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평가자는 감가상각 관련사항을 계산하기 위해 감가상각 차감 전 사업소득에 대해 별도로 유의해야 한다.

예제 (미상각 감가상각비 계산)

· A씨의 2019-20 및 2020-21의 수입은 아래와 같다.

	전년도	
	2019-20	2020-21
사업 소득 및 손실(감가상각 전)	-35,000	50,000
당기 감가상각비	25,000	30,000
거주용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	10,000	30,000

A씨의 2020-21 및 2021-22년 총소득을 구하시오.

해설

· 2020-21년 총소득 계산

거주용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	10,000
차감: 사업 소득 및 손실	10,000
총 소득	0

    ※이월 결손금 및 미흡수 감가상각비 잔액

· 사업 손실 잔액(35,000-10,000)	25,000
· 미흡수 감가상각비	25,000

· 2021-22년 총소득 계산

사업소득	50,000
차감: 당기 감가상각비	30,000
차감: 전기 이월 사업소득 손실액	20,000
총 소득	0
거주용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	30,000
차감: 전기 이월 미흡수 감가상각비	25,000
총 소득	5,000

· 당기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에 대해 결손금 차감 시 당기 사업손실과 감가상각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사업손실을 먼저 다른 소득과 상계하나, 차기에 사업소득 이익이 있고 당기 감가상각비, 이월된 사업소득 손실, 이월된 감가상각비가 있을 때는 이월된 사업소득으로부터의 손실은 (당기 감가상각을 차감한) 당기 사업소득에만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2019-20에서 사업 손실이 5,000만큼 이월되었음에도 이월된 감가상각비를 거주용 부동산 소득에서 차감한다.(다른 소득의 이익과 사업소득 손실의 관계에서 당기에는 사업소득 손실과 다른 소득이 상계 가능하지만 사업소득 손실이 이월되면 이월된 사업소득 손실은 다른 소득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월된 감가상각비 미상각액이 있으면 다른소득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VI. 납부세액 산출 장의 이월공제 파트에서 다루도록 한다.)

자료: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276.

## 7) 감가상각 자산의 기중 매각

인도 소득세법상으로는 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 자산이라 할지라도 자본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자본소득 항목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 라.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원가와 시장가격 중 작은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때 원가에는 취득을 위한 세금, 부담금, 의무금, 요금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금융자산의 경우 납세자가 그의 자본자산을 주식거래를 위한 재고자산으로 전환하고 주식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그러한 주식의 가치는 원가가 아닌 주식거래로 전환한 날의 시장가치로 평가한다. 단, 이러한 전환의 경우 자본이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 2. 자본소득(Capital gain)<sup>34)</sup>

자본소득의 경우(Capital gain) 자산의 이전으로 인해 취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여기서 과세의 대상인 'Capital asset'이란 사업과의 연관 유무를 불문하고 납세자와 관련된 자산을 의미하며, 외국 기관투자자가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Act, 1992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유가증권, 제10조 (10)항에 따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위 연계 보험증권을 의미한다. 자본자산이란 동산, 부동산, 유·무형을 불문하며, 토지, 빌딩, 공장, 기계, 투자자산, 영업권, 리스 권리, 귀금속, 지분, 라이선스 등을 포함한다. 아래와 같은 자산들은 자본자산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 ① 상업 물품: 거래를 위한 재고, 소모품 재고, 사업 소득을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등을 포함한다.
- ② 개인 사용을 위한 동산: 납세자 개인 또는 납세자와 관련된 가족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소유하는 자산(의류, 가구 포함)을 포함한다. 단, 고고학적 수집품, 도화, 조각, 예술작품, 개인 사용을 위한 보석의 경우 개인적 사용을 위한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34)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287.

납세의무가 있다.

- ③ 농지
- ④ 금채(gold bonds) 및 일정한 채권

자가 건설 물품의 경우 또한 자본자산으로 취급되며, 사업으로 인한 영업권, 자체 생성된 입차권, 무대 운반 허가 및 물품 또는 물건을 제조, 생산 또는 가공할 권리, 사업을 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 가. '양도'의 정의

자본자산은 ① 단기 자본자산, ② 장기 자본자산으로 분류된다.

단기 자본자산의 경우 양도일 직전 36개월 이하 동안 납세자에 의해 보유된 자산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도의 공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 등과 같은 금융자산의 경우, 36개월 대신에 12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납세자에 의해 보유되는 경우 단기 자본자산으로 분류되고, 상장되지 않은 회사, 토지, 건물의 지분의 경우 24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단기 자본자산으로 분류된다. 또한 사업 및 전문사업에 쓰이는 자산으로서, WDV방식의 감가상각이 허용되는 자산의 경우 항상 단기 자본자산으로 취급된다.

장기 자본자산의 경우 양도일 직전 36개월 이상 보유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단, 상장된 채권의 경우 12개월 이상 납세자에 의해 보유되는 경우 장기 자본자산으로 분류되며, 상장되지 않은 회사, 토지, 건물의 지분의 경우 2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장기 자본자산으로 분류된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경우 2017년 3월 31일 이전 양도분의 경우 3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장기 자본자산으로 취급되나, 이후 양도분의 경우 24개월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장기 자본자산으로 분류된다.

자본자산의 '거래'란 판매, 교환 또는 자산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산 내부의 권리의 소멸, 법에 의한 강제적 취득, 소유자에 의해 자산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무이표채의 상환, 사업의 유한회사로의 전환 등을 포함한다.<sup>35)</sup>

35) Section - 2, Income-tax Act, 1961-2022, (47)

〈표 2-1-4〉 자산별 장·단기 자산 구분

자산	보유기간	단기/장기
부동산	<24개월	단기
	>24개월	장기
상장 지분	<12개월	단기
	>12개월	장기
비상장주	<24개월	단기
	>24개월	장기
주식 뮤추얼 펀드	<12개월	단기
	>12개월	장기
부채 뮤추얼 펀드	<36개월	단기
	>36개월	장기
기타 자산	<36개월	단기
	>36개월	장기

자료: clear tax, “Capital Gains Tax - What is Capital Gains Tax In India, Types, Tax Rates, Calculation, Exemptions & Tax saving”, <https://cleartax.in/s/capital-gains-income>

#### 나. Capital Gain의 계산 방법

##### 1) 단기 보유 자본자산 소득의 계산

거래의 결과로 수수하거나 누적되는 가치의 결과에서 아래의 사항을 차감한다.

- ① 자본자산의 취득가액
- ② 자산의 개선을 위한 지출(자본적 지출)
- ③ 거래를 위해 지출한 비용

##### 2) 장기 보유 자본자산 소득의 계산

거래의 결과로 수수하거나 누적되는 가치의 결과에서 아래의 사항을 차감한다.

- ① 물가지수에 의해 조정된 취득원가
- ② 물가지수에 의해 조정된 자산의 개선을 위한 지출(자본적 지출)
- ③ 거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단, 정부로부터 발행되지 않은 채권 또는 사채 및 회사 또는 펀드의 지분의 경우 차감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물가지수를 통해 조정하지 않는다.)

①의 취득원가의 경우 최초 취득원가에 거래된 해의 물가지수<sup>36)</sup>를 곱한 후 최초 취득 혹은 2001. 4. 1일 중 나중의 물가지수를 나눠서 산정하고, ②의 자본적 지출의 경우 최초 지출한 자본적 지출 비용에 거래된 해의 물가지수를 곱한 후 최초 취득 시의 물가지수를 나눠서 산정한다. 이때 자본적 지출의 경우 2001. 4. 1일 이전 지출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표 2-1-5〉 과세연도별 물가지수

과세연도	물가 지수
2001-2002	100
2002-2003	105
2003-2004	109
2004-2005	113
2005-2006	117
2006-2007	122
2007-2008	129
2008-2009	137
2009-2010	148
2010-2011	167
2011-2012	184
2012-2013	200
2013-2014	220
2014-2015	240
2015-2016	254
2016-2017	264
2017-2018	272
2018-2019	280
2019-2020	289
2020-2021	301
2021-2022	317

자료: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292.

36) '물가지수'란 중앙 정부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상승률의 75% 정도를 상정하여 설정한 것이다.

**예제 (물가지수를 반영한 장기 자본소득의 계산)**

· A씨는 델리의 주택을 2000년에 100,000루피에 구입한 후, 같은 해 2개의 방과 베란다를 30,000루피를 지불하고 설치하였으며 그 후 2014년 5월에 해당 주택에 240,000루피를 지불하고 2개의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A씨는 그 후 2020년 6월에 2,500,000루피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였다. A씨의 자본소득을 계산하시오(단, 2001-02년, 2014-15년, 2020-21년의 물가지수는 각각 100, 240, 301이다)

**해설**

자본소득 계산(2021-22년)		
양도가액		2,500,000
취득가액(물가지수 반영) - $400,000 \times 301 \div 100$	1,204,000	
자본적 지출액(물가지수 반영) - $400,000 \times 301 \div 240$	301,000	1,505,000
	자본소득 금액	995,000

자료: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301.

### 3)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자본소득

인도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용 자산이라 할지라도 법인, 개인에 관계없이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손익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자본소득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경우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감가상각 규정은 자산 묶음 단위와 그에 따른 전기 상각 후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자산의 보유 기간에 따른 장·단기 자본소득 구분은 감가상각 자산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단기 자본 손익으로 동일하다.

#### 가) 감가상각 자산의 자본소득을 인식하는 경우

##### (1) 자산 묶음 단위의 자산의 일부를 양도했을 때

같은 감가상각률을 적용받는 자산 묶음 단위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인도 소득세법상 자본 소득은 양도 대가가 전체 자산 묶음 단위의 가액을 초과했을 시에만 인식된다. 즉 자산 묶음 단위의 일부만 양도했을지라도 그 대가가 그 자산 묶음 단위가 속한 자산 묶음 단위의 전체 장부상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본소득을 인식하며, 그 대가가 양도한 자산이 속한 자산 묶음 단위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소득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때 자산 묶음 단위의 일부만 양도하여 자산 묶음 단위의 나머지 자산은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무상

자산 묶음 단위로 계산하여 이미 전체 자산 묶음 단위에 대해 자본소득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해당 실물 자산 묶음 단위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다.

(2) 자산 묶음 단위의 모든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자산 묶음 단위의 모든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대가와 관계없이 자본소득을 인식한다. 이때 인식하는 자본소득은 자산 묶음 단위의 일부만 양도했을 때와는 달리 이익과 손실 양자 모두 인식할 수 있다. 즉 자산 묶음 단위의 일부만 양도한 경우 자산 묶음 단위의 전체 장부가액보다 그 대가가 클 때만 자본소득을 인식하므로 이익밖에 인식되지 않으나, 모든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대가와 관계없이 자본소득을 인식하기 때문에 양도 대가에 따라 이익과 손실 모두를 인식할 수 있다. 양도 이후에는 당연히 해당 자산 묶음 단위에는 자산이 없으므로 감가상각을 시행하지 않으나, 과거의 미인식 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와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상계한다.

(3) 감가상각 자산 양도 시의 장부가액 계산 절차

- ① 동일한 상각률을 적용받는 자산들(자산 묶음 단위)의 전년도 과세기간 시작일의 상각 후 잔액을 합산한다.
- ② 동일한 자산 묶음 단위에 전년도 새로운 자산 취득 발생 시 ①에 합산한다.
- ③ 동일한 자산 묶음 단위에서 전년도 매각 자산이 발생한 경우 총 수수한 대가를 ②에서 차감한다(인도 세법은 자산 묶음 단위를 사용하는 상각 후 잔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개별 자산의 상각 후 원가가 없으므로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에 주의한다).
- ④ 이때 자산 묶음 중 일부 자산의 매각이 발생한 경우 그 매각 대가가 자산 묶음 단위 가액보다 크거나 자산 묶음 단위의 모든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가상각비 계산 없이 자본소득을 인식한 후 자산 묶음 단위의 장부가액이 0이 되며 계산이 종료된다.
- ⑤ 자산 묶음 중 일부 자산만을 매각하고, 매각 대가가 자산묶음 단위 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본소득을 인식하지 않고 추가적인 감가상각 계산 등을 이행한다.
- ⑥ ②에서 ③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자산 묶음 단위의 장부가액으로서 차기로 이월한다.

**예제 (자산 묶음 단위 중 일부 자산을 매각한 경우 자본 이득 계산)**

· A씨는 3개의 상업용 부동산으로 구성된 자산 블록을 가지고 있으며 2019년 4월 1일 현재 해당 블록의 WDV 장부가액은 75,000,000루피다. A씨는 기존 2개의 부동산을 150,000,000루피에 매각하였다. 해당 블록의 매각으로 인한자본 이득을 계산하시오.

**해설**

## 자본소득 계산

해당 자산 묶음 단위 기초 WDV	75,000,000
해당 연도 구입한 자산	0
자산 묶음 장부가액	75,000,000
차감: 자산 판매, 폐기, 철거, 파괴에 대한 대가	(150,000,000)
잔여 자산 묶음 가치	(75,000,000)
차감: 소득세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0
기말 자산 묶음의 WDV	0
단기 자본 자본 소득	75,000,000

동일한 자산 묶음 단위에서 전년도 매각 자산이 발생한 경우 총 수수한 대가(150,000,000)를 장부가액(75,000,000)에서 차감하며, 이때 매각 대가가 자산 묶음 단위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가상각비 계산 없이 자본소득을 인식한 후 자산묶음단위의 장부가액이 0이 되며 계산이 종료된다

자료: Faceless Compliance, "How to compute capital gains on business asset chargeable to depreciation?", <https://facelesscompliance.com/5201/how-to-compute-capital-gains-on-business-asset-chargeable-to-depreciation>

**예제 (감가상각 및 자산묶음단위의 모든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 이득 계산)**

·2018년 4월 1일의 기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15%의 정률 적용)

자산 A	100,000
자산 B	200,000
자산 C	300,000
자산 묶음 총가액	600,000

이때, i) 2019-20년도에 자산 A를 120,000에 매각 후 새로운 자산 D를 250,000에 매입한 경우의 자본소득을, 그후 2020-21년도에 자산 B,C,D를 ii) 600,000에 매각하고 5,000의 비용을 지불한 경우, iii) 400,000에 매각하고 5,000의 비용을 지불한 경우의 자본소득을 구하시오.

**해설**

i) 2019-20년도에 자산 A를 120,000에 매각 후 새로운 자산 D를 250,000에 매입한 경우

자본소득 및 장부가액 계산(2019-20)

2018년 4월 1일 자산 묶음(A,B,C)의 WDV 장부가액	600,000
차감: 2018-19년도 감가상각(15%)	90,000
2019년 4월 1일 자산 묶음(A,B,C)의 WDV 장부가액	510,000
가산: 자산 D 매입액	250,000
	잔액
차감: 자산 A 매각액	760,000
2019-20 자산 묶음 단위(B,C,D) 감가상각 장부가액	120,000
차감: 2019-20년도 감가상각(15%)	640,000
2019년 4월 1일 자산 묶음(B,C,D)의 WDV 장부가액	96,000
	544,000

※ 자산 묶음 중 일부 자산만을 매각하고, 매각 대가가 자산묶음 단위 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본소득을 인식하지 않고 추가적인 감가상각 계산 등을 이행한다

ii) 2020-21년도에 자산 B,C,D를 600,000에 매각하고 5,000의 비용을 지불한 경우

자본소득 및 장부가액 계산(2020-21)

2019년 4월 1일 자산 묶음(B,C,D)의 WDV 장부가액	544,000
차감: 자산 B,C,D의 매각 대가	600,000
차감: 매각비용	5,000
단기 자본소득	51,000

iii) 2020-21년도에 자산 B,C,D를 400,000에 매각하고 5,000의 비용을 지불한 경우

자본소득 및 장부가액 계산(2020-21)

2019년 4월 1일 자산 묶음(B,C,D)의 WDV 장부가액	544,000
차감: 자산 B,C,D의 매각 대가	400,000
차감: 매각 비용	5,000
단기 자본 손실	149,000

자료: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294.

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본이득은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더라도 일반적인 감가상각 자산의 자본소득 계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본소득을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일반적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인 상각 후 원가를 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즉

상각 후 장부가액에서 추가 취득액과 매각 및 제거한 자산가액을 차감한 후의 장부가액이 자본소득세 계산 시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취득가액에서 수령한 대가를 차감하여 자본 소득세를 산출한다.

#### 라. 과세에서 제외되는 자본소득

거주자를 위해 사용된 자산으로부터의 자본소득은 개인 또는 Hindu 비분리 가족이 양도 전 24개월 이상 소유한 건물이 거주용 집으로 사용되어 거주용 부동산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양도 1년 전 혹은 2년 후에 다른 주택을 구매하거나, 양도 후 3년 내에 다른 주택을 건축해야 한다.

농지를 양도하여 얻은 자본소득은 개인 또는 Hindu 비분리 가족이 양도 전 24개월 이상 소유한 토지가 농업 용도로 사용된 경우를 의미하며,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구매하여야 한다.

법률상 사유로 인해 토지 또는 건물이 강제 수용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산업용으로 사용한 양도 전 24개월 이상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에 한하며, 납세자는 양도 후 3년 이내 다른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업을 이전 또는 재정립하거나 설립할 목적으로 다른 건물을 건설해야 한다.

특정한 자산 또는 거주용 주택 외의 자산에 대한 장기 보유 자본자산 소득 중 거주용 주택 외의 자산에 대한 경우 개인 또는 Hindu 비분리 가족이 소유하고 장기 보유한 자본자산 소득은 과세대상이며, 요건(양도 1년 전에 주택을 구매했거나 양도 후 2년 내에 다른 주택을 구매하거나 양도 후 3년 내에 다른 주택을 건축한 주택)에 부합하는 주택 외의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비과세된다.

#### 마. 취득가액의 산정 및 자본적 지출

취득가액이란 납세자에 의해 취득된 자산의 가치다. 이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어떠한 비용이라도 취득가액으로 포함됨을 의미한다. 자본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대여한 자금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다른 사유로 비용으로 사전에 처리되지 않는 한 취득가액을 구성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자본자산에 대해 어떠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데 발생하는 자본 지출을 의미한다. 자본적 지출에는 법인의 영업권 또는 물품 또는 물건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의 권리인 자본자산과 관련한 지출은 제외되며, 2001년 4월 1일 이후 자본적 지출의 용도로 지출된 비용만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 자본소득에서 차감된다.

#### 바. 자본소득 관련 비용

자본소득 대상 자산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경우 자본소득 계산 시 차감을 허용한다. 이러한 비용으로는 광고비용, 브로커에 대한 수수료,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등록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또한 매매계약의 사항 중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경우,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피거에 대한 비용은 매매비용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 3. 기타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s)<sup>37)</sup>

인도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 별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s)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소득과 관련해서는 기타소득 파트에서 다루도록 한다.

기타소득의 경우(income from other sources) 다른 소득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기타소득에는 배당, 복권, 십자퍼즐, 도박, 카드게임, 경마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으로부터의 소득, 채권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기계, 공장,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 외의 소득, 무상 또는 저가매입의 경우가 포함된다(단, 무상 또는 저가매입이 일정한 직계 인척 간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으며, 부동산, 주권, 채권, 보석, 골동품, 그림, 조각, 예술품 등을 의미함). 다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소득들 또한 경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 가. 기타소득으로 포함되는 소득

- ① 배당
- ② 복권 당첨금, 십자말 퍼즐, 경마를 포함한 경주, 카드게임 등으로부터 얻은 도박 또는 유사한 종류의 소득
- ③ 1948년 보험법에 따라 적립금, 연금 기금 또는 기금 설립에 대한 기여로 받은 금액

37)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2021, p.339

- ④ 채권으로부터의 이자소득
- ⑤ 기계, 시설, 가구를 임대하여 얻은 수익 중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
- ⑥ 상여금을 포함하여 Keyman 보험으로부터 얻은 수입(사업소득 또는 급여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⑦ 직계존비속 외의 자로부터 증여, 상속을 제외한 방식으로 자산을 무상취득, 또는 저가 취득한 경우 무상취득하거나 지급한 대가가 공정 시장가액을 초과한 금액

〈표 2-1-6〉 무상취득 또는 저가매입 시 기타소득금액

수령한 자산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대가 없이 수수한 현금이 5만루피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의 총액	
부동산	대가없이 인지세상 과세표준 금액이 5만루피 이상인 경우	자산의 인지세 과세표준	
	대가인 경우	수령한 대가의 금액과 인지세상 과세표준의 차액이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5만루피 대가의 10%
부동산 외의 자산	대가 없이 공정가치 5만루피 이상의 동산을 수취한 경우	해당 자산의 공정시장 가액	
	동산의 총 공정 시장가액보다 5만 루피를 초과하는 대가	그러한 대가를 초과하는 재산의 총 공정 시장가치	

자료: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339.

### 1) 배당

인도 소득세법상 배당이란 법인이 주주에게 법인의 누적 이익의 범위 내에서 분배하거나 지불하는 것으로 법인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배하는 것, 우선주주에 대해 사채, 예금 증서 또는 보너스 주식을 분배하는 것, 청산에 의해 분배하는 것, 감자에 의해 분배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다만, 주주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누적된 이익 외의 금액이 선급금이 지급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나) 배당에 속하는 이익 분배

- ① 법인 자산의 분배를 통해 주주에게 누적 이익을 분여
- ② 법인의 누적이익을 통해 주주에게 사채 또는 예금증서를 분여하거나, 누적이익을 통

해 우선주 주주에게 추가적인 지분을 발행

- ③ 법인의 청산 시 누적 이익 중 주주에 대한 분배
- ④ 법인의 감자에 따른 누적 이익 중 주주에게 분배
- ⑤ 밀접하게 소유된 법인이 누적된 이익으로 주주에게 행하는 대출 또는 선불

나)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전액 현금 보상 조건으로 발행된 우선주 소유주의 경우 청산이나 감자에 의한 잉여자산의 분배에 대해 참여할 자격이 없다. 자금의 대출이 법인의 사업의 실질적인 부분인 법인의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주주에 의해 주어진 선불 또는 대출, 법인의 분할에 의하여 분할된 법인의 주주에게 지급된 주식의 분배, 법인이 합병계획으로 자산을 다른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의 누적이익이 이전된 자산에 포함되더라도 주주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 배당의 과세

- ① 국내 법인에 의한 배당(간주배당 포함) - 주주 또는 수취인이 수수한 내국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은 과세할 수 있다
- ② 협동조합으로부터의 배당 - 협동조합으로부터의 배당은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gross-up에 대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③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원천징수를 제외한 순금액으로 수입에 포함하나, 납세자가 이중과세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 총금액을 수입에 포함한다.

나. 기타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금액은 아래의 요소들을 포함한 관련 비용을 차감함으로써 산정된다.

- ① 증권/채권에 대한 이자(은행 또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지불하였으며 실제로 지출된 수수료 또는 보수 금액)

- ② 기계, 공장, 가구, 빌딩 등의 대여와 관련된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사업 또는 전문적 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 기계, 공장, 가구 또는 빌딩을 수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 기계, 공장, 가구 또는 빌딩의 손상, 파괴의 위험에 대비하여 지출하는 보험료
  - 기계, 공장, 가구 또는 빌딩의 감가상각비
- ③ 주택의 전대에서 발생하는 임차료, 수리비용 등
- ④ 기타소득을 위해 배타적으로 발생한 비용

#### 다. 기타소득에서 차감되지 않는 비용

- ① 납세자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지출
- ②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이자로서, 인도 외부에서 지불되고 원천징수되지 않았거나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자
- ③ 부유세 지출분
- ④ 10,000루피 또는 35,000루피(화물 운송을 위해 지출된 대여료, 운반료 등)를 초과하는 은행 계좌 또는 전자적 지불 방식 등을 통하지 않은 현금 지출분
- ⑤ 복권, 십자말 풀이, 카드게임, 기타 게임, 도박, 경마를 포함하는 경주와 관련된 비용 및 손실
- ⑥ 소득에서 제외된 수입과 관련된 비용

#### 라. 기타 고려 사항

- ① 상금, 십자말 풀이, 카드게임, 기타 게임, 도박, 경마를 포함하는 경주에 대한 소득: 이러한 소득이 10,000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10,000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30% 원천징수되고 원천징수를 차감하지 않은 총액이 수입에 포함된다.
- ② 사채에 대한 이자: 사채에 대한 이자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업 또는 전문적 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채를 재고품(stock in trade)로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 또는 전문적 소득으로 과세되며,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 IV 개인 과세대상 소득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다른 세목으로 구분하여 개인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구조이나 인도의 소득세법 (Income Tax Act)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개인 소득세와 달리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 객체에 대해 동일하게 단일 소득세법상에서 계산 절차를 규정한 후 납세 의무자별로 달리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의 법인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liable to tax", in relation to a person and with reference to a country, means that there is an income-tax liability on such person under the law of that country for the time being in force)로 정의하며, 여기서 person이란 자연인인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의 납세의무자의 개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Income-tax Act, 1961, ACT2 제31조에서는 납세의무자인 'Person'에 대해 ① 개인(Individual), ② 힌두 비분리 가족(Hindu Undivided Family, HUF), ③ 회사(company), ④ 유사 파트너십(Firm;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⑤ 조합(Association of Person, AOP; Body of Individuals, BOI), ⑥ 지방당국(Local Authority), ⑦ 위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인위적으로 조직된 법적 기타 납세의무자(Every Artifical Juridical Person)<sup>38)</sup>로 분류한다.

앞서 실시한 바와 같은 인도는 개인과 개인에 대한 세목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4조는 납세 의무자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소득 분류를 적용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소득은 그 원천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0조 내지 제36조에서는 개별 항목에 적용되는 공제를 규정을 실시하고 있고 제37조에서는 개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납세자의 자본 지출 또는 개인적 성격의 경비가 아닌 지출에 대한 일반적 공제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사업 및 직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지출한 비용은 원칙상 공제를 허용하는데, 공제금액은 총소득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범죄에 해당하거나 법으로 금지된 목적을 위해 납세자가 지출한 비용은 사업 또는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공제가 불가하다.

38) 특별법 등으로 설립된 공공회사 등을 포함함

개인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근로소득과 거주용 부동산소득을 살펴보기로 한다. 인도 소득 세법은 이자,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개인, 법인의 법인격과 관계없이 별도 소득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s)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II. 법인 과세대상 소득법인의 4. 기타소득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 1. 근로소득(Salaries)

### 가.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17조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주를 설명하고 있는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는 임금, 연금, 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현물 혜택, 이사에 대한 보수, 선급금이 포함되고, 고용계약의 해지 또는 수정에 따라 받은 관련 보상은 다른 출처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된다.

#### 1) 임금(Wages)

임금은 노동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이해된다.

직원이 인정된 적립기금에 출연하여 받은 이자소득이 25만루피 또는 50만루피(정부기관 직원의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 2) 수당(Allowances)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에 추가하여 일정한 금전 혹은 금전 대체물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면제가 되지 않는 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 ① 주택보상수당: 실제 지급받은 보상급여, 급여의 40%,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임대료 중 작은 금액이 면세된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과세한다.
- ② 교통수당: 출퇴근 목적 교통비로 월 1,600루피 한도로 면세된다.
- ③ 자녀교육수당: 최대 2명의 자녀에 대해 자녀당 매월 100루피 한도로 자녀교육 비용이 면제된다.

### 3) 현물지급(Benefits in kind)

이전에는 고용주가 제공한 현물 급여는 직원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었고 고용주에게 급여세로 부과되었으나 급여세는 2009년에 폐지되어 고용주가 제공하는 현물 혜택은 직원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되고 있다.

직원에게 과세되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혜택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① 숙소: 종업원에 대해 고용주자 지급한 임대료 혹은 급여의 15% 중 적은 금액을 현물로 지급한 급여로 본다.
  - 가구가 없는 시설: 인구 250만명 이상의 도시에 위치한 숙박시설의 경우는 직원 급여의 15%, 인구가 100만명에서 250만명 사이인 경우는 급여의 10%, 인구가 100만명 이하인 경우는 급여의 7.5%에 대해 과세한다.
  - 가구가 있는 시설: 가구가 있는 숙소는 위에 따라 평가된 금액에서 10%를 가산하거나 또는 실제 부담하는 가구비용을 가산한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 ② 자동차: 운전자의 보수, 차량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고용주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 ③ 기구 및 부속품: 가구 또는 부속품의 실제 비용의 10% 또는 물품을 임대한 경우는 실제 임대료에 대해 과세한다.
- ④ 무이자 대출: 20,000루피를 초과하는 대출은 인도 국영은행에서 부과하는 연간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⑤ 건강 보험료 및 의료비: 건강 보험료 및 의료비 상환을 위해 고용주가 지불하는 금액 중 연간 15,000루피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 ⑥ 주식이나 증권을 직원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원이 옵션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배당받을 시점에 과세하고 옵션 행사일 또는 주식 배당일 기준 주식의 공정 시장가치에서 직원이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 4) 연금소득(Pension income)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 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급여의 항목에서 과세한다. 연금은 정기적 지급이 원칙이고 이 경우 근로자에게 과세하나 만약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지급되는 경우 일시수령은 면세한다.

월 소득이 15,000루피 이하인 직원은 총급여의 12%를 EPF(Employees Provident Fund)에 가입해야 하고 연간 최소 6,000루피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승인된 적립금 또는 연금기금에서 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과세가 면제된다.

### 5) 퇴직급여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는 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이익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 ① 퇴직 시 지급받는 연월차 수당: 근로자가 재직 중 지급받는 연월차 수당은 전액 과세되지만 퇴직 시 지급받는 연월차 수당은 실제지급액, 10개월 간 평균 급여, 30일 기준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금액, 300만루피 중 적은 금액을 면세한다.
- ② 해고수당: 근로자가 지급받는 해고수당은 실제지급액, 산업분쟁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 500만루피 중 적은 금액을 면세한다.
- ③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은 실제지급액, 3개월치 급여, 남은 근무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 50만루피 중 적은 금액을 면세한다.

### 6) 퇴직적립금(PF :Provident Fund)

퇴직적립금은 ① 근로자부담식, ② 사용자 기여금식, ③ 매년 이자적립식, ④ 퇴직 시 적립금 수령식이 있다. 각 과세방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7〉 퇴직적립금 과세체계

구분	법정적립금 (Statutory PF)	Recognised PF	Unrecognised PF	Public PF
근로자 부담부분	공제	공제	불공제	공제
사용자 기여부분	비과세	급여의 12%까지 비과세	비과세	해당없음
매년 적립 이자	비과세	이자율 9.5%까지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퇴직시 수령하는 적립금	비과세	비과세	사용자 기여부분 과세	비과세

자료: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 세법 이해』, 2016, p. 104.

7) 이사의 보수(Directors' remuneration)

이사의 보수 소득이 급여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취인과 지급인 간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사가 회사의 직원인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급여로 분류되나 이사가 회사의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는 급여로 과세되지 않고 '기타 출처 소득' 또는 '사업·직업 소득' 명목으로 과세된다.

이사의 보수는 사업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된다.

예제 (소득세액 계산)		
· A씨는 회사에서 매월 24,000루피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고용주가 A 급여의 14%를 기부하는 인정 적립 기금의 회원이다. 한 해 동안 A는 위 펀드에 대한 8만루피 적립에 대한 이자로 8,400루피를 적립받았다. 평가연도 동안 A의 근로소득 항목에 대해 부과될 연간 세액을 계산하시오.		
해설		
과세액의 계산		
연봉	24,000×12	288,000
급여의 12%를 초과하는 펀드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	(288,000×14%) - (288,000×12%)	5,760
9.5%를 초과하는 이자	8,400-(80,000×9.5%)	800
연간 과세액 =	5,760+800	6,560

자료: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80.

나. 공제·면세·면제

1) 공제항목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근로소득 중 급여 중 공무원에 대한 접대 성격을 지닌 비용에 대하여는 급여의 5분의 1 또는 5천루피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만약 다른 근로자가 접대비 보상을 받았다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세는 소득에서 공제한다.

2) 면세항목

앞서 실시한 근로소득에 대한 면세항목 외에도 「소득세법」 제10(6)조에 의거 대사관, 영사관등 해외공관인 외국 공무원의 급여는 면세대상이다. 다만 이는 해당 국가에 유사한 목

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인도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 유사한 면제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인도 내 외국기업의 근로자가 받는 보수에 관하여, 해당 외국기업이 인도 내에서 무역이나 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근로자의 인도 내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해당 외국기업의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해 면세한다.

인도에서의 총 체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외국 선박에 고용된 비거주자의 인도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도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면세한다.

인도에 체류하는 외국 정부의 직원이 훈련 등과 관련하여 받은 보수에 대해서는 면세한다.

### 3) 면제항목

「소득세법」 제90조에 의거, 이중과세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도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가 지급받은 급여에 관하여는 인도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도 내에서 회계연도에 183일 이하로 거주해야 하고 거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아니며, 인도 내 고정사업장에서 지급된 보상이 아니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91조에 의거, 인도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사람이 전년도에 인도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대상 소득이 인도 외에서 발생한 소득임을 입증하는 경우이며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타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인도 세율과 해당 국가 세율 중 낮은 세율로 인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예제 (근로소득 면세액 계산)

· A씨는 개인 회사에서 월 70,000루피의 급여를 받고 있고 전년도에 상여금으로 10,000루피를 지급받았다. 회사로부터 주택보상 수당으로 매달 2,000루피를 지급받고 있는 A는 매달 2,500루피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다. 이때 A의 주택보상수당 면세액을 계산하시오.

#### 해설

##### 주택보상수당 면세액 계산

급여	70,000×12	840,000
(a) 수령한 주택보상수당	2,000×12	24,000
(b) 지불한 임대료-급여의10%	30,000-84,000	NIL
(C) 급여의 40%	840,000×0.4	336,000
주택보상수당 면세액	=	NIL

주택보상수당은 ① 실제지급 받은 보상급여, ②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임대료, ③ 급여의 40%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면세하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임대료의 값이 NIL로 가장 작으므로, A의 주택보상수당 면세액은 NIL이다.

자료: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83.

## 2. 거주용 부동산 소득(Income from House Property)

### 가. 과세대상

거주용 부동산 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2조에서는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용 건물로서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로 구성된 재산의 연간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거주용 부동산의 연간 가치는 다음 (a), (b), (c) 중 하나를 말한다.

- (a) 매년 해당 부동산의 임대 관하여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금액
- (b) 소유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여 수령한 금액이 (a)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로 수령하거나 수령할 수 있는 금액
- (c) 부동산의 일부가 전년도 기간 중 공실 상태였고 공실로 인해 납세자가 수령한 실제임대료 총액이 (a)보다 적은 경우, 실제 수령하거나 수령할 수 있는 금액

거주용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은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어느 건물에도 부속되지 않은 토지는 거주용 부동산 소득에서 제외된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토지로부터의 소득은 기타 원천소득이라는 명목으로 과세된다.

거주용 건물에 부속된 토지에는 복합시설, 놀이터, 정원 등이 있고 비거주용 건축물의 경우는 공장지역 내 주차장, 연결도로가 포함된다. 건물에서 받는 임대료는 거주용 부동산 소득으로 과세되며 납세자가 2개 이상의 자체 점유 자산을 보유한 경우 자체 점유 자산에 대한 명목 임대료로 간주한다.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납세자가 실제 임대료를 수령하였을 때 소득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장의 직원에게 숙소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직원으로부터 징수한 임대료 및 건물을 관공서 목적으로 당국에 임대한 경우 발생한 임대료는 거주용 부동산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평가한다.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료 연체액 또는 나중에 실현된 미실현 임대료는 당해 회계연도의 거주용 부동산 소득으로 간주된다.

「소득세법」 제26조에 따라 건물 또는 건물 및 이에 부속된 토지로 구성된 자산이 2인

이상의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고 각 지분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 소유자 각각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므로 지분별 가치는 각 개인의 총소득에 포함되고 만약 소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인적 조합으로 간주하여 그 자산 전체의 소득에 대해 계산한 뒤 각각의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공유 이익만큼 세금을 납부한다.

## 나. 공제

「소득세법」 제24조에서는 거주용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연간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차입 자본을 통해 자산의 취득·수리·갱신·재건한 경우 해당 자본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1999년 4월 1일 이후에 차입한 자본으로 자신의 거주 목적을 위해 점유 중인 부동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고 그러한 취득 또는 건설이 자본을 차입한 회계연도 종료 일로부터 5년 이내 완료된 경우, 공제 금액의 총액은 200만루피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밖에서 지불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료 연체액 또는 나중에 실현된 미실현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신이 거주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고용, 사업 등을 이유로 소유자가 다른 장소에 거주하여 실제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없는 경우는 공제금의 총액이 3만루피를 초과할 수 없다.

과세대상 연도에 부동산을 새로 건축한 경우 연간가치에서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 시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순가치의 30%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표 2-1-8〉 거주용 부동산 소득 계산방법

구 분	비고
연간가치(①)	
지방세 공제(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소유자가 납부한 세액
순가치(③=①-②)	
기본공제(④)	전년도에 부동산이 새로 지어진 경우 연간 순가치의 30% 공제
이자비용 공제(⑤)	부동산 신축 또는 수리를 위해 대여한 자본의 이자비용
거주용 부동산 소득(③-④-⑤)	

자료: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 세법 이해』, 2016, p. 107.

**예제 (거주용 부동산 소득 계산)**

- A씨는 거주목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음은 자산에 대한 세부정보이다.
  - 시에서 공시한 임대료는 월 8,500루피이다.
  - 실제 임대료는 월 9,000루피이다.
  - 임대료 관리법에 따라 납부할 임대료는 월 8,500루피이다.
  - 비슷한 조건의 거주용 부동산에 책정된 임대료는 9,000 루피이다.
  -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 평가액의 17%를 납부하였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2월에 완공하였다. 그는 거주용 부동산인 위 부동산의 건설을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자로 2017년 3월 31일까지 200만루피를 지불하였고, 전년도에는 5만루피를 이자로 지불하였다. A씨가 가입한 화재 보험료는 2,000루피이다. 2021-2022 평가 연도 동안의 거주용 부동산 소득을 계산하시오.

**해설**

거주용 부동산 소득 계산

연간가치(실제임대료가 예상임대료보다 높음)	9,000 × 12	108,000
지방세 차감	(8,500 × 12) × 14%	-17,340
부동산 순가치	108,000 - 17,340	= 90,660
연간 순가치의 30% 공제	90,660 × 30%	-27,198
전년도 이자 공제		-50,000
2017년 3월 21일까지의 이자 중 1/5 공제	2,000,000 × 1/5	-40,000
	부동산 소득(손실)	= -26,538

자료: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177.

**V 비과세 소득**

인도의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에 대해 개인 및 법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 또한 ACT10에서 개인과 법인에 대한 해당 항목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고 있는데 해당 소득들은 총소득 계산 시 제외된다. 이에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농업소득과 중앙정부 또는 주정부로부터 받은 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않는다. 농업소득은 주로 농경 작업으로부터 얻은 수입을 의미하며, 농업을 목적으로 대여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시장에 부합하기 위한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등을 포함한다. 차, 고무, 커피 등과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업종의 경우, 작물 혹은

그 초목을 다시 심거나 대체하는 용도의 비용 혹은 경작지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비과세한다. 다만 농업소득은 계산 시 총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개인의 경우 과세를 위한 해당 세율을 정하는 데는 고려된다.

개인이 HUF 구성원으로서 받는 금원이 HUF 소득에서 지불되는 경우 또는 HUF 소유 재산의 소득에서 지불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HUF 소득은 HUF에 대해 과세하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HUF 소득을 지급받은 개인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이다.

비거주자 개인이 인도 외부계좌에서 인도은행을 통해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파트너십 회사(firm)의 지분에 의한 소득의 경우 파트너십 회사의 단계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파트너십 계약에서 언급된 이익 분배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수령한 소득의 경우 비과세된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법에 따라 만들어지거나 공공 금융기관이 설립 또는 인도 중앙 은행이 승인한 뮤추얼펀드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뮤추얼펀드에 투자하여 투자자가 배당받은 소득은 배당 수령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벤처 캐피털 펀드 또는 벤처 캐피털 회사의 벤처 캐피털 사업체에 대한 지분 방식의 투자에서 발생된 배당금 또는 장기 자본이득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서 벤처 캐피털 펀드는 1908년 등록법(Registration Act, 1908)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 신탁 증서에 따라 운영되는 펀드를 의미하고 수탁자가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하여 설립된 것을 말하고 벤처 캐피털 회사는 규정된 지침에 따라 벤처 캐피털 사업에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회사를 말한다. 벤처 캐피털 사업체란 주식이 인도의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전력 기타 형태의 발전 또는 분배사업 또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및 기반 시설을 개발, 유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인도 회사를 의미한다.

또한 개인 또는 상속인에게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등으로부터 재해로 인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소득에서 제외되며 생명보험 정책에 의해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 소득에서 제외되고 정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교육비 목적으로 수여된 장학금은 소득에서 제외된다. 정부로부터의 상금 소득의 경우,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또는 다른 기관이 공익에 대해 제정하고 연방정부에 의해 승인된 상이거나 공익 목적으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가 수여하는 보상의 경우 비과세된다.

사회·과학적 연구 또는 통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이 소득을 전적으로 설립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정해진 방식 외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된 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의 소득에 미성년자 자녀 또는 미성년자 자녀들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인은 실제 금액 또는 1,500루피 중 작은 금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군대에서 복무하여 '파람 비르 차크라' 또는 '마하비르 차크라' 등과 같은 상훈을 수여받음으로써 수령하는 용감한 수상자 연금(pension of gallantry awardee)의 경우 소득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 상속, 증여 및 유증, 소매업체, 제조업체 또는 딜러로부터 구매할 품목에 대한 현금 리베이트, 위자료 지급(2018년 이후 확정된 이혼 판결의 경우), 자녀 양육비, 적격 입양에서 상환되는 금전이 비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에서 제외되며 그 밖에 기타 비과세 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납세의무자별 각 과세대상 소득에 관한 파트에서 기술한다.

2020년 4월 1일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가) 폐지되면서 2003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당분배세가 적용되므로 해당 구간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0년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배당금은 “기타원천으로부터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배당 수령자의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한다.

〈표 2-1-9〉 주요 비과세 항목

비과세 소득	비과세 한도
농업소득(인도의 토지에서 유래한 농업소득)	없음
개인이 HUF 구성원으로서 받는 금액	없음
Firm의 파트너로서 수취하는 지분 수익	없음
비거주인이 외부계좌에서 취득한 이자소득	없음
장학금	없음
미성년자 소득(부모의 소득에 포함된 부분)	Min[1,500루피, 실제금액]
과학연구기관 소득	없음
뮤추얼펀드 소득	없음
벤처 캐피털 펀드 투자소득	없음
배당소득	없음

자료: 본문 내용 바탕으로 저자 작성

## VI 공제 항목

### 1. 비용 공제

인도 소득세법은 급여소득(Salaries)과 관련하여 공제, 면세,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제항목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외공관인 외국 공무원의 급여 등 면세대상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0조에 의거 인도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한 국가 거주자의 급여에 대한 면제한다.

거주용 부동산 소득(Income from House Property)과 관련한 공제항목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고용 또는 사업 등을 이유로 소유자가 다른 곳에 거주하여 실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제한도에 제한이 있다.

사업 또는 전문적 소득(Profits and gains of business of profession)과 관련한 일반적인 비용 공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7의 1항에서 규정하며 개별 비용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0조~36조에서 규정한다. 각 조문은 제30조 임대료, 요금, 세금, 수리 및 보험, 제31조 기계, 시설 및 가구의 수리 및 보험, 제32조 감가상각, 제33조 개발 리베이트, 제34조 감가상각비 및 개발 리베이트의 공제 조건, 제35조 과학 연구에 대한 지출, 제36조 기타 지출로 구성된다. 이에 따르면 사업소득에서 비용이 공제되기 위해서는 자본적 성격이 아니라 수익적 성격을 띠어야 하며, 납세자의 업무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하고, 관련 전년도에 배치 및 지출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개인 및 사적 비용과 관련한 비용이 아니어야 하고, 인도 소득세법상 특별히 불허된 공제가 아니어야 하고, 범죄이거나 법에 의해 불법/금지된 비용이 아니어야 한다.

자본소득의 경우(Capital gain) 인도 「소득세법」 제48조(계산 방법)에서 양도 대가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규정한다. 인도 소득세법의 자본소득은 이전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발생한 지출 및 자산의 취득원가와 자산의 개선원가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장기 자본소득의 경우 이러한 차감항목에 대해 물가지수를 곱하여 조정된 가액을 차감한다.

기타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s)의 소득에 대해 차감하는 비용공제 항목에 대해 인도 「소득세법」 제57조 및 58조에서 규정한다. 해당 조항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해 증권/채권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해당 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지불하였으며 실제로 지출된 수수료 또는 보수 금액 목적의 이자 및 수입을 얻거나 획득할 목적으로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계획되거나 지출된 기타 지출을 기타소득으로부터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소득에 대한 비용 공제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의무자별 각 과세대상 소득에 관한 파트에서 기술한다.

## 2. 공제가 불가능한 비용

### 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용

「소득세법」 제40조에 따라 이자, 로열티, 기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에 대한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한 비용을 공제할 수 없고 다음 연도에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납부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나. 균등부과금을 징수하지 않은 비용

균등부과금을 징수해야 하는 특정서비스의 대가에 해당하나 균등부과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균등부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고 다음 연도에 균등부과금을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다. 세금

사업소득 및 직업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부유세는 공제대상이 아니고 주정부가 부과하는 로열티, 라이선스 비용에 대하여도 공제되지 않는다.

### 라. 특수관계자에게 지불한 금원

납세자의 친척, 임원, 납세자의 사업상 이해관계자와 같은 특수관계자(회사 주식소유자로 20% 이상의 투표권을 보유한자)에게 공정시장 가치를 초과하여 지불한 금원은 공제할 수 없다.

### 마. 특정 방법으로 지불한 금원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비용이더라도 Rule 6ABBA에서 정한 전자결제수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동일인에게 하루 10,000루피를 초과하여 결제한 경우는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 VII 납부세액 산출

### 1. 손실공제<sup>39)</sup>

인도 소득세법은 같은 과세연도 내의 소득 간 손실상계를 규정한다. 자본소득(Capital Gains)을 제외한 소득항목(Head of Income)에서 같은 소득항목 내에 있는 소득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납세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의 손실과 이익을 서로 상계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70(1)조). 그 후 동일한 과세 분류 내의 소득 간 손익 상계 후에도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과세 분류의 이익과 상계한다. 이에 관해 먼저, 한 과세연도의 동일한 과세 분류 내의 손익을 통산 시 동일한 과세 분류 내에서도 상계할 수 없는 소득이 존재하여 해당 소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투기성 사업 및 특정 사업에 관한 손실은 다른 사업 및 전문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투기성 사업 및 특정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으며 장기 자본 소득 손실 또한 다른 장기 자본소득에 한해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경마용 말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동일한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에서만 상계할 수 있으며, 복권, 십자퍼즐, 도박, 카드게임, 베팅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어떤 소득과도 상계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비과세 소득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어떠한 과세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자본소득의 경우 단기 자산자본 손실은 다른 단기 자산자본 이익과 장기 자산자본 이익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소득세법 제70(2)조), 장기 자산자본 손실은 다른 장기 자산자본 이익에서만 상계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70(3)조).

39)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2021, p. 384

〈표 2-1-10〉 소득별 손실과 상계가능 한 소득

손실의 출처	상계 가능한 소득
1. 주거용 자산으로부터의 손실	1. 주거용 소득으로부터의 소득 2. 200,000루피를 초과하는 다른 소득
2. 사업소득으로부터의 손실	1. 다른 사업소득으로부터의 소득 2. 급여를 제외한 다른 소득
3. 투기소득으로부터의 손실	투기소득
4. 특수한 사업 소득으로부터의 손실	특수한 사업 소득
5. 단기 자본소득으로부터의 손실	1. 단기 자본소득 2. 장기 자본소득
6. 장기 자본소득으로부터의 손실	장기 자본소득
7. 경마용 말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활동으로부터의 손실	경마용 말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활동으로부터의 소득
8. 복권, 십자말풀이, 퍼즐, 도박, 카드게임, 등	없음

자료: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385.

## 2. 이월공제<sup>40)</sup>

인도 소득세법은 당기에 공제되지 않은 손실 금액을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이러한 이월공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상각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며, 특정 연도에 발생한 사업손실(투자사업손실)은 8년(4년)간에 걸쳐 사업소득(투자사업소득)에서 공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거주용 부동산 손실도 8년간 이월하여 거주용 부동산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본소득으로부터의 손실의 경우 당기 상계와 유사하게 단기 자산자본 손실은 8년간 이월하여 단기·장기 자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장기 자산자본 손실은 오직 장기 자산자본 소득에서만 8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당기 손실 상계와 마찬가지로 십자말 풀이, 복권, 경주, 카드 게임, 베팅 등과 같은 소득 및 손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계할 수 없다.

이러한 이월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상각 감가상각비와 주택 재산으로부터의 손실을 제외하고 관련 사실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0) Dr. H.c and Mehrotra,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2021. p. 384

〈표 2-1-11〉 이월 가능한 공제

section	이월할 손실	상계 가능한 소득	이월 기간	신고 의무
32(2)	미상각 감가상각비	모든 소득(급여 제외)	제한 없음	없음
71B	주택 재산 손실	집 재산소득	8년	없음
72	정상영업손실	사업소득	8년	있음
73	투기적 사업으로 인한 손실	투기적 사업소득	4년	있음
73A	특정 사업으로 인한 손실	특정 사업소득	제한 없음	있음
74	단기 자본손실	단기 자본이득 및 장기 자본이득	8년	있음
	장기 자본손실	장기 자본이득	8년	있음
74A	경마 소유 및 유지로 인한 손실	경마 소유 및 유지 수입	4년	있음

자료: clear tax, "Set Off and Carry Forward of Losses", <https://cleartax.in/s/set-off-carry-forward-losses>

### 3. 소득공제

인도 소득세법에서는 section 80C부터에서의 조항에서 여러 소득공제 사항들을 규정한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와 같이 투자, 보험료, 의료비용, 장애, 기부 등 항목과 관련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적용되는 한도 또한 상이하다. 해당 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1-12〉 주요 소득공제 항목 및 허용 한도

SECTION	공제	허용 한도
80C	PPF(Public Provident Fund Account), EPF, LIC 프리미엄, 주식 연계 저축 제도, 주택 대출에 대한 원금 지급, 부동산 구입에 대한 인지세 및 등록 비용, 수카냐스미드리디오나나(SSY), 국민 저축 인증서(NSC), 노인 저축 제도(SCS), ULIP, 세금 절약 FD, 사회기반시설 채권 등에 대한 투자금액	1,50,000루피
80CCC	섹션 10(23AAB)에 언급된 기금의 연금을 위해 LIC 또는 기타 보험사의 연금 계획에 예치된 금액	없음
80CCD(1)	직원의 NPS 계정 기여금(최대 Rs 1,50,000)	없음
80CCD(2)	NPS 계정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	급여의 최대 10%
80CCD(1B)	NPS에 대한 추가 기여	최대 50,000루피
80TTA (1)	저축예금 이자수익	최대 10,000루피
80TB	은행, 우체국 등의 이자 면제 (고령자만 해당)	최대 50,000루피

〈표 2-1-12〉의 계속

SECTION	공제	허용 한도
80GG	고용주로부터 HRA를 받지 못했을 때 지불한 임대료	- 지불한 임대료에서 총소득의 10%를 뺀 금액 - 5000루피 /월 - 총소득의 25% 중 가장 적은 금액
80E	학자금 대출 이자	8년간 지급이자
80EE	첫 주택 소유자의 주택 융자 이자	50,000루피
80D	의료보험 - 본인, 배우자, 자녀	25,000루피
	의료보험 -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2015-16 회계연도부터) 80세 이상의 무보험 부모	50,000루피
80DD	장애 피부양자에 대한 요양 또는 장애인 부양비 - 장애 40% 이상 80% 미만	75,000루피
	- 장애 80% 이상	125,000루피
80DDB	규칙 11DD에 명시된 질병에 대한 자기 또는 피부양 친척에 대한 의료 지출 - 60세 미만의 경우	- 40,000루피 또는 실제 지불한 금액 중 적은 쪽
	- 60세 이상의 경우	- 1,00,000루피 또는 실제로 지불한 금액 중 적은 쪽
80U	장애인 공제 : - 신체장애(실명 포함) 또는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자	75,000루피
	-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자	125,000루피
80GGB	기업의 정당 기부	기부금액(현금결제시 불가)
80GGC	개인의 정당 기부	기부금액(현금결제시 불가)
80RRB	특허 로열티를 통한 소득 공제	300만루피 또는 수입 중 적은 금액

자료: clear tax, "Income Tax Deductions List - Deductions on Section 80C, 80CCC, 80CCD & 80D - FY 2021-22 (AY 2022-23)", <https://cleartax.in/s/80c-80-deductions>

## 4. 세율

### 가. 소득세율

인도의 소득세법은 법인과 법인이 아닌 개인, 그리고 법인이 아닌 개인 중 연령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내국법인의 경우 30%의 세율을 적용하며, 2018-2019년도 총매출이 40억루피 이하의 법인인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된 세액에 대하여 소득별로 부가세(surcharge)를 과세하며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교육세를 부과한다.

부가세의 경우 소득 구간별 누진으로 부과하지 않고 산출세액에 대해 과세표준이 속하는 소득 구간의 소득 전체에 대해 그 소득 구간의 부가율을 곱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1) 법인

〈표 2-1-13〉 법인의 소득세율

구분	매출액 범위	세율
내국법인	40억루피 이하	25%
	40억루피 이상	30%
외국법인	단일세율	40%
유사 파트너십	단일세율	30%

자료: KOTRA, 「2022년 인도 비즈니스 가이드」, p. 77.

건강·교육세의 경우 법인의 종류 및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4% 단일세율로 부과된다.

### 2) 개인

아래 서술한 개인 소득세율은 단기, 장기 자본소득 및 복권, 십자말 풀이 퍼즐, 경주 등의 상금을 제외한 세율이다. 납세자에게 복권, 십자말 풀이 퍼즐, 경마, 카드 게임 및 도박의 종류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 그러한 수익에 대한 세율은 30%를 적용하고, 부가세의 경우 일반적인 소득과 동일한 부과금을 부과한다.

#### 가) 60세 이상 80세 미만 개인 거주자 세율

〈표 2-1-14〉 60세 이상 80세 미만 개인 거주자 세율

소득 범위	세율(누진과세)
300,000루피 이하	비과세
300,000루피 초과 500,000루피 이하	5%
500,000루피 초과 1,000,000루피 이하	20%
1,000,000루피 초과	30%

자료: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3.

나) 80세 이상 개인 거주자 세율

〈표 2-1-15〉 80세 이상 개인 거주자 세율

소득 범위	세율(누진과세)
500,000루피 이하	비과세
500,000루피 초과 1,000,000루피 이하	20%
1,000,000 초과	30%

자료: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3.

다) 가), 나) 외의 개인 거주자 세율

〈표 2-1-16〉 기타 개인 세율

소득 범위	세율(누진과세)
250,000루피 이하	비과세
250,000루피 초과 500,000루피 이하	5%
500,000루피 초과 1,000,000루피 이하	20%
1,000,000루피 초과	30%

자료: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3.

라) 장기 자본이득 및 단기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표 2-1-17〉 자본이득세에 대한 자산별 세율

세금 유형	자산 종류	적용 세율
단기 자본이득세	증권거래세(STT)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인 경우	기본 세율 적용
단기 자본이득세	STT가 적용되는 자산인 경우	15%
장기 자본이득세	자기주식/지분형 펀드 단위 매각 제외	10만루피 이상에 대해 10%
장기 자본이득세	자기주식/지분형 펀드 단위 매각 시	20%

자료: clear tax, "Capital Gains Tax - What is Capital Gains Tax In India, Types, Tax Rates, Calculation, Exemptions & Tax saving", <https://cleartax.in/s/capital-gains-income#h3>

## 나. 새로운 세율 (new regime)

### 1) 개인<sup>41)</sup>

〈표 2-1-18〉 새로운 조세체계하에서의 세율

소득 범위	세율(누진과세)
250,000루피 이하	비과세
250,000루피 초과 500,000루피 이하	5%
500,000루피 초과 750,000루피 이하	10%
750,000루피 초과 1,000,000루피 이하	15%
1,000,000루피 초과 1,250,000루피 이하	20%
1,250,000루피 초과 1,500,000루피 이하	25%
1,500,000루피 초과	30%

자료: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482.

개인에 대한 새로운 소득세 제도(new regime)는 2020년 예산안에 입안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해당 소득세 제도는 납세자들에게 기존의 소득세율과의 선택지를 제공하며, 납세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세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가 개인 또는 HUF의 경우 Section 115BAC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며 Section 115BAC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선택하는 개인은 급여를 받는 납세자의 경우 회계연도 초에 새로운 조세제도를 선택하고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선택 후에는 회계연도 중 언제든지 선택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매년 7월 소득세 신고 시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비급여 납세자의 경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새로운 제도를 선택하고, 이러한 선택 시 급여 납세자와는 달리 타인에게 신고 통지 의무는 없다. 하지만 급여 납세자와는 달리 한 번 선택된 세율을 바꿀 수 없으며 한 번 행사된 선택권은 모든 후속 평가연도에 적용되고 새로운 세율 적용 후 이전 세율로는 단 한 번만 재변경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개인이 급여 소득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율 변경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새로운 조세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기존 세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나, 일정한 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 새로운 조세제도를 선택할

41) clear tax, "Section 115BAC of Income Tax Act - What is 115bac? Features of the New Tax Regime and Its Benefits", <https://cleartax.in/s/section-115bac-features-new-tax-regime-benefits>, 검색일자: 2022. 9. 15.

경우 섹션 80TTA/80TTB 에 따른 표준 공제, 급여에 대한 전문 세금 및 각종 수당에 따른 공제 등이 배제된다. 하지만 장애인의 교통비, 고용과 관련된 수당 등은 새로운 조세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여전히 공제가 허용된다.<sup>42)</sup>

가) 새로운 조세 제도에 따라 청구할 수 없는 면제 및 공제

다음은 새로운 세금 시스템에 따라 청구할 수 없는 주요 공제 및 면제의 일부이다.

- ① 섹션 80TTA/80TTB에 따른 표준 공제, 급여에 대한 전문 세금 및 접대 수당
- ② 휴가 여행 수당(LTA)
- ③ 주택 임대료 수당(HRA)
- ④ 미성년 자녀 소득 수당
- ⑤ 도우미 수당
- ⑥ 아동교육수당
- ⑦ 기타 특별 수당[섹션 10(14)]
- ⑧ 자가 소유 부동산 또는 빈 부동산에 대한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제24조)
- ⑨ VI-A장 공제(섹션 80CCD(2) 및 섹션 80JJAA 제외)
- ⑩ 기타 부수적 조건 또는 수당에 대한 면제 또는 공제
- ⑪ 가족 연금 소득공제

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공제 및 면제:

- ① 섹션 32에 따른 추가 감가상각
- ② 섹션 32AD에 따른 투자 수당
- ③ 섹션 33AB 및 33ABA에 따른 부문별 사업 공제
- ④ 섹션 35에 따른 과학 연구에 대한 지출
- ⑤ 섹션 35AD에 따른 자본 지출

42) clear tax, "Section 115BAC of Income Tax Act - What is 115bac? Features of the New Tax Regime and Its Benefits", <https://cleartax.in/s/section-115bac-features-new-tax-regime-benefits>, 검색일자: 2022. 9. 15.

다) 새 제도를 선택함에 불구하고 청구할 수 있는 공제 및 면제

- ① 장애인의 경우 교통비
- ② 고용의 일부로 발생한 운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받은 운송 수당
- ③ 여행 또는 환승 여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받은 모든 보상
- ④ 정규 근무지에서 결석하여 발생하는 일반 정규 요금 또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받는 일일 수당
- ⑤ NPS 계정에 대한 고용주의 분담금 공제(섹션 80CCD(2)).
- ⑥ 추가 직원 비용에 대한 공제(섹션 80JJA).

〈표 2-1-19〉 구 제도와 비교 시 새로운 제도가 더 나은 경우

소득(Rs)	구 제도(Rs)	새로운 제도(Rs)
급여	1,250,000	1,250,000
표준 공제	50,000	-
전문 소득 차감 (급여에 대한 전문 소득 부과 한도 2,500루피를 초과하여 차감하는 부분)	2,400	-
총 소득	1,197,600	1,250,000
공제 u/s 80C	150,000	-
총 수입	1,047,600	1,250,000
소득세	126,780	125,000
추가: 교육세 @ 4%	5,071	5,000
총 부담 세금	131,851	130,000

위의 예에서 12,50,000루피의 소득에 대해 새로운 조세 제도는 1,851루피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투자, 학자금 대출 등 추가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면 기존 제도가 오히려 총 부담 세금이 적을 수 있다.

자료: clear tax, "Section 115BAC of Income Tax Act - What is 115bac? Features of the New Tax Regime and Its Benefits", <https://cleartax.in/s/section-115bac-features-new-tax-regime-benefits>

## 2) 내국 법인<sup>43)</sup>

인도 정부는 2019년 9월 20일 조세 수정 조례 2019를 통해 국내 법인에 더 낮은 세율을

43) clear tax, "Section 115BAA - New Tax Rate for Domestic Companies", <https://cleartax.in/s/section-115-baa-tax-rate-domestic-companies/?ref=articles-search>, 검색일자: 2022. 9. 15.

제공하기 위해 섹션 115BAA를 시행했다. 섹션 115BAA는 인도 내국 법인(domestic company)이 선택할 수 있으며, 115BAA를 선택하는 경우 최소 대체 세금(MAT)의 적용이 배제된다. 인도 내국 법인이 115BAA를 선택하여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10%의 부가세(surcharge)가 부과되며, 4%의 건강·교육세가 부과되어 실질적으로 총 25.168%의 유효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때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는 내국 법인은 일정한 사업과 관련된 공제가 배제되며, 배제된 공제들은 추후 115BAA의 적용을 해제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새로운 제도를 선택한 내국 법인은 이러한 제도를 해제하고 기존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제도를 선택한 바로 다음 해에 다시 기존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sup>44)</sup> 115BAA에 따라 법인이 새로운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청구할 수 없는 공제 및 면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① 섹션 10AA에 따라 특별경제구역에 설립된 유닛에 대해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공제 청구
- ② Andhra Pradesh, Bihar, Telangana 및 West Bengal 주의 신고된 후진 지역에서 제조된 신규 공장 및 기계에 대해 제32조에 따른 추가 감가상각 및 32AD에 따른 투자 수당 청구
- ③ 차, 커피 및 고무 제조 법인에 대한 섹션 33AB에 따른 공제 청구
- ④ 인도에서 석유나 천연가스 또는 둘 모두의 추출 또는 생산에 종사하는 법인이 섹션 33ABA에 따라 부지 복원 기금으로 만든 예금에 대한 공제 청구
- ⑤ 과학 연구에 대한 지출 또는 대학, 연구 협회, 국립 연구소 또는 IIT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 섹션 35에 따른 공제 청구
- ⑥ 섹션 35AD에 따라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자본 지출에 대한 공제 청구
- ⑦ 섹션 35CCC에 따른 농업 확장 프로젝트 또는 섹션 35CCD에 따른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발생한 지출에 대한 공제 청구
- ⑧ 섹션 80JJAA 및 80M에 따른 공제를 제외하고 섹션 80IA, 80IAB, 80IAC, 80IB 등에 따라 허용되는 특정 소득에 대해 VI-A장에 따른 공제 청구
- ⑨ 섹션 80JJAA에 따른 공제를 제외하고 섹션 80IA, 80IAB, 80IAC, 80IB 등에 따라 허용되는 특정 소득에 대해 VI-A장에 따른 공제 청구

44) clear tax, "Section 115BAA - New Tax Rate for Domestic Companies", <https://cleartax.in/s/section-115-baa-tax-rate-domestic-companies/?ref=articles-search>, 검색일자: 2022. 9. 15.

- ⑩ 앞서 언급한 공제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전 연도의 이월 결손금 또는 감가상각비의 상계 청구
- ⑪ 위의 공제로 인한 손실 또는 미흡수 감가상각비가 합병회사에 속하는 이월 결손금 또는 미흡수 감가상각비 상계에 대한 합병회사의 청구 추가/가속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 청구. 그러나 정상적인 감가상각은 청구 가능

이러한 공제들은 차기와 관련하여 이월 및 상계할 수 없다. 즉, 법인이 115BAA를 선택하면 추후 115BAA의 적용을 해제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상기 공제들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표 2-1-20〉 섹션 115BAA 적용에 따른 유효 과세율

A. 섹션 115BAA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율	22%
B. 총 소득에 대한 추가 요금(@10%)	$(22 \times 0.1) = 2.2\%$
C. A+B 위의 건강 및 교육세(@4%)	$\{(22+2.2) \times 0.04\} = 0.968\%$
총 유효 세율(A+B+C)	25.168%

자료: Aditya Birla Capital, "New Tax Regime Under Section 115BAA for Domestic Companies", <https://www.adityabirlacapital.com/abc-of-money/new-tax-regime-under-section-115baa-for-domestic-companies>

## 다. 부가세(surcharge)

### 1) 법인

〈표 2-1-21〉 법인의 부가세

구분	소득범위		
	1천만루피 이하	1천만루피 이하~1억루피 이상	1억루피 이상
내국법인	0%	7%	12%
외국법인	0%	2%	5%
유사 파트너십	0%	12%	12%

자료: KOTRA, 「2022년 인도 비즈니스 가이드」. p. 77.

단, 국내 법인이 섹션 115BAA 및 115BAB를 선택한 경우 소득세의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sup>45)</sup>

45) Income Tax e-Filing System, "Domestic Company for AY 2022-23", <https://www.incometax.gov.in/iec/foportal/help/company/return-applicable>, 검색일자: 2022. 10. 11.

2) 개인

〈표 2-1-22〉 개인의 부가세

과세 표준	부가세(%)
~ 5백만 루피 미만	0%
5백만루피 이상 1천만루피 미만	10%
1천만루피 이상 2천만루피 미만	15%
2천만루피 이상 5천만루피 미만	25%
5천만루피 이상	37%

자료: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481.

단, 111A조에 따른 일부 지분이나 자산 기반 펀드 또는 신탁 등과 관련한 단기 자본소득 또는 장기 자본소득에 대한 부가세는 15%로 한다.

라. 한계 경감(marginal relief)<sup>46)</sup>

한계 경감은 소득의 부가세에 대한 소득세의 누적 효과를 줄이고 소득의 증가분보다 세액 증가분이 큰 경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출된 세액에 정률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인도 소득세법 특성상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은 후 부가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로부터 누적되는 고율의 부가세 때문에 증가하는 소득보다 증가하는 총세액이 더 커져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510만루피의 과세표준의 경우 소득세율을 누진세로 적용받아 소득세는 1,342,500루피가 산출되며 그에 대한 부가세로서 소득세의 10%인 134,250루피를 부담하여 총납부할 세액이 1,476,750루피로 산출되어 가처분소득이 3,623,250루피가 된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500만루피인 경우 소득세율을 누진세로 적용받아 소득세 1,312,500루피가 산출되며 그에 대한 부가세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총납부할 세액이 산출세액과 동일한 1,312,500루피로 산출되어 가처분소득이 3,687,500루피가 된다. 이는 과세표준은 증가하였음에도 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해 정률로 부과하는 부가세의 영향으로 가처분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으로서, 한계 경감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한계 경감의 경우 개인과 법인 등 부가세가 부과되는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단, 건강·교육 부가세는 한계 경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46)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2021, p. 5

〈표 2-1-23〉 한계 경감(개인/HUF/AOP/BOI/법적 납세의무자)

소득	한계 경감
5백만루피 초과	5백만루피를 초과하는 소득 부분에 대한 소득세 및 할증료의 합계는 그 5백만루피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천만루피 초과	1천만루피를 초과하는 소득 부분에 대한 소득세 및 할증료의 합계는 그 1천만루피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천만루피 초과	2천만루피를 초과하는 소득 부분에 대한 소득세 및 할증료의 합계는 그 2천만루피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천만루피 초과	5천만루피를 초과하는 소득 부분에 대한 소득세 및 할증료의 합계는 그 5천만루피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료: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5.

〈표 2-1-24〉 한계 경감(법인)

소득	한계 경감
1천만루피 초과	1천만루피를 초과하는 소득 부분에 대한 소득세 및 할증료의 합계는 그 1천만루피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억루피 초과	1억루피를 초과하는 소득 부분에 대한 소득세 및 할증료의 합계는 그 1억루피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료: clear tax, "Income Tax Surcharge Rate & Marginal Relief - Latest Rates", <https://cleartax.in/s/marginal-relief-surcharge>

#### 예제 (부가세 및 한계경감 계산)

· 개인 A씨의 2021-22년 과세연도의 총소득은 10,200,000루피다. A씨가 2021-22년 과세연도와 관련하여 총 납부해야 할 세액 및 부가세와 한계 경감을 계산하시오.

#### 해설

##### A의 납부세액 및 한계 경감(2021-22)

A씨의 총소득	10,200,000
산출세액(누진세율 적용)	2,872,500
가산: 부가세(15%)	430,875
부가세를 포함한 납부 세액	3,303,375
차감: 한계 경감	9,625
	3,293,750
건강·교육세(4%)	131,750
총 납부해야 할 세액	3,425,500

A의 한계 경감 계산

1천만루피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200,000 x 30%)	60,000
가산: 부가세(430,875 - 281,250)	149,625
(여기서 281,250은 1천만루피를 기준으로 계산한 부가세 금액임)	209,625
1천만루피 초과 소득 부분	200,000
Marinal Relief 금액	9,625

A의 총소득은 10,200,000루피기 때문에 해당 납세자가 소득세 및 부가세로 납부해야 할 총액 중 1천만루피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세의 합계는 그 초과하는 소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즉 1천만루피를 초과하는 20만루피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세의 합계가 209,625루피기 때문에 20만루피와의 차액 9.625루피만큼을 한계 경감으로서 부가세가 포함된 납부 예정 세액에서 차감한다. 단, 건강·교육세는 한계 경감의 대상이 아니므로 한계 경감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료: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6.

마. 최저한세

1) MAT(법인)<sup>47)48)</sup>

MAT(Minimum Alternate Tax), 즉 최소 대체 세금의 목적은 납세가 면제되는 법인에 대한 과세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법인들이 장부 이익에 따라 최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1987년 금융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고 1988-89년 AY에서 시행되었으며 이후 1990년 재정법에 의해 철회되었다가 1997년 4월 1일부터 다시 도입되었다. MAT는 인도에 진출해 있는 외국 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에 1961년 「소득세법」 제115JB조에 따라 적용된다. MAT는 ‘법인’에만 적용되며, 개인, HUF, 파트너십 법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MAT에 따라 최저한세를 지불해야 하는 모든 법인은 양식 29B(소득세법 40B에 의함)에 규정된 대로 MAT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7) clear tax, “Tax Planning Under MAT”, <https://cleartax.in/s/tax-planning-under-mat/?ref=articles-search>, 검색일자: 2022. 10. 13.

48) Coverfox, “Minimum Alternate Tax(MAT)”, <https://www.coverfox.com/personal-finance/tax/minimum-alternate-tax-mat/>, 검색일자: 2022. 10. 13.

## 가) MAT 계산

MAT에 의해 법인은 아래 두 조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 ① 소득세법의 일반 조항에 따라 계산된 납세 의무(30% 세율에 교육세 및 추가 요금 부과)
- ② 장부 이익에 대한 MAT 조항에 따라 계산된 세금(15% 세율에 교육세 및 추가 요금 부과)

## 나) MAT 계산상 장부 이익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에서 다음 각 사항들을 가감한 순이익을 의미한다.

## (1) 순이익에 대한 가산(손익 계정에 계상된 경우)

- ① 소득세법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계산된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소득세
- ② 모든 준비금으로 산입한 금액
- ③ 배당받거나 받을 금액
- ④ 자회사 손실에 대한 총당금
- ⑤ 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을 포함한 감가상각
- ⑥ 이연법인세 총당금
- ⑦ 불확실한 부채에 대한 총당금(예: 대손총당금 총당금)
- ⑧ 섹션 10,11,12에 따른 면제 소득과 관련된 비용 금액(섹션 10AA 및 10(38) 제외)

## (2) 순이익에 대한 차감(손익 계정에 계상된 경우)

- ① 준비금 또는 총당금에서 인출된 금액
- ② 섹션 10,11,12과 관련된 소득 금액(섹션 10AA 및 10(38) 제외)
- ③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감가상각 한도만큼 재평가적립금에서 인출되어 손익계정에 산입한 금액
- ④ 이월된 손실 금액(감가상각비 미포함) 또는 미흡수 감가상각비 중 회계 장부상 적은 금액(이월 손실 또는 미흡수 감가상각비가 0이면 차감하지 않음)
- ⑤ 손익계정에 차감된 이연법인세액

⑥ 손익 계정에 차감된 감가상각액(자산 재평가에 따른 감가상각 제외)

다) MAT 이월공제

법인이 MAT에 따라 납세 의무를 부담한 경우 섹션 115JAA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일반 조항에 의해 계산된 세액에 대해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일반 조항에 의해 계산된 세액을 초과한 MAT 초과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즉, MAT 계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 1961년 소득세법의 일반 조항에 따라 납부할 소득세보다 큰 경우, 최저한세를 납부하게 되고, 그 차이는 금액을 차기 일반 조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차감할 수 있다. 이러한 MAT 이월 공제액은 15년(이월공제액이 생성된 평가연도의 직후)간 이월할 수 있고, 공제 시 최종 납부 금액이 그 공제연도의 MAT에 따른 납부세액이 되도록 한도로 공제한다.

〈표 2-1-25〉 MAT 이월공제액에 의한 세액조정 예시

과세 연도	MAT에 따른 납부세액	일반 조항에 따른 납부세액	실제 납부세액	MAT 이월공제 (115JAA)	세액공제 상계/조정	사용 가능한 총 세액 공제
2012-13	8,00,000	5,00,000	8,00,000	3,00,000	-	3,00,000
2013-14	9,00,000	6,50,000	9,00,000	2,50,000	-	5,50,000
2014-15	10,00,000	7,00,000	10,00,000	3,00,000	-	8,50,000
2015-16	7,00,000	10,00,000	7,00,000	-	3,00,000	5,50,000
2016-17	6,00,000	11,00,000	6,00,000	-	5,00,000	50,000

자료: clear tax, "Tax Planning Under MAT", <https://cleartax.in/s/tax-planning-under-mat/?ref=articles-search>

2) AMT(개인)<sup>49)</sup>

AMT는 일반적인 과세를 대신하여 부과되는 최저한세이다. AMT의 세율은 18.5%이며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에 대한 세금인 조정 총소득이 대체 최저 세금보다 낮은 경우 해당 회계연도(FY)의 '조정 총소득'에 부과되게 된다. 이 최저세의 개념은 법인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후 점차 비법인 납세자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법인이 아닌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세부적인 AMT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49) cleartax, 'AMT - What is Alternative Minimum Tax ?', <https://cleartax.in/s/amt-alternative-minimum-tax/?ref=articles-search>, 검색일자: 2022. 10. 17.

- ① 법인이 아닌 모든 납세자
- ②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공제를 청구한 납세자
  - 제 VI-A장 'C. - 특정 소득에 대한 공제': 해당 공제는 호텔 사업, 소규모 산업 사업, 주택 프로젝트, 수출 사업, 인프라 개발 등과 같은 특정 산업의 이익과 이익과 관련하여 제공된 섹션 80H - 80RB에 따른 것이다. 단, 협동조합에 공제를 제공하는 섹션 80P에 따른 공제는 제외된다.
  - 섹션 35AD에 따른 공제
  - 섹션 10AA에 따른 이익 연계 공제

즉, AMT 규정은 '사업 또는 직업의 이익'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비법인 납세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조정된 총소득이 2천만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은 적용을 배제하며, Hindu Undivided Family(HUF), Association of Persons(AOP), Body of Individuals(BOI) 및 인공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 AMT 계산

AMT에 의해 AMT가 적용되는 납세자는 아래 두 조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 ① 소득세법의 일반 조항에 따라 계산된 납세 의무(30% 세율에 교육세 및 추가 요금 부과)
- ② AMT 조항에 따라 계산된 세금(18.5% 세율에 교육세 및 추가 요금 부과)

〈표 2-1-26〉 조정 총소득 계산

상세	금액
과세소득(A)	XXXXX
추가: 80P(B)를 제외하고 80H에서 80RRB까지 챕터 VI-A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XXXXX
섹션 10AA(C)에 따라 청구된 공제	XXXXX
섹션 35AD에 따라 허용되는 일반 감가상각으로 감소된 경우 공제 청구됨(D)	XXXXX
조정 총소득(E) = (A)+(B)+(C)+(D)	XXXXX
AMT - (E)의 18.5%	XXXXX

자료: clear tax, "AMT - What is Alternative Minimum Tax?", <https://cleartax.in/s/amt-alternative-minimum-tax/?ref=articles-search>.

나) AMT 이월공제

납세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AMT 대상인 경우 일반적인 납세액과 AMT의 차액을 AMT 이월공제액으로 이월할 수 있다. AMT 이월공제액은 15회계연도까지 이월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된 납세 의무가 AMT보다 높아 AMT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경우 소득세법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된 납세 의무와 AMT의 차액만큼만 공제할 수 있음을 유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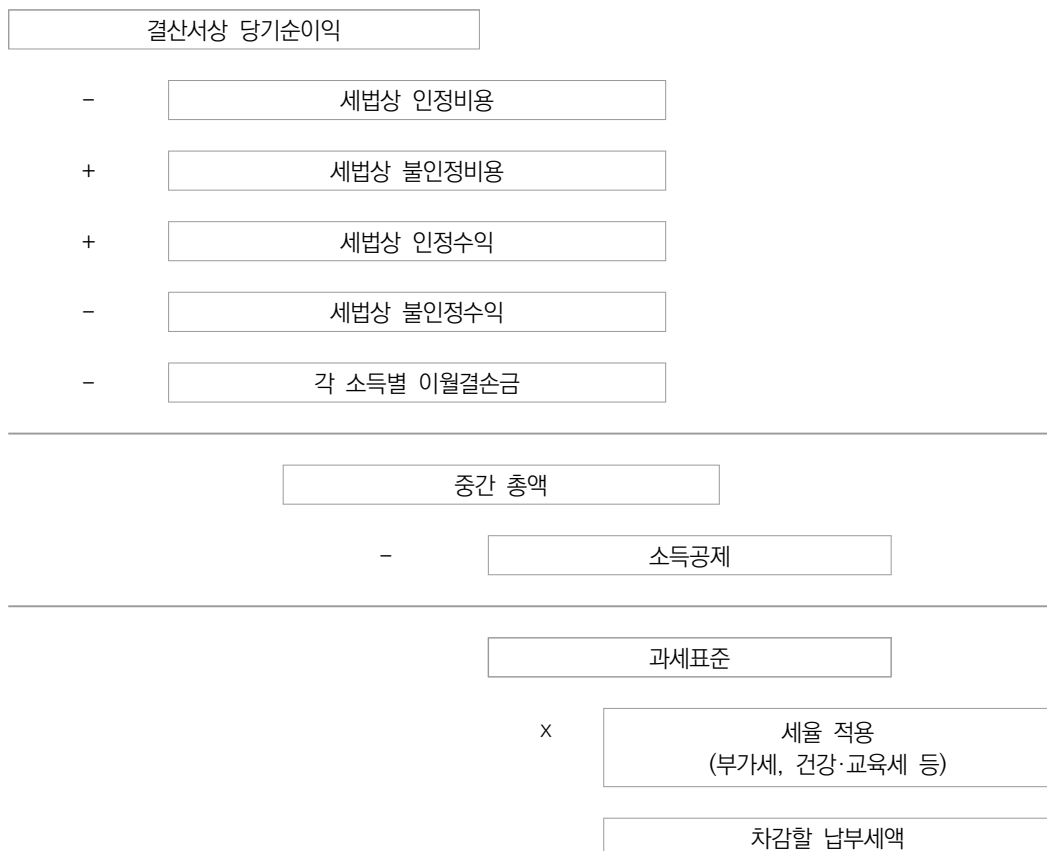
예제 (AMT 계산)		
· 개인 A씨의 회계연도 1과 2의 과세 소득은 각 1,930,000, 2,050,000루피다. A씨가 회계연도 1, 2와 관련하여 총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시오		
해설		
	회계연도 1	회계연도 2
조정 총소득 산출		
과세소득(A)	1,930,000	2,050,000
가산: 80P를 제외하고 80H에서 80RRB까지 VI-A장에 따라 청구된 공제 (B)	100,000	0
섹션 10AA에 따라 청구된 공제 (C)	75,000	25,000
섹션 35AD에 따라 정기 감가상각이 허용되는 경우 청구된 공제 (D)	450,000	0
조정 총 소득(E) = (A)+(B)+(C)+(D)	2,555,000	2,075,000
일반 소득세와 AMT 비교		
AMT - ((E)의 18.5% + 교육세 @ 4%) (F)	491,582	399,230
소득세법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된 납세 의무 (교육세를 포함한 개인에 대한 일반 납세 의무)(G)	407,160	444,600
납세자의 납세 의무 - (H) = (F)와 (G) 중 큰 것	491,582	44,460
차감 : AMT 이월공제액	0	45,370
납세자의 최종 납세 의무	491,582	399,230
회계연도1에 소득세법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된 납세 의무와 AMT의 차액인 84,422루피만큼의 AMT 이월공제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이후 15회계연도 동안 이월된다. 그후 회계연도2에는 소득세법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된 납세 의무가 AMT보다 크므로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만큼 납부한다. 이때, 회계연도1에 AMT 이월공제액이 발생했으므로 이를 회계연도2의 일반 규정에 따르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미청구 AMT 이월공제액 중 소득세법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된 납세 의무와 AMT의 차액인 45,370(4,44,600-3,99,230)만큼만 공제할 수 있다.		

자료: clear tax, "AMT - What is Alternative Minimum Tax?", <https://cleartax.in/s/amt-alternative-minimum-tax/?ref=articles-search>

## 5. 납부세액 산출 흐름

각 소득 분류별 소득을 납세자 단위로 합산한 후 인도 소득세법상 인정, 불인정하는 수익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각 소득별 이월 가능한 공제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그 후 (구)소득세율과 (신)소득세율 중 적용할 세율을 선택하고 각 소득세율에 맞는 세율 및 부가세, 건강·교육세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이때, 부가세에 대해서는 한계 경감을 고려하고, 납세자가 AMT 및 MAT 적용 대상이라면 각 규정에 해당하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할 세액을 산출한다.

[그림 2-1-1] 차감할 납부세액 산출 도식



(AMT, MAT 적용 대상인 경우 최저한세 적용 후 조정 총소득 산출)

자료: 국세청, 『인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p. 33, 저자 수정.

## VIII 신고·납부 및 징수체계

### 1. 신고

#### 가. 소득세 신고 대상 및 과세기간

개인의 경우 총소득 금액이 회계연도 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company와 firm은 총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의무는 거주자뿐 아니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에 시작되어 다음해 3월에 종료되고 세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회계연도 다음연도가 과세연도가 된다.

회계연도의 부채 산정은 전 회계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나. 세금 신고 및 평가

##### 1) 신고서 제출기한

세금 신고서는 평가연도의 7월 31일까지이고 납세자 유형별로 정해진 서식에 맞추어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만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므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과세관청 휴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자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된다.

소득이 과세기준 미만인 사람 또는 연방정부에서 고시한 계층의 사람은 자산이 인도 외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출한 신고서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또는 부과절차가 완료되는 날 중 더 이른 날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2-1-27〉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제출 기한

서식	납세자 유형	신고기한
ITR-1	개인(근로/연금/가족연금/이자소득자)	7월 31일
ITR-2	개인, HUF(사업소득이 없는 자)	7월 31일
ITR-3	firm의 파트너인 개인, HUF(사업소득이 없는 자) 1) firm에 대한 감사가 요구되지 않은 경우 2) firm에 대한 감사가 세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1) 7월 31일 2) 9월 30일
ITR-4	개인, HUF(사업소득이 있는 자) 1) 납세자에 대한 감사가 요구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감사가 세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1) 7월 31일 2) 9월 30일
ITR-5	firm, 조합 1) 납세자에 대한 감사가 요구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감사가 세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1) 7월 31일 2) 9월 30일
ITR-6	company(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9월 30일(11월 30일)
ITR-7	재단 등	9월 30일(11월 30일)
ITR-8	회사 복지급여에 대한 신고 1) 납세자에 대한 감사가 요구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감사가 세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1) 7월 31일 2) 9월 30일

자료: 국세청, 『인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p. 35.

## 2)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

인도 세법은 시기적절하고 일관된 세금 납부 및 신고서 제출을 위해 세액신고 및 제출 항목들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의무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가산세 항목들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허위 계산서 교부,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등이 있으며, 평가가 이루어지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 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법률에 따라 부과된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어느 때라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서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세무공무원은 15일 이내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서 신고인에게 수정할 기회를 줄 수 있고, 정정을 요구받은 납세자가 기간 내 정정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주요 가산세 항목과 그 가산세액에 대해서는 아래 〈표 2-1-28〉에서 상세하게 기술한다.

〈표 2-1-28〉 주요 가산세 항목 및 가산세액

SECTION	항목	가산세
22(1)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정관이 결정(다만, 그 금액은 체납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270A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다만, 허위신고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의 200%)
271A	장부 및 기타 문서 보관 의무 위반	25,000루피
271AAD	가공계산서 등 계산서 사항 허위기재	감정관이 평가한 금액(누락한 금액과 동일한 가산세 부과 가능)
271AAB(1), 271AAB(1A)	미공개 소득	누락한 금액의 10~60%
271B	감사 및 감사 보고서 누락	사업소득 : 총수입의 1/2 근로소득: MIN[총수입의 1/2, 150,000루피]
271C, 271CA	TDS/TCS 미납,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미납세액, 원천징수 불이행액
271H	TDS/TCS 명세서 미교부 또는 잘못된 명세서 교부	10,000루피~100,000루피
271FAA	부정확한 금융 거래/신고 계정 명세서 제공	50,000루피
285A	적격 투자 펀드가 규정된 기간 내에 명세서/정보/문서 미제출	500,000루피
271GA	국제 거래와 관련하여 정보/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의 2%
271J	회계사/상업 은행가/등록 감정인이 보고서/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정보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잘못된 보고서/정보마다 10,000루피
272A(1)	기타 부서의 질문에 답변 거부 소득세 절차에서 작성된 진술서 서명 거부 증거 제출/장부작성 소환 불응 통지를 준수하지 않음	10,000루피

자료: clear tax, "Summary of Penalties Under the Income Tax Act", <https://cleartax.in/s/income-tax-act-penalties>, 검색일자: 2023. 1. 6. 게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3) 납세대상자별 고유번호(PAN: Permanent account number)

소득을 신고하는 모든 납세자들은 인도 국세청에 등록함으로써 고유한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를 PAN(Permanent account number)이라고 한다. 「소득세법」 139A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PAN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이다.

- ① 과세대상인 소득이 면세점을 초과한 납세자
- ② 전년도 매출 총액이 50만루피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경영한 납세자
- ③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선단체나 종교 신탁
- ④ 전년도에 직원에게 제공한 부가혜택을 신고해야 하는 고용주
- ⑤ 회계연도에 총액 200만루피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이 아닌 거주자
- ⑥ 주요 임원 또는 회사를 대신할 권한이 있는 자
- ⑦ 수익을 위해 이사회가 정하는 거래를 하려는 사람

위에서 실시한 특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PAN의 사용을 위해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PAN 사용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0루피의 벌금을 부과한다.

#### 4) 수정신고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를 완료하였고 신고 내용에 누락 또는 잘못된 진술이 기재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과세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과세 완료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5) 신고의 평가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조사할 수 있다. 납세자의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공동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납세자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명세서 등 법정 서식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회계자료 및 장부 등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자의 소득이나 손실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얻기 위해 평가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과세대상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난 자료는 요구할 수 없다.

#### 6) 과세관청의 오류 수정

과세관청은 오류를 발견하거나 또는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오류의 수정은 수정을 요청한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년 이내에만 가능하고, 납세자가 오류의 수정을 요청한 것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승인 또는 거부의 통지를 해야 한다.

## 2. 납부

### 가. 중간예납 제도

60세 이상 개인을 제외하고, 연 소득에 대해 10,000루피 이상의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후 세액)가 예상되는 납세의무자는 각 분기별로 예납 비율에 따라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중간예납액은 추정되는 총소득에 기초한 총 납부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이다.

〈표 2-1-29〉 중간예납 비율

분기	중간예납 기한	예납 비율
1분기	6월 15일	15%
2분기	9월 15일	45%
3분기	12월 15일	75%
4분기	3월 15일	100%

자료: KOTRA, 『2022년 인도 비즈니스 가이드』, 2022, p. 82.

### 나. 자진신고 납세제도

납세자가 중간예납 절차 중 납부해야 할 금액의 9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이자를 소득세 신고서에 자진 반영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납세자가 중간예납 시 납부할 금액의 9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자는 해당 과세연도 말 후 4월 1일부터 납부일자까지 발생한 부족 세액에 대해 매달 1%의 비율로 부과된다.

## [그림 2-1-2] (부록1) 소득세 신고 서식(Form ITR-1)

FORM ITR-1 SAHAJ		<b>INDIAN INCOME TAX RETURN</b>		Assessment Year	
[For individuals being a resident (other than not ordinarily resident) having total income upto Rs.50 lakh, having Income from Salaries, one house property, other sources (Interest etc.), and agricultural income upto Rs.5 thousand] [Not for an individual who is either Director in a company or has invested in unlisted equity shares or in cases where TDS has been deducted u/s 194N or if income-tax is deferred on ESOP] <i>(Refer instructions for eligibility)</i>		<b>2022 - 23</b>			
PART A GENERAL INFORMATION					
(A1) PAN			(A2) First Name	(A4) Date of Birth	(A5) Aadhaar Number (12 digits)/Aadhaar Enrolment Id (28 digits) (If eligible for Aadhaar No.)
			(A2a) Middle Name		
			(A3) Last name		
(A6) Mobile No.			(A7) Email Address	Address: (A8) Flat/Door/Block No. (A9) Name of Premises/Building/Village (A10) Road/Street/Post Office Area/Locality (A11) Town/City/District (A12) State (A13) Country (A14) PIN code	
(A15) Filed u/s (Tick) [Please see instruction]	<input type="checkbox"/> 139(1)-On or before due date, <input type="checkbox"/> 139(4)-Belated, <input type="checkbox"/> 139(5)-Revised, <input type="checkbox"/> 119(2)(b)- After Condonation of delay.		(A16) Nature of employment- <input type="checkbox"/> Central Govt. <input type="checkbox"/> State Govt. <input type="checkbox"/> Public Sector Undertaking <input type="checkbox"/> Pensioners-CG <input type="checkbox"/> Pensioners-SG   <input type="checkbox"/> Pensioners-PSU <input type="checkbox"/> Pensioners-Others <input type="checkbox"/> Others <input type="checkbox"/> Not Applicable (e.g. Family Pension etc.)		
(A17) Or Filed in response to notice u/s	<input type="checkbox"/> 139(9), <input type="checkbox"/> 142(1), <input type="checkbox"/> 148,				
(A18) If revised/defective, then enter Receipt No. and Date of filing original return (DD/MM/YYYY)			/ /		
(A19) If filed in response to notice u/s 139(9)/142(1)/148 or order u/s 119(2)(b)- enter Unique Number/Document Identification Number (DIN) & Date of such Notice or Order			/ /		
(A20) Are you opting for new tax regime u/s 115BAC?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A21) Are you filing return of income under Seventh proviso to section 139(1) but otherwise not required to furnish return of income? - (Tick)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please furnish following information: [Note: To be filled only if a person is not required to furnish a return of income under section 139(1) but filing return of income due to fulfilling one or more conditions mentioned in the seventh proviso to section 139(1)]					
(i)	Have you deposited amount or aggregate of amounts exceeding Rs. 1 Crore in one or more current account during the previous year? (Yes/No)				Amount (Rs) (If Yes)
(ii)	Have you incurred expenditure of an amount or aggregate of amount exceeding Rs. 2 lakhs for travel to a foreign country for yourself or for any other person? (Yes/ No)				Amount (Rs) (If Yes)
(iii)	Have you incurred expenditure of amount or aggregate of amount exceeding Rs. 1 lakh on consumption of electricity during the previous year? (Yes/No)				Amount (Rs) (If Yes)
(iv) Are you required to file a return as per other conditions prescribed under clause (iv) of seventh proviso to section 139(1) (If yes, please select the relevant condition from the drop-down menu)					(Tick)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그림 2-1-2]의 계속

PART B GROSS TOTAL INCOME					
Whole - Rupee (₹) only					
SALARY / PENSION	B1	i	Gross Salary (ia + ib + ic + id + ie)	i	
		a	Salary as per section 17(1)	ia	
		b	Value of perquisites as per section 17(2)	ib	
		c	Profit in lieu of salary as per section 17(3)	ic	
		d	Income from retirement benefit account maintained in a notified country u/s 89A (Please choose from drop down menu)	id	
		e	Income from retirement benefit account maintained in a country other than notified country u/s 89A	ie	
	ii	Less allowances to the extent exempt u/s 10 (Please choose from drop down menu) (Ensure that it is included in salary income u/s 17(1)/17(2)/17(3))		ii	
	iii	Less: Income claimed for relief from taxation u/s 89A		iii	
	iii	Net Salary (i - ii - iii)		iii	
	iv	Deductions u/s 16 (iva + ivb + ivc)		iv	
		a	Standard deduction u/s 16(ia)	iva	
		b	Entertainment allowance u/s 16(ii)	ivb	
		c	Professional tax u/s 16(iii)	ivc	
	v	Income chargeable under the head 'Salaries' (iii - iv)		B1	
B2	Tick applicable option <input type="checkbox"/> Self-Occupied <input type="checkbox"/> Let Out <input type="checkbox"/> Deemed Let Out				
HOUSE PROPERTY	i	Gross rent received/ receivable/ lettable value during the year		i	
	ii	Tax paid to local authorities		ii	
	iii	Annual Value (i - ii)		iii	
	iv	30% of Annual Value		iv	
	v	Interest payable on borrowed capital		v	
	vi	Arrears/Unrealised rent received during the year less 30%		vi	
	vii	Income chargeable under the head 'House Property' (iii - iv - v) + vi (If loss, put the figure in negative) Note: - Maximum loss from House Property that can be set-off is INR 2, 00,000. To avail the benefit of carry forward and set of loss, please use ITR -2		B2	
B3	Income from Other Sources (drop down like interest from saving account, deposit etc. to be provided specifying nature of income and in case of dividend income and Income from retirement benefit account maintained in a notified country u/s 89A, please mention quarterly breakup for allowing applicable relief from section 234C)		B3		
	Less: Deduction u/s 57(iia) (in case of family pension only)				
	Less: Income claimed for relief from taxation u/s 89A				
B4	Gross Total Income (B1+B2+B3) (If loss, put the figure in negative)		B4		
	Note: To avail the benefit of carry forward and set of loss, please use ITR -2				
PART C - DEDUCTIONS AND TAXABLE TOTAL INCOME (Refer instructions for Deduction limit as per Income-tax Act)					

자료: Income Tax Department, "Income Tax Department > Downloads > Income Tax Returns", <https://incometaxindia.gov.in/pages/downloads/income-tax-return.aspx>, 검색일자: 2022. 12. 20.

[그림 2-1-3] (부록1) 소득세 신고 서식(Form ITR-3)

FORM	ITR-3	INDIAN INCOME TAX RETURN				Assessment Year						
		(For individuals and HUFs having income from profits and gains of business or profession) (Please see rule 12 of the Income-tax Rules,1962) (Please refer instructions)				2	0	2	2	-	2	3
<b>Part A-GEN GENERAL</b>												
PERSONAL INFORMATION	(A1) First name	(A2) Middle name	(A3) Last name	(A4) PAN								
	(A5) Flat/Door/Block No.	(A6) Name of Premises/Building/Village		(A14) Status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dividual <input type="checkbox"/> HUF								
	(A7) Road/Street/Post Office	(A8) Date of Birth/Formation (DD/MM/YYYY)		(A15) Date of Commencement of Business (DD/MM/YYYY)								
	(A9) Area/locality	(A16) Aadhaar Number (12 digit)/ Aadhaar Enrolment Id (28 digit) (if eligible for Aadhaar)										
	(A10) Town/City/District	(A11) State			(A12) PIN code/ZIP code							
	(A17) Residential/Office Phone Number with STD code/Mobile No.			Mobile No. 2								
				1								
	(A18) Email Address-1 (self)						Email Address-2					
	FILING STATUS	(A19)(a)	(i) Filed u/s (Tick)[Please see instruction]		<input type="checkbox"/> 139(1)- On or Before due date, <input type="checkbox"/> 139(4)- After due date, <input type="checkbox"/> 139(5)- Revised Return, <input type="checkbox"/> 92CD-Modified return, <input type="checkbox"/> 119(2)(b)- after condonation of delay							
				(ii) Or Filed in response to notice u/s		<input type="checkbox"/> 139(9) <input type="checkbox"/> 142(1), <input type="checkbox"/> 148						
(b)		Have you opted for new tax regime u/s 115BAC and filed Form 10IE in AY 2021-22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Option for current assessment year <input type="checkbox"/> Opting in now <input type="checkbox"/> Not opting <input type="checkbox"/> Continue to opt <input type="checkbox"/> Opt out										
(bi)		For other than "not opting", please furnish						Date of filing of form 10IE DD/MM/YYYY		Acknowledgement number:		
(c)		Are you filing return of income under seventh proviso to Section 139(1) but otherwise not required to furnish return of income? – (Tick)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please furnish following information [Note: To be filled only if a person is not required to furnish a return of income under section 139(1) but filing return of income due to fulfilling one or more conditions mentioned in the seventh proviso to section 139(1)]										
(ci)		Have you deposited amount or aggregate of amounts exceeding Rs. 1 Crore in one or more current account during the previous year? (Yes/No)						Amount (Rs) (If Yes)				
(cii)		Have you incurred expenditure of an amount or aggregate of amount exceeding Rs. 2 lakhs for travel to a foreign country for yourself or for any other person? (Yes/No)						Amount (Rs) (If Yes)				
(ciii)		Have you incurred expenditure of amount or aggregate of amount exceeding Rs. 1 lakh on consumption of electricity during the previous year? (Yes/No)						Amount (Rs) (If Yes)				
(civ)		Are you required to file a return as per other conditions prescribed under clause (iv) of seventh proviso to section 139(1) (If yes, please select the relevant condition from the drop-down menu)						(Tick)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d)		If revised/Defective/Modified, then enter Receipt No. and Date of filing original return (DD/MM/YYYY)						/ /				

[그림 2-1-3]의 계속

(e)	If filed, in response to a notice u/s 139(9)/142(1)/148 or order u/s 119(2)(b), enter Unique Number/Document Identification Number and date of such notice/order, or if filed u/s 92CD enter date of advance pricing agreement		(unique number)	/	/														
(f)	Residential Status in India (for individuals) (Tick applicable option)	A. Resident	<input type="checkbox"/> You were in India for 182 days or more during the previous year [section 6(1)(a)] <input type="checkbox"/> You were in India for 60 days or more during the previous year, and have been in India for 365 days or more within the 4 preceding years [section 6(1)(c)] [where Explanation 1 is not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You are a citizen of India, who left India, for the purpose of employment, as a member of the crew of an Indian ship and were in India for 182 days or more during the previous year and 365 days or more within the preceding 4 years [Explanation 1(a) of section 6(1)(c)] <input type="checkbox"/> You are a citizen of India or a person of Indian origin and have come on a visit to India during the previous year and were in India for a) 182 days or more during the previous year and 365 days or more within the preceding 4 years; or b) 120 days or more during the previous year and 365 days or more within the preceding 4 years if the total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foreign sources, exceeds Rs. 15 lakh. [Explanation 1(b) of section 6(1)(c)]																
		B. Resident but not Ordinarily Resident	<input type="checkbox"/> You have been a non-resident in India in 9 out of 10 preceding years [section 6(6)(a)] <input type="checkbox"/> You have been in India for 729 days or less during the 7 preceding years [section 6(6)(a)] <input type="checkbox"/> You are a citizen of India or person of Indian origin, who comes on a visit to India, having total income, other than the income from foreign sources, exceeding Rs. 15 lakh and have been in India for 120 days or more but less than 182 days during the previous year [section 6(6)(c)] <input type="checkbox"/> You are a citizen of India having total income, other than the income from foreign sources, exceeding Rs. 15 lakh during the previous year and not liable to tax in any other country or territory by reason of your domicile or residence or any other criteria of similar nature [section 6(6)(d) rws 6(1A)]																
		C. Non-resident	<input checked="" type="checkbox"/> You were a non-resident during the previous year. (i) Please specify the jurisdiction(s) of residence during the previous year - <table border="1"> <thead> <tr> <th>S.No.</th> <th>Jurisdiction of residence</th> <th>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th> </tr> </thead> <tbody> <tr> <td>1</td> <td></td> <td></td> </tr> <tr> <td>2</td> <td></td> <td></td> </tr> </tbody> </table> (ii) In case you are a Citizen of India or a Person of Indian Origin (POI), please specify - <table border="1"> <thead> <tr> <th>Total period of stay in India during the previous year (in days)</th> <th>Total period of stay in India during the 4 preceding years (in days)</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r> </tbody> </table>				S.No.	Jurisdiction of residence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1			2			Total period of stay in India during the previous year (in days)	Total period of stay in India during the 4 preceding years (in days)		
		S.No.	Jurisdiction of residence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1																			
2																			
Total period of stay in India during the previous year (in days)	Total period of stay in India during the 4 preceding years (in days)																		
Residential Status in India (for HUF) (Tick applicable option)	<input type="checkbox"/> Resident <input type="checkbox"/> Resident but not Ordinarily Resident <input type="checkbox"/> Non-resident																		
(g)	Do you want to claim the benefit under section 115H? (applicable in case of resident)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h)	Are you governed by Portuguese Civil Code as per section 5A?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please fill Schedule 5A)																		
(i)	Whether this return is being filed by a representative assessee?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furnish following information -																		
	(1) Name of the representative assessee																		
	(2) Capacity of the Representative (drop down to be provided)																		
	(3)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assessee																		
	(4) Permanent Account Number (PAN)/Aadhaar No. of the representative assessee																		
(j)	Whether you were Director in a company at any time during the previous year?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please furnish following information -																		
	Name of Company	Type of Company	PAN	Whether its shares are listed or unlisted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DIN)														
(k)	Whether you are Partner in a firm?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please furnish following information																		
	Name of Firm		PAN																
(l)	Whether you have held unlisted equity shares at any time during the previous year?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please furnish following information in respect of equity shares																		
	Name of company	Type of Company	PAN	Opening balance		Shares acquired during the year				Shares transferred during the year		Closing balance							
				No. of shares	Cost of acquisition	No. of shares	Date of subscription / purchase	Face value per share	Issue price per share (in case of fresh issue)	Purchase price per share (in case of purchase from existing shareholder)	No. of shares	Sale consideration	No. of shares	Cost of acquisi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m)	In case of non-resident, is there a permanent establishment (PE) in India?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그림 2-1-3]의 계속

		In the case of non-resident, is there a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SEP) in India (Tick) <input checked=""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please provide details of	
(n)		(a) aggregate of payments arising from the transaction or transactions during the previous year as referred in Explanation 2A(a) to Section 9(1)(i) (b) number of users in India as referred in Explanation 2A(b) to Section 9(1)(i).	
(o)		Whether assessee has a unit in an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and derives income solely in convertible foreign exchang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AUDIT INFORMATION	(a1)	Are you liable to maintain accounts as per section 44AA?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a2)	Whether assessee is declaring income only under section 44AE/44B/44BB/44AD/44ADA/44BBA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a2i	If No, whether during the year Total sales/turnover/gross receipts of business is between Rs. 1 crore and Rs. 10crores?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turnover does not exceed 1 crore <input type="checkbox"/> No, turnover exceeds 10 crores		
	a2ii	If Yes is selected at a2i, whether aggregate of all amounts received including amount received for sales, turnover or gross receipts or on capital account like capital contributions, loans etc. during the previous year, in cash & non-a/c payee cheque/DD, does not exceed five per cent of said amount?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a2iii	If Yes is selected at a2i, whether aggregate of all payments made including amount incurred for expenditure or on capital account such as asset acquisition, repayment of loans etc., in cash & non-a/c payee cheque/DD during the previous year does not exceed five per cent of the said payment?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b)	Are you liable for audit under section 44AB?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c)	If (b) is Yes, whether the accounts have been audited by an accountant?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furnish the following information below		
		(1)	Date of furnishing of the audit report (DD/MM/YYYY) / /	
		(2)	Name of the auditor signing the tax audit report	
		(3)	Membership No. of the auditor	
	(4)	Name of the auditor (proprietorship/ firm)		
	(5)	Proprietorship/firm registration number		
	(6)	Permanent Account Number (PAN)/Aadhaar No. of the proprietorship/ firm		
	(7)	Date of report of the audit		
	(di)	Are you liable for Audit u/s 92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dii)	If (di) is Yes, Whether the accounts have been audited u/s 92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Date of furnishing the audit report? DD/MM/YY
	(diii)	If liable to furnish other audit report, mention whether have you furnished such report. If yes, please provide the details as under: (Please see Instruction)		
		SI. No.	Section Code	Date (DD/MM/YYYY)
	(e)	If liable to audit under any Act other than the Income-tax act, mention the Act, section and date of furnishing the audit report?		
		Act and section	(DD/MM/YY)	Act and section (DD/MM/YY)

NATURE OF BUSINESS	NATURE OF BUSINESS OR PROFESSION, IF MORE THAN ONE BUSINESS OR PROFESSION INDICATE THE THREE MAIN ACTIVITIES/ PRODUCTS (OTHER THAN THOSE DECLARING INCOME UNDER SECTIONS 44AD, 44ADA AND 44AE)			
	S.No.	Code <i>[Please see instruction]</i>	Trade name of the proprietorship, if any	Description
	(i)			
	(ii)			
	(iii)			

Part A-B		BALANCE SHEET AS ON 31 <sup>ST</sup> DAY OF MARCH, 2022 OF THE PROPRIETARY BUSINESS OR PROFESSION (fill items below in a case where regular books of accounts are maintained, otherwise fill item 6)			
SOURCES OF FUNDS	I	Proprietor's fund			
	a	Proprietor's capital			a
	b	Reserves and Surplus			
	i	Revaluation Reserve	bi		
	ii	Capital Reserve	bii		
	iii	Statutory Reserve	biii		

[그림 2-1-3]의 계속

	iv	Any other Reserve	biv	
	v	Total (bi + bii + biii + biv)		bv
c	Total proprietor's fund (a + bv)			1c
<b>2 Loan funds</b>				
<b>a Secured loans</b>				
i	Foreign Currency Loans		ai	
<b>ii Rupee Loans</b>				
	A From Banks		iiA	
	B From others		iiB	
	C Total (iiA + iiB)		iiC	
iii	Total (ai + iiC)			aiii
<b>b Unsecured loans (including deposits)</b>				
i	From Banks		bi	
ii	From others		bii	
iii	Total (bi + bii)			biiii
c	Total Loan Funds (aiii + biii)			2c
<b>3 Deferred tax liability</b>				
<b>4 Sources of funds (1c + 2c + 3)</b>				
<b>1 Fixed assets</b>				
a	Gross: Block		1a	
b	Depreciation		1b	
c	Net Block (a - b)		1c	
d	Capital work-in-progress		1d	
e	Total (1c + 1d)			1e
<b>2 Investments</b>				
<b>a Long-term investments</b>				
i	Government and other Securities - Quoted		ai	
ii	Government and other Securities - Unquoted		aii	
iii	Total (ai + aii)			aiiii
<b>b Short-term investments</b>				
i	Equity Shares, including share application money		bi	
ii	Preference Shares		bii	
iii	Debentures		biii	
iv	Total (bi + bii + biii)			biv
c	Total investments (aiiii + biv)			2c
<b>3 Current assets, loans and advances</b>				
<b>a Current assets</b>				
<b>i Inventories</b>				
	A Stores/consumables including packing material		iA	
	B Raw materials		iB	
	C Stock-in-process		iC	
	D Finished Goods/Traded Goods		iD	
	E Total (iA + iB + iC + iD)			iE
ii	Sundry Debtors			
<b>iii Cash and Bank Balances</b>				
	A Cash-in-hand		iiiA	
	B Balance with banks		iiiB	
	C Total (iiiA + iiiB)			iiic
iv	Other Current Assets			
v	Total current assets (iE + aii + iiic + aiv)			av

[그림 2-1-3]의 계속

NO ACCOUNT CASE	<b>b Loans and advances</b>				
	<b>i</b>	Advances recoverable in cash or in kind or for value to be received	<b>bi</b>		
	<b>ii</b>	Deposits, loans and advances to corporates and others	<b>bii</b>		
	<b>iii</b>	Balance with Revenue Authorities	<b>biii</b>		
	<b>iv</b>	Total (bi + bii + biii)		<b>biv</b>	
	<b>c Total of current assets, loans and advances (av + biv)</b>				<b>3c</b>
	<b>d Current liabilities and provisions</b>				
	<b>i</b>	<b>Current liabilities</b>			
		<b>A Sundry Creditors</b>	<b>iA</b>		
		<b>B Liability for Leased Assets</b>	<b>iB</b>		
		<b>C Interest Accrued on above</b>	<b>iC</b>		
		<b>D Interest accrued but not due on loans</b>	<b>iD</b>		
		<b>E Total (iA + iB + iC + iD)</b>		<b>iE</b>	
	<b>ii</b>	<b>Provisions</b>			
		<b>A Provision for Income Tax</b>	<b>iiA</b>		
		<b>B Provision for Leave encashment/Superannuation/Gratuity</b>	<b>iiB</b>		
		<b>C Other Provisions</b>	<b>iiC</b>		
		<b>D Total (iiA + iiB + iiC)</b>		<b>iiD</b>	
	<b>iii</b>	<b>Total (iE + iiD)</b>			<b>diii</b>
	<b>e Net current assets (3c - diii)</b>				<b>3e</b>
<b>4</b>	<b>a</b>	Miscellaneous expenditure not written off or adjusted	<b>4a</b>		
	<b>b</b>	Deferred tax asset	<b>4b</b>		
	<b>c</b>	Profit and loss account/ Accumulated balance	<b>4c</b>		
	<b>d</b>	Total (4a + 4b + 4c)		<b>4d</b>	
<b>5 Total, application of funds (1e + 2c + 3e + 4d)</b>				<b>5</b>	
<b>6 In a case where regular books of account of business or profession are not maintained - (furnish the following information as on 31<sup>st</sup> day of March, 2022, in respect of business or profession)</b>					
	<b>a</b>	Amount of total sundry debtors		<b>6a</b>	
	<b>b</b>	Amount of total sundry creditors		<b>6b</b>	
	<b>c</b>	Amount of total stock-in-trade		<b>6c</b>	
	<b>d</b>	Amount of the cash balance		<b>6d</b>	

<b>Part A-Manufacturing Account</b>		<b>Manufacturing Account for the financial year 2021-22 (fill items 1 to 3 in a case where regular books of accounts are maintained, otherwise fill items 61 to 65 as applicable)</b>			
<b>1</b>	<b>Debits to manufacturing account</b>				
	<b>Opening Inventory</b>				
<b>A</b>	<b>i</b>	Opening stock of raw-material	<b>i</b>		
	<b>ii</b>	Opening stock of Work in progress	<b>ii</b>		
	<b>iii</b>	Total (i + ii)		<b>Aiii</b>	
	<b>B Purchases (net of refunds and duty or tax, if any)</b>				<b>B</b>
	<b>C Direct wages</b>				<b>C</b>
	<b>D Direct expenses (Di + Dii + Diii)</b>				<b>D</b>
	<b>i</b>	Carriage inward	<b>i</b>		
	<b>ii</b>	Power and fuel	<b>ii</b>		
	<b>iii</b>	Other direct expenses	<b>iii</b>		
	<b>E Factory Overheads</b>				
	<b>I</b>	Indirect wages	<b>i</b>		
	<b>ii</b>	Factory rent and rates	<b>ii</b>		
	<b>iii</b>	Factory Insurance	<b>iii</b>		
	<b>Iv</b>	Factory fuel and power	<b>iv</b>		
	<b>V</b>	Factory general expenses	<b>v</b>		

자료: Income Tax Department, "Income Tax Department > Downloads > Income Tax Returns", <https://incometaxindia.gov.in/pages/downloads/income-tax-return.aspx>, 검색일자: 2022. 12. 20.

[그림 2-1-4] (부록1) 소득세 신고 서식(Form ITR-5)

FORM	ITR-5	INDIAN INCOME TAX RETURN		Assessment Year						
		[For persons other than- (i) individual, (ii) HUF, (iii) company and (iv) person filing Form ITR-7] (Please see Rule 12 of the Income-tax Rules,1962) (Please refer instructions)		2	0	2	2	-	2	3
<b>Part A-GEN GENERAL</b>										
PERSONAL INFORMATION	(A1) Name				(A2) PAN					
	(A3) Is there any change in the name? If yes, please furnish the old name				(A4)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Identification Number (LLPIN) issued by MCA, if applicable					
	(A7) Flat/Door/Block No		(A8) Name of Premises/Building/Village		(A5) Date of formation (DDMMYYYY)					
	(A9) Road/Street/Post Office		(A10) Area/Locality		(A6) Date of commencement of business (DD/MM/YYYY)					
	(A11) Town/City/District		(A12) State		(A13) Pin code/Zip code					
	(A15) Office Phone Number with STD code/ Mobile No. 1		(A14) Country		(A16) Mobile No. 2					
	(A17) Email Address -1		(A18) Email Address -2							
	(A19) (ai) Filed u/s (Tick) [Please see instruction] <input type="checkbox"/> 139(1)-On or before due date, <input type="checkbox"/> 139(4)-After due date, <input type="checkbox"/> 139(5)-Revised Return, <input type="checkbox"/> 92CD-Modified return, <input type="checkbox"/> 119(2)(b)- after condonation of delay.									
	(b) (ii) Or Filed in response to notice u/s <input type="checkbox"/> 139(9), <input type="checkbox"/> 142(1), <input type="checkbox"/> 148 (iii) Whether you are a business trust?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v) Whether you are an investment fund referred to in section 115UB?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c) If revised/Defective/ in response to notice for Modified, then enter Receipt No. and Date of filing original return (DD/MM/YYYY) / /									
(d) If filed in response to a notice u/s 139(9)/142(1)/148 or order u/s 119(2)(b), enter Unique Number/ Document Identification Number (DIN) and date of such notice/order, or if filed u/s 92CD enter date of advance pricing agreement (unique number) / /										
(e) Have you opted for tax regime u/s 115BAD and filed form 10-IF in AY 2021-22?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f) If no, Option for current assessment year <input type="checkbox"/> Not opting <input type="checkbox"/> opting it now										
(g) If Yes or "opting it now", please furnish Date of filing of form 10-IF DD/MM/YYYY Acknowledgement number:										
(h) Residential Status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Resident <input type="checkbox"/> Non-Resident										
(i) Whether assessee has a unit in an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and derives income solely in convertible foreign exchange?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j) Whether you are recognized as start up by DPIIT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k) If yes, please provide start up recognition number allotted by the DPIIT										
(l) Whether certificate from inter-ministerial board for certification is received?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m) If yes, please provide the certification number										
(n) In the case of non-resident, is there a permanent establishment (PE) in India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그림 2-1-4]의 계속

In the case of non-resident, is there a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SEP) in India as defined in Explanation (2A) to section 9(1)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of (a) aggregate of payments arising from the transaction or transactions during the previous year as referred in Explanation 2A(a) to Section 9(1)(i) (b) number of users in India as referred in Explanation 2A(b) to Section 9(1)(i)																																																																	
(m) Whether you are an FII / FPI? Yes/No If yes, please provide SEBI Regn. No. _____																																																																	
(n) Whether this return is being filed by a representative assessee?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please furnish following information -																																																																	
(1) Name of the representative assessee _____																																																																	
(2) Capacity of the Representative (drop down to be provided) _____																																																																	
(3)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assessee _____																																																																	
(4) Permanent Account Number (PAN)/Aadhaar No. of the representative assessee _____																																																																	
(o) Whether you are Partner in a firm?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please furnish following information																																																																	
Name of Firm _____ PAN _____																																																																	
(p) Whether you have held unlisted equity shares at any time during the previous year?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please furnish following information in respect of equity shares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Name of company</th> <th rowspan="2">Type of company</th> <th rowspan="2">PAN</th> <th colspan="2">Opening balance</th> <th colspan="4">Shares acquired during the year</th> <th colspan="2">Shares transferred during the year</th> <th colspan="2">Closing balance</th> </tr> <tr> <th>No. of shares</th> <th>Cost of acquisition</th> <th>No. of shares</th> <th>Date of subscription / purchase</th> <th>Face value per share</th> <th>Issue price per share (in case of fresh issue)</th> <th>Purchase price per share (in case of purchase from existing shareholder)</th> <th>No. of shares</th> <th>Sale consideration</th> <th>No. of shares</th> <th>Cost of acquisition</th> </tr> <tr> <th>1a</th> <th>1b</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th> <th>7</th> <th>8</th> <th>9</th> <th>10</th> <th>11</th> <th>12</th> <th>13</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Name of company	Type of company	PAN	Opening balance		Shares acquired during the year				Shares transferred during the year		Closing balance		No. of shares	Cost of acquisition	No. of shares	Date of subscription / purchase	Face value per share	Issue price per share (in case of fresh issue)	Purchase price per share (in case of purchase from existing shareholder)	No. of shares	Sale consideration	No. of shares	Cost of acquisition	1a	1b	2	3	4	5	6	7	8	9	10	11	12	13														
Name of company	Type of company	PAN	Opening balance		Shares acquired during the year				Shares transferred during the year		Closing balance																																																						
			No. of shares	Cost of acquisition	No. of shares	Date of subscription / purchase	Face value per share	Issue price per share (in case of fresh issue)	Purchase price per share (in case of purchase from existing shareholder)	No. of shares	Sale consideration	No. of shares	Cost of acquisition																																																				
1a	1b	2	3	4	5	6	7	8	9	10	11	12	13																																																				
AUDIT INFORMATION																																																																	
a Whether liable to maintain accounts as per section 44AA?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No																																																																	
a2 Whether assessee is declaring income only under section 44AD/44ADA/44AE/44B/44BB/44BBA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No																																																																	
a2i If No, whether during the year Total sales/turnover/gross receipts of business is between Rs.1 crore and Rs.10 crores?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No turnover does not exceed 1 crore <input type="checkbox"/> turnover exceeds 10 crores																																																																	
a2ii If Yes is selected at a2i, whether aggregate of all amounts received including amount received for sales, turnover or gross receipts or on capital account such as capital contribution, loans etc. during the previous year, in cash, & non-a/c payee cheque/DD does not exceed five per cent of the said amount?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No																																																																	
a2iii If Yes is selected at a2i, whether aggregate of all payments made including amount incurred for expenditure or on capital account such as asset acquisition, repayment of loans etc. & non-a/c payee cheque/DD during the previous year, in cash, does not exceed five per cent of the said payment?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No																																																																	
b Whether liable for audit under section 44AB?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No																																																																	
c If (b) is Yes, whether the accounts have been audited by an accountant?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furnish the following information-																																																																	
(i) Date of furnishing of the audit report (DD/MM/YYYY) / /																																																																	
(ii) Name of the auditor signing the tax audit report _____																																																																	
(iii) Membership no. of the auditor _____																																																																	
(iv) Name of the auditor (proprietorship/ firm) _____																																																																	
(v) Proprietorship/firm registration number _____																																																																	
(vi) Permanent Account Number (PAN)/Aadhaar No. of the auditor (proprietorship/ firm) _____																																																																	
(vii) Date of audit report _____																																																																	
di Are you liable for Audit u/s 92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No																																																																	
dii If (di) is Yes, whether the accounts have been audited u/s 92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No Date of furnishing audit report? DD/MM/YYYY																																																																	
diii If liable to furnish other audit report under the Income-tax Act, mention whether have you furnished such report. If yes, please provide the details as under) (Please see Instructions)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Sl. No.</th> <th>Section Code</th> <th>Date (DD/MM/YYYY)</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Sl. No.	Section Code	Date (DD/MM/YYYY)																																																	
Sl. No.	Section Code	Date (DD/MM/YYYY)																																																															
PARTNERS/ MEMBERS/TRUST																																																																	
e If liable to audit under any Act other than the Income-tax Act, mention the Act, section and date of furnishing the audit report																																																																	
Act and section (DD/MM/YY) Act and section (DD/MM/YY)																																																																	
A Whether there was any change during the previous year in the partners/members of the firm/AOP/BOI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No																																																																	
(In case of societies and cooperative banks give details of Managing Committee)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details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Sl.</th> <th>Name of the Partner/member</th> <th>Admitted/Retired</th> <th>Date of admission/retirement</th> <th>Percentage of share (if determinate)</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Sl.	Name of the Partner/member	Admitted/Retired	Date of admission/retirement	Percentage of share (if determinate)																																															
Sl.	Name of the Partner/member	Admitted/Retired	Date of admission/retirement	Percentage of share (if determinate)																																																													

[그림 2-1-4]의 계속

1.									
2.									
<b>R</b> Is any member of the AOP/BOI/executor of AJP a foreign company?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b>C</b> If Yes, mention the percentage of share of the foreign company in the AOP/BOI/executor of AJ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D</b> Whether total income of any member of the AOP/BOI/executor of AJP (excluding his share from such association or body or executor of AJP) exceeds the maximum amount which is not chargeable to tax in the case of that member?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b>E</b> Particulars of persons who were partners/members in the firm/AOP/BOI or settlor/trustee/beneficiary in the trust or executors in the case of estate of deceased / estate of insolvent as on 31 <sup>st</sup> day of March, 2022 or date of dissolution									
	S.No	Name and Address	Percentage of share (if determinate)	PAN	Aadhaar Number/ Enrolment Id (if eligible for Aadhaar)	Designated Partner Identification Number, in case partner in LLP	Status (see instructions)	Rate of Interest on Capital	Remuneration paid/ payable
	(1)	(2)	(3)	(4)	(5)	(6)	(7)	(8)	(9)
<b>F</b> To be filled in case of persons referred to in section 160(1)(iii) or (iv)									
<b>1</b> Whether shares of the beneficiary are determinate or known?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b>2</b> Whether the person referred in section 160(1)(iv) has Business Incom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b>3</b> Whether the person referred in section 160(1)(iv) is declared by a Will and /or is exclusively for the benefit of any dependent relative of the settlor and/or is the only trust declared by the settlor?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b>4</b> Please furnish the following details (as applicable):									
	(i)	Whether all the beneficiaries have income below basic exemption limit?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i)	Whether the relevant income or any part thereof is receivable under a trust declared by any person by will and such trust is the only trust so declared by him?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ii)	Whether the trust is non-testamentary trust created before 01-03-1970 for the exclusive benefit of relatives/member of HUF of the settlor mainly dependent on him/Family?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v)	Whether the trust is created on behalf of a provident fund, superannuation fund, gratuity fund, pension fund or any other fund created bona fide by a person carrying on Business or profession exclusive for the employees in such Business or Profession?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b>G</b> Nature of business or profession, if more than one business or profession, indicate the three main activities/ products (Other than those declaring income under sections 44AD, 44ADA and 44AE)									
	S.No.	Code [Please see instruction]	Trade name of the business, if any		Description				
	(i)								
	(ii)								

**Part A-BS** BALANCE SHEET AS ON 31<sup>ST</sup> DAY OF MARCH, 2022 OR DATE OF DISSOLUTION (fill items A and B in a case where regular books of accounts are maintained, otherwise fill item C)

SOURCES OF FUNDS	<b>A. Sources of Funds</b>										
	<b>1 Partners' / members' fund</b>										
	<b>a</b> Partners' / members' capital										<b>a</b>
	<b>b Reserves and Surplus</b>										
	<b>i</b> Revaluation Reserve										<b>bi</b>
	<b>ii</b> Capital Reserve										<b>bii</b>
	<b>iii</b> Statutory Reserve										<b>biii</b>
	<b>iv</b> Any other Reserve										<b>biv</b>
	<b>v</b> Credit balance of Profit and loss account										<b>bv</b>
	<b>vi</b> Total (bi + bii + biii + biv + bv)										<b>bvi</b>
	<b>c</b> Total partners' / members' fund (a + bvi)										<b>1c</b>
	<b>2 Loan funds</b>										
	<b>a Secured loans</b>										
	<b>i</b> Foreign Currency Loans										<b>ai</b>
	<b>ii Rupee Loans</b>										
<b>A</b> From Banks										<b>iiA</b>	
<b>B</b> From others										<b>iiB</b>	
<b>C</b> Total (iiA + iiB)										<b>iiC</b>	
<b>iii</b> Total secured loans (ai + iiC)										<b>aiii</b>	
<b>b Unsecured loans (including deposits)</b>											
<b>i</b> Foreign Currency Loans										<b>bi</b>	
<b>ii Rupee Loans</b>											
<b>A</b> From Banks										<b>iiA</b>	
<b>B</b> From persons specified in section 40A(2)(b) of the I. T. Act										<b>iiB</b>	
<b>C</b> From others										<b>iiC</b>	

[그림 2-1-4]의 계속

APPLICATION OF FUNDS		D	Total Rupee Loans (iiA + iiB + iiC)	iiD	
		iii	Total unsecured loans (bi + iiD)		Biii
		c	Total Loan Funds (aiii + biii)		2c
		3	Deferred tax liability		3
		4	Advances		
		i	From persons specified in section 40A(2)(b) of the I. T. Act	i	
		ii	From others	ii	
		iii	Total Advances (i + ii)		4iii
		5	Sources of funds (1c + 2c + 3 + 4iii)		5
		B	Application of funds		
		1	Fixed assets		
		a	Gross: Block	1a	
		b	Depreciation	1b	
		c	Net Block (a - b)	1c	
		d	Capital work-in-progress	1d	
		e	Total (1c + 1d)		1e
		2	Investments		
		a	Long-term investments		
		i	Investment in property	i	
		ii	Equity instruments		
	A	Listed equities	iiA		
	B	Unlisted equities	iiB		
	C	Total	iiC		
	iii	Preference shares	iii		
	iv	Government or trust securities	iv		
	v	Debenture or bonds	v		
	vi	Mutual funds	vi		
	vii	Others	vii		
	viii	Total Long-term investments (i + iiC + iii + iv + v + vi + vii)		aviii	
	b	Short-term investments			
	i	Equity instruments			
	A	Listed equities	iA		
	B	Unlisted equities	iB		
	C	Total	iC		
	ii	Preference shares	ii		
	iii	Government or trust securities	iii		
	iv	Debenture or bonds	iv		
	v	Mutual funds	v		
	vi	Others	vi		
	vii	Total Short-term investments (iC + ii + iii + iv + v + vi)		bvii	
	c	Total investments (aviii + bvii)		2c	
	3	Current assets, loans and advances			
	a	Current assets			
	i	Inventories			
	A	Raw materials	iA		
	B	Work-in-progress	iB		
	C	Finished goods	iC		
	D	Stock-in-trade (in respect of goods acquired for trading)	iD		
	E	Stores/consumables including packing material	iE		
	F	Loose tools	iF		
	G	Others	iG		
	H	Total (iA + iB + iC + iD + iE + iF + iG)		iH	
	ii	Sundry Debtors			
	A	Outstanding for more than one year	iiA		
	B	Others	iiB		
	C	Total Sundry Debtors		iiC	
	iii	Cash and bank balances			
	A	Balance with banks	iiiA		
	B	Cash-in-hand	iiiB		
	C	Others	iiiC		
	D	Total Cash and cash equivalents (iiiA + iiiB + iiiC)		iiiD	
	iv	Other Current Assets		iiiv	
	v	Total current assets (iH + iiC + iiiD + iiiv)		av	
	b	Loans and advances			
	i	Advances recoverable in cash or in kind or for value to be received	bi		
	ii	Deposits, loans and advances to corporate and others	bi		
	iii	Balance with Revenue Authorities	bi		
	iv	Total (bi + bi + bi)		biv	
	v	Loans and advances included in biv which is			
	a	for the purpose of business or profession	va		
	b	not for the purpose of business or profession	vb		
	c	Total (av + biv)		3c	
	d	Current liabilities and provisions			
	i	Current liabilities			
	A	Sundry Creditors			

자료: Income Tax Department, "Income Tax Department > Downloads > Income Tax Returns", <https://incometaxindia.gov.in/pages/downloads/income-tax-return.aspx>, 검색일자: 2022. 12. 20.

[그림 2-1-5] (부록1) 소득세 신고 서식(Form ITR-6)

<b>FORM</b>	<b>ITR-6</b>	<b>INDIAN INCOME TAX RETURN</b> [For Companies other than companies claiming exemption under section 11] (Please see rule 12 of the Income-tax Rules,1962) (Please refer instructions)				Assessment Year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 <span>2</span><span>0</span><span>2</span><span>2</span><span>-</span><span>2</span><span>3</span> </div>			
<b>Part A- GEN GENERAL</b>									
PERSONAL INFORMATION	(A1) Name						(A2) PAN		
	(A3) Is there any change in the company's name? If yes, please furnish the old name						(A4) Corporate Identity Number (CIN) issued by MCA		
	(A8) Flat/Door/Block No		(A9) Name of Premises/Building/Village			(A5) Date of incorporation (DD/MM/YYYY)	(A6) Date of commencement of business (DD/MM/YYYY)		
	(A10) Road/Street/Post Office		(A11) Area/Locality				(A7) Type of company (Tick any 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A12) Town/City/District		(A13) State		(A14) Pin code/Zip code		If a public company write 6, and if private company write 7 (as defined in section 3 of The Companies Act)		
			(A15) Country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A16) Office Phone Number with STD code/ Mobile No. 1				(A17) Mobile No. 2		(A18) Email Address-1		
	Email Address-2								

## [그림 2-1-5]의 계속

FILING STATUS	(A19) (i) Filed u/s (Tick) <input type="checkbox"/> 139(1)- On or Before due date, <input type="checkbox"/> 139(4)- After due date, <input type="checkbox"/> 139(5)- Revised Return, <input type="checkbox"/> 92CD-Modified return, [Please see instruction]	<input type="checkbox"/> 139(1)- On or Before due date, <input type="checkbox"/> 139(4)- After due date, <input type="checkbox"/> 139(5)- Revised Return, <input type="checkbox"/> 92CD-Modified return, <input type="checkbox"/> 119(2)(b)- After condonation of delay, <input type="checkbox"/> 170A - After order by the tribunal or court.]
	(a) (ii) Or filed in response to notice u/s	<input type="checkbox"/> 139(9), <input type="checkbox"/> 142(1), <input type="checkbox"/> 148,
	(b) If revised/ defective/Modified, then enter Receipt No and Date of filing original return (DD/MM/YYYY)	____/____/____
	(c) If filed, in response to notice u/s 139(9)/142(1)/148/ or order u/s 119(2)(b), enter Unique Number /Document Identification Number and date of such notice/order, or if filed u/s 92CD enter date of advance pricing agreement	/ /
	(d) Residential Status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Resident <input type="checkbox"/> Non-Resident	
	(e) Have you opted for taxation under section 115BA/115BAA/115BAB? (Please choose from the drop down menu) (applicable on Domestic Company) If yes, please furnish the AY in which said option is exercised for the first time along with date of filing of relevant form (10-IB/ 10-1C/ 10-ID) & acknowledgment number. If no, whether you are choosing to opt for taxation under section 115BA/115BAA/115BAB this year? (Please choose from the drop down menu) Please provide the date of filing of relevant form (10-IB/10-1C/10-ID) & acknowledgment number.	
	(f) Whether total turnover/ gross receipts in the previous year 2019-20 exceeds 400 crore rupees? (Yes/No) (applicable for Domestic Company)	
	(g) Whether assessee is a resident of a country or specified territory with which India has an agreement referred to in sec 90 (1) or Central Government has adopted any agreement under sec 90A(1)?	
	(h) In the case of non-resident, is there a Permanent Establishment (PE) in India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 In the case of non-resident, is there a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SEP) in India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please provide details of (a) aggregate of payments arising from the transaction or transactions during the previous year as referred in Explanation 2A(a) to Section 9(1)(i); (b) number of users in India as referred in Explanation 2A(b) to Section 9(1)(i).	
	(j) Whether assessee is required to seek registration under any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relating to companies?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Act under which registration required	
	Date of Registration (DD/MM/YYYY)	Registration Number
	(k) Whether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y are drawn up in compliance to the Indian Accounting Standards specified in Annexure to the companies (Indian Accounting Standards) Rules, 2015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l) Whether assessee has a unit located in an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and derives income solely in convertible foreign exchange?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m) Whether the assessee company is under liquidation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n) Whether you are an FII / FPI? Yes/No If yes, please provide SEBI Regn. No.	
	(o) Whether the company is a producer company as defined in Sec.581A of Companies Act, 1956?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p) Whether this return is being filed by a representative assessee?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please furnish following information - (1) Name of the representative assessee (2) Capacity of the Representative (drop down to be provided) (3)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assessee (4) Permanent Account Number (PAN)/Aadhaar No. of the representative assessee	
(q) Whether you are recognized as start up by DPIIT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1 If yes, please provide start up recognition number allotted by the DPIIT		
2 Whether certificate from inter-ministerial board for certification is received?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3 If yes provide the certification number		
4 Whether declaration in Form-2 in accordance with para 5 of DPIIT notification dated 19/02/2019 has been filed before filing of the return?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5 If yes, provide date of filing Form-2		
AUDIT INFORMATION	(a1) Whether liable to maintain accounts as per section 44AA?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a2) Whether assessee is declaring income only under section 44AE/ 44B/ 44BB/ 44BBA/ 44BBB/44D?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a2i) If No, whether during the year total sales/turnover/gross receipts of business is between 1 Crore Rupees but does not exceed 10 Crore Rupees?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turnover does not exceed 1 crore <input type="checkbox"/> No, turnover exceeds 10 crores	
	(a2ii) If (a2i) is Yes, whether aggregate of all amounts received, including amount received for sales, turnover or gross receipts or on capital account such as capital contribution, loans etc. during the previous year, in cash & non-a/c payee cheque/DD, does not exceed five per cent of said amount?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a2iii) If (a2i) is Yes, whether aggregate of all payments made including amount incurred for expenditure or on capital account such as asset acquisition, repayment of loan etc., in cash & non-a/c payee cheque/DD, during the previous year does not exceed five per cent of the said payment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b) Whether liable for audit under section 44AB?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c) If (b) is Yes, whether the accounts have been audited by an accountant?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furnish the following information below (1) Mention the date of furnishing of audit report (DD/MM/YYYY) (2) Name of the auditor signing the tax audit report (3) Membership No. of the auditor (4) Name of the auditor (proprietorship/ firm) (5) Proprietorship/firm registration number (6) Permanent Account Number (PAN/Aadhaar No.) of the auditor (proprietorship/ firm) (7) Date of audit report	
	(di) Are you liable for Audit u/s 92E?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dii) If (di) is Yes, whether the accounts have been audited u/s.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Date of furnishing audit report? DD/MM/YYYY	
	(diii) If liable to furnish other audit report under the Income-tax Act, mention whether have you furnished such report. If yes, please provide the details as under (Please see Instruction 5)	

[그림 2-1-5]의 계속

		Sl. No.	Section Code	Date (DD/MM/YYYY)	
		(e) Mention the Act, section and date of furnishing the audit report under any Act other than the Income-tax Act			
		<i>Act and section</i>	<i>(DD/MM/YY)</i>	<i>Act and section</i>	<i>(DD/MM/YY)</i>
HOLDING STATUS	(a)	Nature of company (select 1 if holding company, select 2 if a subsidiary company, select 3 if both, select 4 if any other)			
	(b)	If subsidiary company, mention the details of the Holding Company			
		PAN	Name of Holding Company	Address of Holding Company	Percentage of Shares held
(c)	If holding company, mention the details of the subsidiary companies				
	PAN	Name of Subsidiary Company	Address of Subsidiary Company	Percentage of Shares held	
BUSINESS ORGANISATION	(a)	In case of amalgamating company, mention the details of amalgamated company			
		PAN	Name of Amalgamated Company	Address of Amalgamated Company	Date of Amalgamation
	(b)	In case of amalgamated company, mention the details of amalgamating company			
		PAN	Name of Amalgamating Company	Address of Amalgamating Company	Date of Amalgamation
	(c)	In case of demerged company, mention the details of resulting company			
		PAN	Name of Resulting Company	Address of Resulting Company	Date of Demerger
(d)	In case of resulting company, mention the details of demerged company				
	PAN	Name of Demerged Company	Address of Demerged Company	Date of Demerger	
KEY PERSONS	Particulars of Managing Director, Directors, Secretary and Principal officer(s) who have held the office during the previous year and the details of eligible person who is verifying the return.				
	S.No.	Name	Designation	Residential Address	PAN/Aadhaar No.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DIN) issued by MCA, in case of Director
SHAREHOLDERS INFORMATION	Particulars of persons who were beneficial owners of shares holding not less than 10% of the voting power at any time of the previous year				
	S.No.	Name and Address		Percentage of shares held	PAN (if allotted)
OWNERSHIP INFORMATION	In case of unlisted company, particulars of natural persons who were the ultimate beneficial owners, directly or indirectly, of shares holding not less than 10% of the voting power at any time of the previous year				
	S.No.	Name	Address	Percentage of shares held	PAN/Aadhaar No. (if allotted)
	In case of Foreign company, please furnish the details of immediate parent company.				
	S.No	Name	Address	Country of residence	PAN (if allotted) Taxpayer's registration number or any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allotted in the country of residence
In case of foreign company, please furnish the details of ultimate parent company					
S.No	Name	Address	Country of residence	PAN (if allotted) Taxpayer's registration number or any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allotted in the country of residence	
NATURE OF COMPANY AND ITS BUSINESS	Nature of company				(Ti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Whether a public sector company as defined in section 2(36A) of the Income-tax Act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2	Whether a company owned by the Reserve Bank of India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3	Whether a company in which not less than forty percent of the shares are held (whether singly or taken together) by the Government or the Reserve Bank of India or a corporation owned by that Bank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4	Whether a banking company as defined in clause (c) of section 5 of the Banking Regulation Act,1949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5	Whether a scheduled Bank being a bank included in the Second Schedule to the Reserve Bank of India Act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6	Whether a company registered with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established under sub-section (1) of section 3 of the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Act, 1999)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7	Whether a company being a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그림 2-1-5]의 계속

8	Whether the company is unlisted? If yes, please ensure to fill up the Schedule SH-1 and Schedule AL-1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Nature of business or profession, if more than one business or profession indicate the three main activities/ products (Other than those declaring income under section 44AE)		
S.No.	Code [Please see instruction No.7(i)]	Description
(i)		
(ii)		
(iii)		

Part A-BS		BALANCE SHEET AS ON 31 <sup>ST</sup> DAY OF MARCH, 2022 OR AS ON THE DATE OF AMALGAMATION	
<b>I Equity and Liabilities</b>			
<b>1 Shareholder's fund</b>			
<b>A Share capital</b>			
	i Authorised	Ai	
	ii Issued, Subscribed and fully Paid up	Aii	
	iii Subscribed but not fully paid	Aiii	
	iv Total (Aii + Aiii)		Aiv
<b>B Reserves and Surplus</b>			
	i Capital Reserve	Bi	
	ii Capital Redemption Reserve	Bii	
	iii Securities Premium Reserve	Biii	
	iv Debenture Redemption Reserve	Biv	
	v Revaluation Reserve	Bv	
	vi Share options outstanding amount	Bvi	
	vii Other reserve (specify nature and amount)		
	a	vii a	
	b	vii b	
	c Total (vii a + vii b)	Bvii	
	viii Surplus i.e. Balance in profit and loss account (Debit balance to be shown as -ve figure)	Bviii	
	ix Total (Bi + Bii + Biii + Biv + Bv + Bvi + Bvii + Bviii) (Debit balance to be shown as -ve figure)		Bix
	C Money received against share warrants		1C
	D Total Shareholder's fund (Aiv + Bix + 1C)		1D
<b>2 Share application money pending allotment</b>			
	i Pending for less than one year	i	
	ii Pending for more than one year	ii	
	iii Total (i + ii)		2
<b>3 Non-current liabilities</b>			
<b>A Long-term borrowings</b>			
	<b>i Bonds/ debentures</b>		
	a Foreign currency	ia	
	b Rupee	ib	
	c Total (ia + ib)		ic
	<b>ii Term loans</b>		
	a Foreign currency	ii a	
	<b>b Rupee loans</b>		
	1 From Banks	b1	
	2 From others	b2	
	3 Total (b1 + b2)	b3	
	c Total Term loans (ii a + b3)		ii c
	iii Deferred payment liabilities		iii
	iv Deposits from related parties (see instructions)		iv
	v Other deposits		v
	vi Loans and advances from related parties (see instructions)		vi
	vii Other loans and advances		vii
	viii Long term maturities of finance lease obligations		viii
	ix Total Long-term borrowings (ic + ii c + iii + iv + v + vi + vii + viii)		3A
	B Deferred tax liabilities (net)		3B
<b>C Other long-term liabilities</b>			
	i Trade payables	i	
	ii Others	ii	
	iii Total Other long-term liabilities (i + ii)		3C
<b>D Long-term provisions</b>			
	i Provision for employee benefits	i	
	ii Others	ii	
	iii Total (i + ii)		3D
	E Total Non-current liabilities (3A + 3B + 3C + 3D)		3E
<b>4 Current liabilities</b>			
<b>A Short-term borrowings</b>			
	<b>i Loans repayable on demand</b>		
	a From Banks	ia	
	b From Non-Banking Finance Companies	ib	
	c From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ic	
	d From others	id	
	e Total Loans repayable on demand (ia + ib + ic + id)		ie
	ii Deposits from related parties (see instructions)		ii

자료: Income Tax Department, "Income Tax Department > Downloads > Income Tax Returns", <https://incometaxindia.gov.in/pages/downloads/income-tax-return.aspx>, 검색일자: 2022. 12. 20.

## IX 원천공제제도

### 1. 원천공제제도 일반

인도 소득세법은 「소득세법」 제17장(제192조~제195조)을 통해 TDS(Tax Deduction at Source)라는 명칭으로 원천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이 아닌 자와 법인으로, 법인이 아닌 자는 인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법인은 인도 법인과 인도 법인이 아닌 경우로 나눠 규정한다.

인도의 원천공제제도는 한국의 원천징수제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특정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지급 시기에 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 공제 의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특정인에게 부과되는데, 지불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지불의 재정적 부담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채무 불이행 시 소득세법상 납부의무자는 회사의 임원이 아닌 회사 자체가 된다.

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원천공제 의무자가 각 지급 월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 지급 분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또한 부과될 수 있다.<sup>50)</sup>

〈표 2-1-30〉 주요 원천징수 대상

조문	원천징수세 적용 소득
192조	근로소득(거주자, 비거주)
193조	유가증권이자
194조	배당소득
194A조	특정증권 이외 이자
194B조	복권 등 당첨금
194BB조	경마우승금
194C조	계약에 따른 대가
194H조	수수료 및 중개료
194I조	임대료
194J조	전문적 또는 기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195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

자료: 인도 소득세법을 토대로 저자 정리

50) Tax2win, "Due Date of Income Tax Return (ITR) Filing in India", "<https://tax2win.in/guide/itr-filing-due-date>", 검색일자: 2022. 8. 1.

원천공제 의무자가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세뿐 아니라 미납에 대한 가산세를 원천공제 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세금이 공제되는 소득 및 금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은 세금 공제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영구 계좌번호(PAN)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특정 수령인(예: 인도정부, 인도 중앙은행 및 면제 뮤추얼 펀드)은 원천공제 대상이 아니다.

## 2. 원천공제 대상

### 가. 근로소득(Salary payments)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급여”항목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는 지급 당시 연간보수에 따라 계산된 소득에 대한 평균 세율의 소득세를 공제한다.

### 나.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Interest on securities)

거주자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해당 소득을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기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 중인 세율의 소득세를 공제한다.

단, 국가 개발 채권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 7년 만기 국민 저축증서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 기관이나 공공부문 회사 또는 협동조합 협회가 발행한 사채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 연방 정부 또는 주정부 담보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 등에 대하여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다.

### 다. 배당소득(Dividends)

인도 회사 또는 인도 내에서 배당금(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인도에 거주하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 배당금에서 10%의 소득세를 공제해야 한다.

### 라. 특정증권 이외 이자(Interest other than "Interest on securities)

개인이나 HUF가 아닌 자가 거주자에게 유가증권 이외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기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 중인 세율의 소득세를 공제한다.

마. 복권 등 당첨금(Winnings from lottery or crossword puzzl)

복권, 카드게임 등 기타 모든 종류의 게임에서 발생한 10,000루피를 초과하는 당첨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점에 시행 중인 세율의 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

바. 우승금(Winnings from horse race)

경마장에서 경마를 하거나 경마장에서 내기를 주선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마권업자가 타인에게 10,000루피를 초과하는 경마 우승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지급 시점에 시행 중인 세율의 소득세를 공제해야 한다.

사. 계약에 따른 대가(Payments to contractors)

도급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한 대가를 거주자 개인 또는 HUF 미혼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1%의 소득세를, 이외의 경우에는 2%의 소득세를 공제해야 한다.

아. 수수료 및 중개료(Commission or brokerage)

거주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중개업체는 해당 소득을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할 때 5%의 소득세를 공제해야 한다.

자. 임대료(Rent)

거주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개인은 해당 소득을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기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소득세를 공제해야 한다.

- a) 기계, 공장 또는 장비의 사용에 대하여는 2%의 소득세를 공제
- b) 토지, 건물(공장 건물 포함) 또는 가구 및 부속품에 부착된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10%의 소득세를 공제

차. 전문적·기술적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Fees for professional or technical services)

거주자에게 전문 서비스 또는 기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나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회사 임원에게 수수료(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 제외)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개인은 수취

인의 계정에 해당 소득을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기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소득세를 공제해야 한다.

- ① 기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전문 서비스 아님)는 2%의 소득세를 공제
- ② 기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이외 및 지급하는 로열티가 영화 필름의 판매, 배포 또는 전시를 위한 대가의 성격인 경우에는 10%의 소득세를 공제

#### 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Payment to non-resident)t)

이자 및 인도 내 과세대상인 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 및 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소득세를 공제해야 한다.

### 3. 원천공제 납부 절차 및 제재

#### 가. 원천공제 절차

- ① Tax Deduction and Collection Account Number(TAN) 신청
- ② 법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원천공제
- ③ 정해진 기간 내에 국고에 원천공제한 금액 납부
- ④ TDS 확인서 발급
- ⑤ TDS와 관련된 신고서 제출
- ⑥ 지급받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PAN을 제출
- ⑦ 원천징수 의무자는 모든 문서에 TDS 관련 사항 기재

#### 나. 원천공제 납부 기한 및 제재

원천공제한 금원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익월 7일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3월 달에 원천공제한 금원은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고를 누락한 경우 미이행 기간 동안 매월 1%의 이자가 징수되고 누락한 원천징수세와 동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 제2장 | 상품 및 서비스세(GST)

### I 개관<sup>51)</sup>

상품 및 서비스세(이하 GST)는 2006/07년 인도 연방 예산안을 통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기존에 과세권을 지니고 있던 각 주의 동의와 헌법 수정 등 10년 이상의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도입은 2017년 7월 1일에 이루어졌다.

인도의 GST는 과거 재화의 거래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서비스의 공급에는 연방정부가 과세해 왔으나 이는 주별로 상이한 간접세 부과 및 조세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판매세, 구매세, 특별소비세, 오락세, 도박세 등의 모든 간접세와 부과금을 모두 GST로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표 2-2-1〉 GST로 통합된 인도의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간접세 및 부과금

국세(중앙 정부)	지방세(주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정부 소비세(Central Excise Duty)</li> <li>· 상계관세(CVD) 및 특별추가관세(SAD)</li> <li>· 서비스세(Service Tax)</li> <li>· 기타 부과금(Surcharges &amp; Cess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부가가치세 및 판매세 (State VAT/Sales Tax)</li> <li>· 중앙판매세(Central Sales Tax)<sup>1)</sup></li> <li>· 구매세(Purchase Tax)</li> <li>· 오락세(Entertainment Tax)</li> <li>· 사치세(Luxury Tax)</li> <li>· 상품이동세(Entry Tax)</li> <li>· 복권세 및 도박세 (Taxes on lottery, betting and gambling)</li> <li>· 기타 부과금(Surcharges &amp; Cesses)</li> </ul>

주: 1) 연방정부에서 부과하고 주정부에서 징수한다.

자료: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GST - Overview, "PPT on GST for Media interaction", <https://www.cbic.gov.in/htdocs-cbec/gst/gstoverview>, 검색일자: 2022. 11. 9.

51) IBFD, "India - Goods &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1. 1. General",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1.&refresh=1659315566802%23evat\\_in\\_s\\_1.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1.&refresh=1659315566802%23evat_in_s_1.1.), 검색일자: 2022. 7. 15.

GST는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OECD 국제 VAT/GST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징수되며, 품목마다 'slabs'로 알려진 다양한 요율로 부과된다. 인도의 GST는 도입 초기부터 완전한 디지털화를 의도하고 설계되어 모든 신고는 중앙 DB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오류 및 이중 청구는 거의 실시간으로 포착된다.

인도는 7개의 연방 직할령과 28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주(state) 내 공급은 CGST(중앙 GST) 및 SGST(주 GST)의 적용을 받고, 납세자가 한 주의 사업체에서 다른 주의 사업체로 물품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주 간 공급에는 IGST(통합GST)가 적용된다. 또한 물품의 수입은 기존의 관세와 IGST의 적용을, 서비스의 수입은 IGST만의 적용받는다.

## II 납세의무자

GST의 납세의무자는 인도 내 어느 곳에서든 GST와 관련하여 등록되거나 등록될 의무가 있는 자로,<sup>52)</sup> 공급자가 과세대상 공급을 하는 모든 주 및 연방정부 영역 내에서 GST를 제외한 인도 내 총 매출액이 200만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GST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경제적으로 낙후된 북동부 주와 잠무 및 카슈미르 주 등을 포함하는 총 11개 주의 경우 GST 등록 대상이 되는 매출액 기준이 100만루피로 감소한다.<sup>53)</sup>

「CGST법」 제24조에서는 그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① 주(state) 간 과세할 수 있는 공급을 제공하는 자
- ② 과세대상 공급을 하는 임시 과세 대상자
- ③ 과세대상 공급을 하는 비거주자
- ④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해 납세하는 공급자
- ⑤ 특정 정부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GST를 원천공제 대상자
- ⑥ 다른 과세 대상자를 대신하여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하는 자
- ⑦ Input Service Distributor<sup>54)</sup>
- ⑧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통해 과세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하는 자

52)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2(107)

53)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22(1)

54) 동일한 PAN을 보유한 납세자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매입세액을 이전하는 사업장

- ⑨ 원천징수가 요구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 ⑩ 온라인 정보 및 DB 액세스 또는 검색 서비스를 GST에 등록되지 않은 인도 외 지역의 공급자로부터 인도 내의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인도 내 주나 연방정부 영역에서 사업의 진행 또는 추진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를 가끔 수행하는 '경상 과세 대상자'<sup>55)</sup>의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기 최소 5일 전까지 '경상' 상태를 등록하고<sup>56)</sup> 예상 세금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sup>57)</sup>

### III 과세대상 거래

일반적으로 GST는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에 적용되며, CGST법의 제7조와 해당 법의 별첨 문서를 통해 공급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 그리고 재화의 공급과 서비스의 공급을 구분하고 있다. 이때 공급이란 판매, 양도, (물물)교환, 라이선스, 대여, 임대차 계약 또는 처분과 같은 모든 형태의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 혹은 두 가지 모두가 비즈니스 과정 또는 촉진에서 대가를 위해 이루어지거나 합의된 것을 의미한다.<sup>58)</sup>

#### 1. 재화의 공급

##### 가. 재화의 정의

재화란 금전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동산을 말하며, 토지 일부에 부착되거나 부설되거나 부설되어 있으나 공급 전 혹은 공급계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합의된 실행 가능한 채권, 작물 및 토지의 일부를 포함한다.<sup>59)</sup> 이때 재화로 간주되는 실행 가능한 청구는 복권, 베팅 및 도박뿐이며, 따라서 부채, 유치권 등 기타 실행 가능한 청구는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sup>60)</sup> 다만 주류와 석유 제품의 경우 재화의 범주에 포함되나 기존의

55)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2(20)

56)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24(ii)

57)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27

58)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7(1)(a)

59)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2(52)

60)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Schedule III(5)

특별소비세를 적용한다.<sup>61)</sup> 전력 또한 각 주의 관할 영역으로, GS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sup>62)</sup>

### 나. 재화의 공급<sup>63)</sup>

재화의 공급은 ①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② 사업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화가 더 이상 그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도록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지시에 의해 양도 또는 처분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양도 또는 처분 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③ 사업의 진행 또는 추진 과정에서 별도의 개인 또는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진 재화의 제공 역시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더라도 공급으로 취급한다.<sup>64)</sup>

이때 토지의 매각과 특정 조건에 따른 건물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으며,<sup>65)</sup> 인도 내 반입 없이 비과세 영역 내 장소에서 다른 비과세 영역 내 장소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역시 상품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sup>66)</sup> 또한 통관 전 관세 창고에 보관된 가계 소비를 위한 재화에 대한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나,<sup>67)</sup> 인도 국외에 위치한 원산지 항구에서 재화가 발송된 후 국내 소비를 위한 통관 이전에 발생한 수취인에 의한 재화의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sup>68)</sup> 이밖에도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주는 연 5만루피 이하의 선물은 재화 혹은 서비스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sup>69)</sup>

## 2. 용역의 공급

### 가. 용역의 정의

용역이란 재화, 금전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sup>70)</sup> 대가가 청구되는 환전 서비스나 유가증권의 거래를 촉진하거나 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유사증권의 거래와

61)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9(1),(2)

62) IBFD, "India - Goods &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5.1.2. Continuous suppl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5.&refresh=1659404490263%23evat\\_in\\_s\\_5.1.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5.&refresh=1659404490263%23evat_in_s_5.1.2.), 검색일자: 2022. 7. 15.

63)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7

64)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25

65)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Schedule III(5)

66)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Schedule III(7)

67)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Schedule III(8)(a)

68)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Schedule III(8)(b)

69)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Schedule I(2)

70)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2(102)

관련하여 부과되는 서비스 요금이나 수수료, 문서 수수료, 중개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요금이나 수수료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GST가 부과될 수 있다.<sup>71)</sup>

#### 나.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에는 다음 것들이 포함된다.<sup>72)</sup>

- ① 토지 점유에 대한 임대차, 임차권, 편익권, 면허
- ② 상업, 산업 또는 주거단지를 포함한 건물의 임대 또는 임대
- ③ 부동산 임대
- ④ 타인의 재화에 대한 처리 또는 처리 과정
- ⑤ 단지, 건물, 토목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 건설
- ⑥ 지적재산권의 임시 이전이나 사용 또는 향유 허용
- ⑦ IT 소프트웨어의 개발, 설계, 프로그래밍, 최적화, 적응, 업그레이드, 향상, 구현
- ⑧ 현금, 이연 지급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대가를 위해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 3. 공급 장소 및 시기

#### 가. 공급 장소<sup>73)</sup>

GST는 원칙적으로 목적지 기준 세금이므로 인도 내에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 GST 적용 대상이 된다.<sup>74)</sup> 이때 용역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급 장소가 달라질 수 있다.

- ① 용역 수취인이 등록된 고정사업장에서 공급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71) IBFD, "India - Goods &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3.2.1. Definition of servic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3.&refresh=1659391859021%23evat\\_in\\_s\\_3.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3.&refresh=1659391859021%23evat_in_s_3.1.), 검색일자: 2022. 7. 15.

72)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Schedule II

73) IBFD, "India - Corporation Tax - Country Tax Guides - 13.4. Place of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4.](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4.), 검색일자: 2022. 11. 16.

74) IBFD, "India - Goods &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4. Place of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4.&refresh=1659401391200%23evat\\_in\\_s\\_4.](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4.&refresh=1659401391200%23evat_in_s_4.), 검색일자: 2022. 7. 15.

- ② 등록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공급을 받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
- ③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급을 받는 경우,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 ④ 상기한 바와 같은 장소가 없는 경우 수령자의 상시 거주지 위치

또한 용역의 공급자 또는 수취인이 인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목적지 기준 세금인 GST의 특성에 따라 공급 장소는 수취인의 위치로 결정된다. 다만 수취인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급 장소를 공급자의 소재지로 할 수 있다.<sup>75)</sup>

## 나. 공급 시기

### 1) 국내 공급

#### 가) 재화의 공급 시기<sup>76)</sup>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청구서가 발행되거나 납품업체가 청구서를 발행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나 납품업체가 대금을 수령한 날 중 이른 날이다.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지급을 받을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한 추가 청구서를 발행해야 하며, 수령한 추가 금액이 1,000루피 이하인 경우 공급자는 추가 금액에 대한 청구서 발행일을 새로운 공급 시기로 선택할 수 있다.

재화의 공급을 매입자납부제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다음 일자 중 가장 빠른 날이다.

- ① 수취인의 장부에 기입된 지급 일자
- ② 수취인의 은행 계좌에 기록된 지급 일자
- ③ 공급자에 의한 청구서 혹은 이와 유사한 문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31일 후

상기 사항에 근거하여 재화의 공급 시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공급 시기는 수취인의 장부에 기입한 날짜가 된다.

75) Integrated Goods and Service Tax Act §13(2)

76)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12(2)

나) 용역의 공급 시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다음 중 빠른 날로 정한다.<sup>77)</sup>

- ① 청구서가 30일 이내에 발행된 경우(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경우 45일), 청구서 발행일 또는 대금 수령일 중 빠른 일자
- ② 청구서가 30일 이내에 발행되지 않은 경우(또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경우 45일), 서비스 제공일과 대금 수령일 중 빠른 일자

공급자가 청구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을 받지 않는 경우, 수령인이 서비스 수령일을 장부에 기록하는 날짜에 따라 공급 시기가 결정된다.

용역의 공급에 대해 매입자납부제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다음 일자 중 가장 빠른 날이다.<sup>78)</sup>

- ① 대금의 지급을 장부에 기입하거나 은행 계좌로 인출한 일자
- ② 공급업체가 청구서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61일 후

상기한 내용으로 용역의 공급 시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수령인이 수령서를 장부에 기입하는 날로 공급 시기를 확정한다.

2) 수입

수입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매입자납부 기준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하며, 공급 시기는 다음 날짜 중 빠른 날이다.<sup>79)</sup>

- ① 대금의 지급이 회계 장부에 입력된 날짜 또는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날짜
- ② 공급자가 인보이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61일

77)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13(2)

78)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13(3)

79)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13(3)(a), §13(3)(b)

상기한 바와 같이 공급 시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수령인이 회계 장부에 기입한 공급을 수령한 날짜가 공급 시기를 정한다.

또한 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초과 지급이 접수되면 공급자로부터 추가 지급을 증빙하기 위한 추가 인보이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추가 금액이 1천루피 이하인 경우 공급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새 송장 날짜를 해당 추가 금액의 공급 시간으로 선택할 수 있다.<sup>80)</sup>

인도에 있는 사람이 국외의 관계사로부터 서비스를 획득하고<sup>81)</sup> 사업체가 매입자납부제도 기준으로 GST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공급 시점은 수취인이 회계 장부에 기록한 서비스 수령일이 된다.<sup>82)</sup>

## IV 과세표준 및 세율

### 1. 과세표준

#### 1) 포함되는 항목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 가치는 '거래 가치, 즉 공급자와 수취인이 특수관계인<sup>83)</sup>이 아닐 때, 공급에 대한 유일한 대가'를 의미하며,<sup>84)</sup> 이외에 공급 가치를 구성하는 기타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sup>85)</sup>

- ①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GST 이외의 세금, 관세, 수수료 및 요금
- ② 공급 업체의 부채

80)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13(2)

81) 회사 간 차변표를 통해 본사 비용을 교차 청구하는 등의 경우

82)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13(3)(b)

83)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15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한다. ① 서로의 사업의 임원 또는 이사, ② 사업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파트너, ③ 고용주와 고용인, ④ 직간접적으로 25%를 소유하거나, 통제 및 보유하는 모든 개인, 또는 그 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하거나 둘 다인 경우, ⑤ 한쪽이 다른 쪽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⑥ 둘 다 제3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경우, ⑦ 함께 직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제하는 경우, ⑧ 가족 구성원일 경우이며, "개인"이라는 용어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84)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15(1)

85)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15(2)

- ③ 공급자가 수취인에게 청구한 수수료와 포장비, 공급과 관련하여 행한 모든 행위와 관련한 부수적 비용
- ④ 이자, 연체료 또는 위약금과 같은 지급 지연 수수료
- ⑤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공급 업체가 제공받은 보조금<sup>86)</sup>

## 2) 제외되는 항목

공급 전이나 공급 시점에 할 일을 제공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에 적법하게 기록되는 경우,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만약 공급이 이루어진 후 할인이 제공되었다면, 판매업자가 신용어음을 올리는 경우 할인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할인에 귀속되는 매입자납부세액은 수취인이 환입해야 공급가액 감소가 유효하다.<sup>87)</sup>

또한 순수하게 대리인으로서 타인을 대리하는 자에 지불된 비용 역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에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된다.<sup>88)</sup>

## 2. 세율

### 1) 일반세율

표준 세율은 12% 및 18%의 세율로, 필수 식품은 GST가 면제되고 대량 소비 상품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 사치품이나 당류, 담배 등 죄악세로 인식되는 품목, 가전 제품이나 자동차 등에는 28%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때 중형차, 대형차, SUV, 고급차에는 각각 45%, 48%, 50%, 5%의 추가 과세가 이루어진다.<sup>89)</sup> 또한 보석제조업의 보호를 위해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0.25%와 3%의 감면 세율이 적용되고, <표 2-3-2>에서 달리 나열되지 않은 용역(서비스)의 기본 요율은 18%이다.

86) 소매업자가 제공받은 도매업자의 판촉 보조금 등이 있다.

87)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15(3)

88)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13

89) IBFD, "Indi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7. Rat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7.&refresh=1659418439526%23evat\\_in\\_s\\_7..](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7.&refresh=1659418439526%23evat_in_s_7..) 검색일자: 2022. 11. 18.

〈표 2-2-2〉 인도 GST의 세율

		상품	용역(서비스)
일반세율	5%	기본 식품을 제외한 일반적인 소비 상품	화물 및 승객 운송
	12%	고기, 버터, 치즈, 견과류 및 보존된 야채, 목제품, 의약품, 식물, 자전거, 트랙터, 조각상 및 국가 복권 등 250개 품목	식당(난방 및 에어컨 설비 미비), 1,000~2,500루피 사이의 일일 객실 요금, 이코노미 클래스 이외의 항공 승객 수송
	18%	이외 식품, 화학품, 제조 재료, 가죽 및 종이 제품, 신발 등 450개 이상 품목	주류 판매 면허, 식당(난방 및 에어컨 설비 완비), 2,500~7,500루피의 일일 객실 요금, 최대 100루피까지의 영화관 입장료
감면세율	0.25%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와 기타 귀중품, 반귀금속, 보석류	-
	3%	진주, 귀금속 및 보석류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	
가산세율	28%	명품 식품, 검, 초콜렛 제품, 커피, 담배, 비누, 샴푸, 가전제품, 자동차 및 개인 항공기 등 200개 이상 품목	7,500루피 이상의 일일 객실 요금, 100루피 이상의 영화관 입장료, 이벤트, 발레, 경주장, 크리켓, 경마, 도박

자료: IBFD, “India - Goods &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7. Rat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7.&refresh=1659418439526%23evat\\_in\\_s\\_7..](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7.&refresh=1659418439526%23evat_in_s_7..) 검색일자: 2022. 7. 15.

## 2) 간이과세제도<sup>90)</sup>

매출액이 1,500만루피 이하인 소규모 납세자는 간이과세제도를 통해 보다 낮은 세율을 선택할 수도 있다. 간이과세제도를 선택할 경우 납세자는 정상 세율 대신 아래와 같이 규정된 세율로 분기마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표 2-2-3〉 간이과세사업자 적용 세율

(단위: %)

취급 품목	규정 세율
제조업 및 상업 종사자 (아이스크림, 판 마살라 및 담배 제조업자 제외)	1%
사람이 소비하는 식품 및 음료 공급자 (주류 제외)	2.5%
기타 모든 공급 업체	0.5%

자료: IBFD, “Indi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10.4.6. Composition levy scheme”,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10.4.6..](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10.4.6..) 검색일자: 2022. 11. 18.

90) IBFD, “Indi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10.4.6. Composition levy scheme”,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10.4.6..](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10.4.6..) 검색일자: 2022. 11. 18.

간이과세제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 ① 임시 과세대상자 또는 비거주 과세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② 지정된 날에 재고로 보유한 상품이 주(state) 간 거래, 국외 수입, 주 외 지점으로부터 수령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③ 재고로 보유한 상품은 등록된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이어야 한다.
- ④ 발행하는 공급명세서 상단에 간이과세 대상자임을 명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 및 주(state) 간 매출 공급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제도의 대상이 아니며, 간이과세제도를 선택한 공급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통한 상품 공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 V 영세율 및 면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수출하거나, 경제특구인 SEZ 개발자나 unit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SEZ 내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때 개발자는 연방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나 주정부를 의미하며, 행정당국과 공동 개발자를 포함한다. 또한 unit은 경제특구에 있는 기업가에 의해 설립된 unit을 의미하고, IGST법의 시행 전후에 설립된 기존 unit과 기업용 역외계좌 등을 포함한다.<sup>91)</sup>

또한 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① 예금, 대출 및 차입금의 연장, ② 외화의 매매, ③ 2천루피까지의 카드부채 결제, ④ 증권거래위원회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유가증권의 발전을 촉진하고 규제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⑤ 인도준비은행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GST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열한다.<sup>92)</sup>

이밖에도 GST는 관광객에 대한 재화 공급은 국가 내 공급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여행객이 출국 시 GST의 환급을 허용하고 있다.<sup>93)</sup>

91) Integrated Goods and Service Tax Act §16(1)

92) IBFD, "India - Goods &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8. Exemption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8.1.&refresh=165942224987%23evat\\_in\\_s\\_8.1.1.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8.1.&refresh=165942224987%23evat_in_s_8.1.1.2.), 검색일자: 2022. 7. 15.

93) Integrated Goods and Service Tax Act §15

## VI 산출세액

### 1. 매입세액 공제<sup>94)</sup>

인도의 GST는 하나의 거래에 연방정부의 CGST와 주정부의 SGST가 절반씩 징수되는 이중 GST 제도로 운영된다. 이때 매입세액에 대해 CGST와 SGST 간, 혹은 각 주의 SGST 간 상호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IGST와 CGST 및 SGST 간 공제는 허용된다.<sup>95)</sup> 이 경우 공제 적용 순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2-4〉 매입세액 공제 적용 순서

	1순위	2순위
CGST	CGST	IGST
SGST	SGST	IGST
IGST	IGST	CSST 또는 SGST

자료: IBFD, “India - Goods &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13.9”. Input tax deduction, [http://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9](http://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9), 검색일자: 2022. 11. 13.

#### 가. 매입세액 공제 요건<sup>96)</sup>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GST 시스템 등록
- ② 재화 및 용역의 수령
- ③ 세금계산서 등 납세를 위한 규정된 문서 보유

94) IBFD, “India - Goods &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9.1. General”,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9.&refresh=1659423409047%23evat\\_in\\_s\\_9.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9.&refresh=1659423409047%23evat_in_s_9.1), 검색일자: 2022. 11. 13.

95) IBFD, “Indi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9. Input tax deduc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9](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9), 검색일자: 2022. 11. 13.

96) IBFD, “Indi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9. Input tax deduc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9](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9), 검색일자: 2022. 11. 13.

- ④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기재한 GST 신고서 제출
- ⑤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 대금 지급 완료

이때 납세를 위해 규정된 문서는 세금계산서 외에도 공급 업체가 발행한 어음(debit note), 통관신고서, ISD(Input Service Distributor)<sup>97)</sup>가 발행한 문서 등을 포함한다.

#### 나. 불공제 매입세액<sup>98)</sup>

또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① 아래의 특정 경우를 제외한 자동차 및 기타 운송 수단
  - 운전자 포함 13명 이상의 좌석을 보유한 여객 차량
  - 선박 및 항공기의 운송을 위한 차량
  - 은행 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 운송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
- ② 식음료, 미용 목적의 치료(성형 포함), 건강 관련 서비스 비용
- ③ 클럽 및 피트니스 센터의 회원권 비용
- ④ 차량의 대여, 생명보험, 건강보험 비용(법률에 따라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제외)
- ⑤ 종업원에게 제공된 휴가비와 같은 복리 혜택 비용
- ⑥ 설비 및 기계류를 제외한 부동산 건설 도급계약 관련 매입액(계약의 추가 공급을 위한 매입인 경우 제외)
- ⑦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의 매입액
- ⑧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 비용
- ⑨ 물품의 분실, 도난, 손상, 상각 등이나 선물 또는 무료 샘플에 소요된 비용

97) 여러 개의 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본점을 관리 기능으로 활용하여 일괄 구매를 하는 경우, 본점이 위치한 주에서는 매출 없이 매입만 발생하고 본점의 매입세액은 다른 주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이에 인도는 매입세액을 타 주로 이전할 수 있는 ISD 기능을 도입하였다(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KOTRA, 『인도 통합부가가치세의 이해』, 2017.).

98) IBFD, "Indi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9. Input tax deduc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9.](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9.), 검색일자: 2022. 11. 13.

⑩ 납세자 과실로 인해 추가적으로 납부한 모든 세금

## 2. 납부세액의 산출

GST는 부가가치세의 개념에서 파생되었으므로, 이는 유통 각 단계에서 적용되며 소비자는 공급망의 마지막 딜러 또는 공급 업체가 부과하는 GST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단계에서 업자의 이윤을 합하여 산출된 공급 가치에 GST 세율의 절반씩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나누어 부과한다.

다음 <표 2-2-5>를 통해 GST 세율이 12%인 상품의 제조업자부터 최종소비자에게 가는 단계까지의 GST 부과 흐름을 살펴보았다. GST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므로 공급 가치에 대해 CGST와 SGST가 각각 6%씩 부과되고, 이 금액은 다음 단계의 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된다.

〈표 2-2-5〉 유통 단계상 GST 부과 흐름도

(단위: 루피)

제조업자	생산비용	200,000.00	
	제조업자 이윤(10%)	20,000.00	
	공급 가치	220,000.00	
	+		
	CGST(6%)	13,200.00	≪ 도매업자 매입세액공제 적용 금액
	+		
	SGST(6%)	13,200.00	
	=		
세금계산서 금액	246,400.00		
↓			
도매업자	상품비용	246,400.00	
	도매업자 이윤(10%)	24,640.00	
	공급 가치	271,040.00	
	+		
	CGST(6%)	16,262.40	≪ 소매업자 매입세액공제 적용 금액
	+		
	SGST(6%)	16,262.40	
	=		
세금계산서 금액	303,564.80		
↓			
소매업자	상품비용	303,564.80	
	소매업자 이윤(10%)	30,356.48	
	공급 가치	333,921.28	
	+		
	CGST(6%)	20,035.28	
	+		
	SGST(6%)	20,035.28	
	=		
세금계산서 금액 (최종소비자가)	373,991.84		

자료: Lendingkart, "GST Calculator", <https://www.lendingkart.com/gst-calculator>, 검색일자: 2022. 1 2. 21.

## Ⅶ 신고 및 납부

### 1. 신고<sup>99)</sup>

모든 납세자는 납부해야 할 GST 세액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과세기간 내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GST 신고는 전자로 이루어지며, 공급업체 신고 정보와 연계되어 매입세액 공제 등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고서 제출 후 관련 부서를 통해 오류 및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이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월별 신고서와 연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간이과세제도 적용 납세자, 비거주 납세자, ISD 활용 납세자 등에 대한 별도의 신고서가 존재하므로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된 신고서를 유의하여 선택해 GSTN 홈페이지<sup>100)</sup>나 GSTN의 오프라인 사업장, GST Suvidha Providers 홈페이지<sup>101)</sup>를 통해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서식은 월별 매출과 매입, 종합 신고에 활용되는 GSTR-1, GSTR-2, GSTR-3이며, GSTR-2는 해당 납세자의 협력업체 중 등록된 업체가 신고한 GSTR-1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또한 GSTR-3은 GSTR-1과 GSTR-2에 신고된 내용이 자동 입력되고, 이와 함께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표시한다.

또한 GST에 등록된 납세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GSTR-9 서식을 통해 해당 회계연도의 연간 보고서를 전자 제출해야 한다. 또한 GST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 날짜 또는 취소 명령일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식 GSTR-10(최종 GST 신고서)을 제출해야 한다.<sup>102)</sup>

비거주 납세자의 경우 GST 등록 신청 시 등록을 원하는 기간 동안의 추정 납세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불로 예치해야 하며,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절차를 따른다. 입금된 금액은 전자 현금 원장에 입금되며, 등록된 모든 비거주 납세자는 매월 20일 이내 또는 GST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중 더 빠른 날짜에 GSTR-5 신고서를 전자 제출해야 한다.<sup>103)</sup>

99) IBFD, "Indi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10.4.1. General",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10.4.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10.4.1..), 검색일자: 2022. 11. 13.

100) GSTN, <https://gstn.org.in>, 검색일자: 2022. 11. 13.

101) GSTzen, <https://www.gstzen.in>, 검색일자: 2022. 11. 13.

102) IBFD, "India - Goods &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11.4.1. Resident taxable person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11.1.&refresh=1669099538116%23evat\\_in\\_s\\_11.4.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11.1.&refresh=1669099538116%23evat_in_s_11.4.1..), 검색일자: 2022. 11. 20.

〈표 2-2-6〉 GST 신고서식 및 제출 기한

신고서식	신고사항	신고주기	신고기한
GSTR-1	매출 내역	월별 <sup>1)</sup>	익월 10일
GSTR-2	매입 내역	월별 <sup>1)</sup>	익월 15일
GSTR-3	종합 신고	월별 <sup>1)</sup>	익월 20일
GSTR-4	간이과세신고	분기별	분기 종료 후 18일
GSTR-5	비거주 납세자 신고	월별	익월 20일
GSTR-6	ISD 신고	월별	익월 13일
GSRT-9	연차 신고	연도별	

주: 1) 매출액 5천만루피 이하의 납세자는 분기별 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나, 납부는 매월 이루어져야 함.  
 자료: IBFD, “Indi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10.4.1. General”,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10.4.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10.4.1.), 검색일자: 2022. 11. 13.

## 2. 납부<sup>104)105)</sup>

납세자의 신고 내용은 GST Portal 내 GST PMT-1 양식 내의 전자 납세 등록부에 저장되며, 납세자는 GST Portal에서 납부서(GST PMT-6)를 생성하여 세금, 이자, 과태료, 수수료 또는 기타 금액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한 후 해당 금액을 납부한다.

납부서에 세부 정보를 입력하면 GST Portal에 납부서 식별 번호(Challan Portal Identification Number, CPIN)가 생성되며, 은행에 해당 번호가 공유되고 다음 결제 방식을 통해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 ① 공인 은행을 통한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결제
- ② 모든 은행의 온라인 실시간 이체(NEFT) 또는 전자 지불(RTGS)
- ③ 모바일 이체(IMPS) 및 모바일 결제(UPI)
- ④ 현금, 수표, 공인 은행을 통한 송금환 수표(DD) (납부서당 납세액이 1만루피 이하인 경우)

103) IBFD, “India - Goods &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11.4.2. Non-resident taxable person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11.1.&refresh=1669099538116%23evat\\_in\\_s\\_11.4.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11.1.&refresh=1669099538116%23evat_in_s_11.4.2.), 검색일자: 2022. 11. 20.

104) IBFD, “Indi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10.4.4. Payment of GST”,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10.5.](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10.5.), 검색일자: 2022. 11. 13.

105) Clear tax, “Clarification on the Formats of Forms GST PMT-06 and GST PMT-07”, <https://cleartax.in/s/clarification-on-the-format-of-forms-gst-pmt-06-and-gst-pmt-07>, 검색일자: 2022. 11. 20.

납부를 완료한 납부서의 입금 내역은 GST Portal 내 전자 현금 대장(GST PMT-05)에 입금 내역이 표시된다. 생성된 납부서는 15일 동안 유효하며, 세금 납부를 먼저 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납부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하루에 생성할 수 있는 납부서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GST에 등록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GST 포털을 통해 임시 식별 번호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 3. 이자 및 과태료<sup>106)</sup>

#### 가. 지연 이자

납세의무자가 과세 기한 내에 모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납부일까지 미납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sup>107)</sup> 또한 규정을 위반하여 매입세액공제 금액이나 납부 세액을 과다 혹은 과소로 산출한 경우에도 해당 세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그 밖에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환급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그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표 2-2-7〉 GST 납부 및 환급 관련 지연 이자표

이자책임	이자 발생 원인	적용 대상 기간 및 이자율
납세자	납부 연체	미납된 기간 동안 연 18%의 이자율 적용
	매입세액공제 초과 산정 및 과소 납부	채무불이행 기간 동안 연 24%의 이자율 적용
과세관청	항소 등으로 보류된 환급	환급 만기일로부터 실제 수령일까지 연 6%의 이자율 적용
	환급 지연(일반)	지급기한(신고 후 60일) 만료 직후부터 연 6%의 이자율 적용
	환급 지연(처분, 명령) <sup>1)</sup>	지급기한(신고 후 60일) 만료 직후부터 연 9%의 이자율 적용

주: 1) 법원에 의해 처분 및 환급 명령이 이루어졌으나 지급이 지연된 경우  
 자료: IBFD, "Indi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10.5. Interest and penalt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10.5.](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10.5.), 검색일자: 2022. 11. 13. 내용 저자 정리

106) IBFD, "Indi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10.5. Interest and penalt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10.5.](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10.5.), 검색일자: 2022. 11. 13.

107)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50

## 나. 과태료

과세기한 내에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GST 등록 납세자는 1일 100루피(최대 5천 루피)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연체료는 CGST 및 SGST의 경우 각각 25루피로, 무실적 신고는 10루피로 할인된다.

또한 아래와 같은 특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와 함께 벌금과 재화 또는 운송물의 몰수가 이루어지며, 과태료는 1만루피 또는 탈세된 세액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

- ① 개인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물품을 설명하지 못한 경우
- ② 납세를 회피할 의도로 조항이나 규칙을 위반하여 물품을 공급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 ③ 세금이 부과되는 물품을 등록하지 않고 공급하는 행위
- ④ 조항이나 규칙을 위반하여 과세 대상 물품을 운송하는 행위

## VIII 환급

GST의 환급은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Section 54~58과 CGST Rules Section 89~97에 근거하여 처리되며, GST에 등록된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의 공급에 대해 과세기간이 끝날 때 사용하지 않은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sup>108)</sup>

- ① 영세율 혹은 면세대상 공급의 경우
- ② 초과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 ③ 공급자가 CGST와 관련한 환급(drawback)<sup>109)</sup>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공급에 대해 납부한 IGST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 ④ 수출세가 부과되는 물품에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못한 경우

이 밖에도 IGST Act의 Section 16(3)은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혹은 면세 공급과 관련

108) IBFD, "India - Goods &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9.1.2. Excess input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9.&refresh=1659423409047%23evat\\_in\\_s\\_9.1.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9.&refresh=1659423409047%23evat_in_s_9.1.2.), 검색일자: 2022. 11. 20.

109) 수출 공산품에 사용된 수입 또는 국산 물품에 대해 부과된 관세 및 세금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2 (42))

하여 등록된 납세자는, i) IGST를 납부하지 않고 채권 또는 약정서(LUT)를 제출하여 사용하지 않은 매입세액공제의 환급을 청구하거나, ii) IGST를 납부한 후 수출 증명을 통해 해당 세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선택 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환급의 신청을 위해서는 인도의 국가 디지털 ID인 Aadhar 인증이 필요하며, 환급금은 GST 시스템에 등록된 납세자의 납세자 번호(PAN)에 연결된 은행 계좌로만 지급된다.<sup>110)</sup>

## IX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 1. 사업자 등록

#### 가. 거주자<sup>111)</sup>

##### 1) 등록

과세대상 공급을 하고 GST를 제외한 총매출액이 연 200만루피를 초과하는 공급자는 매출액을 발생시킨 주에 GST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그 주가 지리 및 사회경제적 불리성으로 인해 연방정부로부터 특별주(special category states of India)로 분류된 경우 매출액 기준은 100만루피이다. 이때 총매출액은 1961년 소득세법에 따라 매입자 납부제도를 기준으로 처리되는 공급품, 면세 공급품, 재화 및 용역의 수출, 동일 납세자 번호(PAN)를 가진 사업자의 주 간(interstate) 공급을 제외한 인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모든 과세대상 공급품에 대해 계산한다. 또한 상품을 독점 공급하는 사업자는 후술하는 필수 등록 요건에 해당하거나 특별주 내에서 주(state) 내 공급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GST 등록 의무 매출액 기준이 400만루피로 상향된다.

그러나 2017년 GST법의 등장과 함께 기존 간접법에 따라 등록 및 허가된 모든 사업체들이 매출액에 관계없이 GST에 등록되어, 실제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체는 원

110) IBFD, "Indi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7.3. Zero rate",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7.3.](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n_s_13.&refresh=1669068557948%23cta_in_s_13.7.3.), 검색일자: 2022. 11. 17.

111) IBFD, "India - Goods &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11.1.1. Resident taxable person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11.1.1.&refresh=1669118439711%23evat\\_in\\_s\\_11.1.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11.1.1.&refresh=1669118439711%23evat_in_s_11.1.1.), 검색일자: 2022. 11. 17.

하는 경우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매출액에 관계없이 GST의 등록이 필수로 요청된다.

- ① 주(state) 간 상호 거래되는 과세대상 물품 생산자
- ② 고정사업장 없이 과세대상 물품을 만드는 임시 사업자
- ③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해 GST를 납부하는 사업자
- ④ 인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 ⑤ 과세대상 물품을 만드는 비거주자 사업자
- ⑥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Section 51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세액공제가 요구되는 사업자
- ⑦ 대리인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과세대상자를 대신하여 과세대상 공급을 하는 사업자
- ⑧ ISD 활용 사업자
- ⑨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Section 52에 근거하여 원천징수가 요구되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
- ⑩ 원천징수세액공제가 요구되는 모든 전자상거래 사업자
- ⑪ 인도 외 장소에서 인도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온라인 정보 접근 서비스(OIDAR)를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⑫ 의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가 고지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계층의 사업자

GST 등록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과세대상 공급을 하는 모든 주에서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체가 주 내에 둘 이상의 업종(지점 또는 별도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등록하여 상호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GST 등록 예정자는 신청 전에 GST 포털에 납세자 번호(PA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등록을 원하는 주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GST 등록은 기본 등록 양식(GST REG-01)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이루어지며, 신청 후 확인서(GST REG-02)가 신청자에게 전자 발행된다.

## 2) 등록 취소

GST에 등록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 취소를 요청할 때에는 GSTR REG-16 양식을 사용한다.

- ① 사업이 중단되거나, (소유주의 사망을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 양도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되거나, 처분된 경우
- ② 사업의 구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 ③ 자발적 등록자가 아닌 매출액 미달의 기존 간접세 등록 사업자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GST 등록 담당자가 사업자의 등록을 직접 취소할 수 있다.

- ① 사업자가 법령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일반 사업자는 6개월, 간이과세사업자는 연속된 3개년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③ 자발적 등록을 한 사업자가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④ 등록이 사기, 고의적인 허위 진술 또는 사실 은폐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취소 통지(GSTR REG-19)가 발송되기 전 등록 취소가 예정된 사업자에게 소명서(GSTR REG-17)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며, GST 담당자는 이에 대해 회신 통지(GSTR REG-18)를 할 수 있다.

### 나. 비거주자<sup>112)</sup>

GST에서 비거주자 과세대상자는 인도에 고정된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없으나 때때로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거래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sup>113)</sup> 이 경우 사업 시작 최소 5일 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 신청서 제출 시 등록 기간 동안 예상되는 GST 세액을 사전 예치해야 한다. 등록 신청서(GST REG-09)는 GST 포털에서 전자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 인증 코드를 통해 서명 또는 확인된 유효한 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신청

112) IBFD, "India - Goods &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11.1.2. Non-resident taxable person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11.1.1.&refresh=1669118439711%23evat\\_in\\_s\\_11.1.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11.1.1.&refresh=1669118439711%23evat_in_s_11.1.2.), 검색일자: 2022. 11. 17.

113)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Section 2(77)

자가 인도의 납세자 번호나 자국의 세금 식별 번호가 있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신청 후 세액 사전 예치를 위한 임시 번호가 부여되며, GST 포털 내 전자 현금 원장에서 입금이 확인되어야 승인이 이루어진다. 비거주 온라인 정보 접근서비스(OIDAR) 사업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IGST Act Section 14에 규정되어 있다.

비거주자 과세대상자에게 발급된 등록 증명서는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기간 또는 등록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중 빠른 기간 동안 유효하며, 증명서 발급 후에만 과세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도, 연장을 원하는 기간 동안의 추정 세액에 해당하는 추가 세금 금액의 예치가 필요하다.

이 밖에 비거주자의 GST 등록 취소 절차는 거주자와 동일하다.

## 2. 세금계산서

### 가. 세금계산서의 발행<sup>114)</sup>

과세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GST 등록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상품의 설명, 수량 및 가치와 그에 부과된 GST가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① 공급이 상품의 이동을 수반하는 경우, 수령인에게 공급하기 위한 상품의 적출 시
- ② 수령인에게 상품을 배송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

제공하는 품목이 서비스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이 된다.

다만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 혹은 둘 다의 가치가 200루피 미만인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수령인이 등록된 사람이 아닌 경우
- ② 수령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관련된 모든 공급품에 대해 매일 마감 시

114) IBFD, "India - Goods &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11.2.1. Issue of tax invoic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11.&refresh=1669125271315%23evat\\_in\\_s\\_11.2.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11.&refresh=1669125271315%23evat_in_s_11.2.1.), 검색일자: 2022. 11. 17.

### 점에 통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또한 세금 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간이과세제도에 따라 GST를 납부하는 자의 경우, 상기한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대신 공급 명세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2020년 10월 1일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 포털<sup>115)</sup>을 통해 세금계산서 식별 번호(IRN)를 부여받은 후 작성할 수 있으며, 현재는 연매출액 1억루피를 초과하는 공급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sup>116)</sup>

아울러 CGST Rules Section 46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sup>117)</sup>

- ① 공급자의 이름, 주소 및 GST 식별 번호
- ② 발행일
- ③ 수령인의 이름,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GSTIN) 또는 고유 식별번호(UIN)<sup>118)</sup>  
(과세대상 공급액이 5만루피 이상이고 수령인이 GST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령인의 이름과 주소, 배송 주소, 주 이름 및 코드를 기재함)
- ④ 상품 및 서비스의 HS 코드
- 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 ⑥ 상품의 수량 또는 고유 수량 코드
- ⑦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 공급 가치
- ⑧ 할인 또는 감면 사항을 반영한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의 과세 가치
- ⑨ GST 세율 및 세액
- ⑩ 공급이 주(state) 간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주 이름과 공급 장소

115) e-Invoice System, <https://einvoice1.gst.gov.in>, 검색일자: 2022. 11. 17.

116) IBFD, "India - Goods &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11.2.4.1. Electronic invoice (E-invoice)",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11.&refresh=1669125271315%23evat\\_in\\_s\\_11.2.4.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11.&refresh=1669125271315%23evat_in_s_11.2.4.1.), 검색일자: 2022. 11. 17.

117) IBFD, "India - Goods &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11.2.3. Content of tax invoic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11.&refresh=1669125271315%23vat\\_in\\_s\\_11.2.3.](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11.&refresh=1669125271315%23vat_in_s_11.2.3.), 검색일자: 2022. 11. 17.

118) 인도 영토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외교 공관 및 대사관과 같은 GST 특별 등록 클래스에 부여

- ⑪ 배송지가 공급처 주소와 다른 경우 배송지 주소
- ⑫ 매입자납부제도 적용 여부
- ⑬ 공급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물리적 또는 디지털 서명

나. 세금계산서 외 과세 관련 증빙서류<sup>119)</sup>

일반 세금계산서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류들을 대체 및 보완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① 공급 명세서(bill of supply): 세금이 면제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이과세 제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 ② 수령증(receipt voucher):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선수금을 받는 사업자
- ③ 환불 확인증(refund voucher): 완료되지 못한 공급에 대해 받은 선수금을 환불하는 사업자
- ④ 자체 세금계산서(self-invoice): 매입자납부제도를 따르거나 등록되지 않은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사업자
- ⑤ 출금전표(payment voucher): 공급자에게 대금 지불 시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 ⑥ 대변표(credit note):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된 상황에서, i)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부과된 세액이 해당 공급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하는 실제 과세 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ii) 공급된 상품이 수취인에 의해 반환되거나, iii) 공급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 부족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공급자는 수취인에게 대변표를 발행할 수 있다.
- ⑦ 차변표(debit note):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부과된 세액이 해당 공급과 관련하여 실제 지불해야 하는 과세 가치보다 적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공급자는 수취인에게 차변표를 발행해야 한다.
- ⑧ ISD 세금계산서(input service distributor invoice): ISD 활용 사업자가 사용하며, 분배되는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의 내용을 포함한다.

119) IBFD, "India - Goods &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11.2.2. Type of invoic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11.&refresh=1669125271315%23evat\\_in\\_s\\_11.2.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s_11.&refresh=1669125271315%23evat_in_s_11.2.2.), 검색일자: 2022. 11. 17.

[그림 2-2-1] (부록1) GST 신고 서식 (매출서식 Form GSTR-1)

<b>FORM GSTR-1</b> <i>[See rule (59(1))]</i>										
Details of outward supplies of goods or services										
										Year
										Month
1.		GSTIN								
2.	(a)	Legal name of the registered person								
	(b)	Trade name, if any								
3.	(a)	Aggregate Turnover in the preceding Financial Year								
	(b)	Aggregate Turnover - April to June, 2017								
<b>4. Taxable outward supplies made to registered persons (including UIN-holders) other than supplies covered by Table 6</b>										
										(Amount in Rs. for all Tables)
GSTIN/ UIN	Invoice details			Rate	Taxable value	Amount				Place of Supply (Name of State/UT)
	No.	Date	Value			Integrated Tax	Central Tax	State / UT Tax	Cess	
1	2	3	4	5	6	7	8	9	10	11
4A. Supplies other than those (i) attracting reverse charge and (ii) supplies made through e-commerce operator										
4B. Supplies attracting tax on reverse charge basis										
4C. Supplies made through e-commerce operator attracting TCS (operator wise, rate wise)										
GSTIN of e-commerce operator										
<b>5. Taxable outward inter-State supplies to un-registered persons where the invoice value is more than Rs 2.5 lakh</b>										
Place of Supply (State/UT)	Invoice details			Rate	Taxable Value	Amount				
	No.	Date	Value			Integrated Tax	Cess			
1	2	3	4	5	6	7	8			
5A. Outward supplies (other than supplies made through e-commerce operator, rate wise)										

[그림 2-2-1]의 계속

5B. Supplies made through e-commerce operator attracting TCS (operator wise, rate wise)															
GSTIN of e-commerce operator															
<b>6. Zero rated supplies and Deemed Exports <sup>26</sup></b>															
GSTIN of recipient	Invoice details			Shipping bill/ Bill of export		Integrated Tax			Central Tax			State / UT Tax			Cess
	No.	Date	Value	No.	Date	Rate	Taxable value	Amt.	Rate	Taxable value	Amt.	Rate	Taxable value	Am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6A. Exports															
6B. Supplies made to SEZ unit or SEZ Developer															
6C. Deemed exports															
<b>7. Taxable supplies (Net of debit notes and credit notes) to unregistered persons other than the supplies covered in Table 5</b>															
Rate of tax	Total Taxable value	Amount													
		Integrated	Central	State Tax/UT Tax	Cess										
1	2	3	4	5	6										
7A. Intra-State supplies															
7A (1). Consolidated rate wise outward supplies [including supplies made through e-commerce operator attracting TCS]															
7A (2). Out of supplies mentioned at 7A(1), value of supplies made through e-Commerce Operators attracting TCS(operator wise, rate wise)															
GSTIN of e-commerce operator															

[그림 2-2-1]의 계속

7B. Inter-State Supplies where invoice value is uptoRs 2.5 Lakh [Rate wise]															
7B (1). Place of Supply (Name of State)															
7B (2). Out of the supplies mentioned in 7B (1), the supplies made through e-Commerce Operators (operator wise, rate wise)															
GSTIN of e-commerce operator															
<b>8. Nil rated, exempted and non GST outward supplies</b>															
Description				Nil Rated Supplies		Exempted (Other than Nil rated/non-GST supply)				Non-GST supplies					
1				2		3				4					
8A. Inter-State supplies to registered persons															
8B. Intra- State supplies to registered persons															
8C. Inter-State supplies to unregistered persons															
8D. Intra-State supplies to unregistered persons															
<b>9. Amendments to taxable outward supply details furnished in returns for earlier tax periods in Table 4, 5 and 6 [including debit notes, credit notes, refund vouchers issued during current period and amendments thereof]</b>															
Details of original document			Revised details of document or details of original Debit/Credit Notes or refund vouchers						Rate	Taxable Value	Amount				Place of supply
GSTIN	Inv. No.	Inv. Date	GSTIN	Invoice		Shipping bill		Value		Integrated Tax	Central Tax	State / UT Tax	Cess		
				No.	Date	No.	Dat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9A. If the invoice/Shipping bill details furnished earlier were incorrect															
9B. Debit Notes/Credit Notes/Refund voucher [original]															
9C. Debit Notes/Credit Notes/Refund voucher [amendments thereof]															

[그림 2-2-1]의 계속

10. Amendments to taxable outward supplies to unregistered persons furnished in returns for earlier tax periods in Table 7						
Rate of tax 1	Total Taxable value 2	Amount				
		Integrated 3	Central 4	State/UT Tax 5	Cess 6	
Tax period for which the details are being revised		<Month>				
10A. Intra-State Supplies[including supplies made through e-commerce operator attracting TCS] [Rate wise]						
10A (1). Out of supplies mentioned at 10A, value of supplies made through e-Commerce Operators attracting TCS (operator wise, rate wise)						
GSTIN of e-commerce operator						
10B. Inter-State Supplies[including supplies made through e-commerce operator attracting TCS] [Rate wise]						
Place of Supply (Name of State)						
10B (1). Out of supplies mentioned at 10B, value of supplies made through e-Commerce Operators attracting TCS (operator wise, rate wise)						
GSTIN of e-commerce operator						
11. Consolidated Statement of Advances Received/Advance adjusted in the current tax period/ Amendments of information furnished in earlier tax period						
Rate 1	Gross Advance Received/adjusted 2	Place of supply 3	Amount			
			Integrated 4	Central 5	State/UT 6	Cess 7
<b>I Information for the current tax period</b>						
11A. Advance amount received in the tax period for which invoice has not been issued (tax amount to be added to output tax liability)						
11A (1). Intra-State supplies(Rate Wise)						
11A (2). Inter-State Supplies(Rate Wise)						
11B. Advance amount received in earlier tax period and adjusted against the supplies being shown in this tax period in Table Nos. 4, 5, 6 and 7						
11B (1). Intra-State Supplies (Rate Wise)						
11B (2). Inter-State Supplies(Rate Wise)						
<b>II Amendment of information furnished in Table No. 11[1] in GSTR-1 statement for earlier tax periods[Furnish revised information]</b>						
Month		Amendment relating to information furnished in S. No.(select)	11A(1)	11A(2)	11B(1)	11B(2)

## [그림 2-2-1]의 계속

12. HSN-wise summary of outward supplies										
Sr. No.	HSN	Description (Optional if HSN is provided)	UQC	Total Quantity	Total value	Total Taxable Value	Amount			
							Integrated Tax	Central Tax	State/UT Tax	Cess
1	2	3	4	5	6	7	8	9	10	11

13. Documents issued during the tax period						
Sr. No.	Nature of document	Sr. No.		Total number	Cancelled	Net issued
		From	To			
1	2	3	4	5	6	7
1	Invoices for outward supply					
2	Invoices for inward supply from unregistered person					
3	Revised Invoice					
4	Debit Note					
5	Credit Note					
6	Receipt voucher					
7	Payment Voucher					
8	Refund voucher					
9	Delivery Challan for job work					
10	Delivery Challan for supply on approval					
11	Delivery Challan in case of liquid gas					
12	Delivery Challan in cases other than by way of supply (excluding at S no. 9 to 11)					

Verification

I hereby solemnly affirm and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given herein above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nd nothing has been concealed there from and in case of any reduction in output tax liability the benefit thereof has been/will be passed on to the recipient of supply.

Place  
of Authorised Signatory .....

Signature  
Name

자료: IBFD, "Annex III: VAT Retur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annex\\_3&refresh=1669100959485%23evat\\_in\\_annex\\_3](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in_annex_3&refresh=1669100959485%23evat_in_annex_3), 검색일자: 2022. 11. 22.

## 제3장 | 국제조세

### I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과세

#### 1. 일반

2015년 체결한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인도는 인도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도의 연방 및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소득과 관련된 납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합산되는 소득에는 인도 내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 사업 및 전문가 소득, 이자 및 배당금 소득, 로열티 및 수수료,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등이 있으며, 이러한 총소득이 1천만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인도 정부가 총소득 또는 소득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에 대해 거주자와 거의 동일하게 과세한다.<sup>120)121)</sup>

다만 인도에서는 외국인이 납세 의무를 2년간 보류할 수 있으며, 인도 내 대한민국 공관의 직원일 경우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인도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급여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sup>122)</sup>

다음 표에 대표적인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 및 면제 내용과 원천징수세 세율을 정리하였으며, 이 표에 설명하지 않은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 세율이 적용된다.

〈표 2-3-1〉 비거주 외국인 과세대상 소득 관련 정리

과세 대상 소득	과세 범위 및 면제 사항	원천징수
근로소득	- 고용 계약이 체결된 곳이나 소득이 지급되는 위치와 관계없이 인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인도 발생 소득으로 간주	거주자와 동일

120) 한국-인도 조세조약 [2016.09.12.] 제2조

121) IBFD, "India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7.3.1.1. General",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ta/html/ita\\_in\\_s\\_007.html%23ita\\_in\\_s\\_7.3.1.1.](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ta/html/ita_in_s_007.html%23ita_in_s_7.3.1.1.), 검색일자: 2022. 12. 5.

122) IBFD, "India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7.2. Taxation of expatriate individual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in\\_s\\_7.2.](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ta_in_s_7.2.), 검색일자: 2022. 12. 5.

〈표 2-3-1〉의 계속

과세 대상 소득	과세 범위 및 면제 사항	원천징수
사업 및 전문가 소득	- 인도의 고정사업장 또는 인도의 사업 연결에서 발생하는 사업 및 전문 소득 - 인도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인도에서의 비즈니스 연결을 통해 발생한 소득 또한 포함	거주자와 동일
배당금 소득	- 소득이 인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되며, 인도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은 그것이 해외에서 선언되고 지급되는 경우에도 인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	20%
이자소득	- 인도 정부 혹은 인도 거주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 - 인도에서 수행되는 사업이 차용한 자금을 대해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소득 - 상기한 이자가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인도 발생 소득으로 간주 - 인도 기업이 2018년 9월 17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국외에서 발행한 루피 표시 채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면제	5% <sup>1)</sup>
로열티 및 수수료	- 인도 정부로부터 받은 로열티 - 인도 거주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권리, 재산 또는 정보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로열티 제외함, 인도 거주자로부터 받은 로열티 - 인도의 국내의 모든 원천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권리, 재산, 정보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로열티 - 인도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협정에 의해 인도 정부 및 그 유관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원천징수 면제	10%

주: 1) 2014년 1월부터 인도 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 적용되는 감면 세율로, 일반 세율은 20%임

자료: IBFD, "India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7.3. Taxation of non-resident individuals",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ta/html/ita\\_in\\_s\\_007.html%23ita\\_in\\_s\\_7.3.](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ta/html/ita_in_s_007.html%23ita_in_s_7.3.), 검색일자: 2022. 12. 5. 내용 저자 정리

## 2. 고정사업장<sup>123)</sup>

우리나라는 인도와의 조세조약을 통해 고정사업장을 기업이 사업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대리점, 저장 설비 창고, 농업·임업·플랜테이션 또는 관련 활동이 수행되는 그 밖의 장소,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를 포함한다. 또한 이밖에도 183일을 초과하여 진행되는 건축현장이나 건설 및 설치, 조립 공사 혹은 그와 관련한 감독 활동이나, 자문 등의 목적으로 외부 인력이 기업에 외부 12개월 이내에 183일 이상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용역 역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한다.

123) 한국-인도 조세조약 [2016.09.12.] 제5조

다만 i)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인도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ii) 저장·전시·인도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이 소유하는 재화 또는 상품, iii) 다른 기업에 가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의 재화 및 상품의 재고 보유, iv) 재화 및 상품 구입 혹은 정보 수집만을 위한 사업 장소, v) 기업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장소의 경우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 II 이중과세 방지조치

### 1. 일반

인도는 「소득세법」 제90조를 통해 과세당국이 인도 외 국가의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고 정보 교환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약을 통해 재산이 인도에 있지 않은 비거주자 소득세 납부 불이행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회피를 방지하거나 회수를 제공할 수 있다. 인도는 다수의 국가들과 이중과세 방지조약과 정보 교환, 해운 및 항공 운송 소득에 관한 일부 제한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sup>124)</sup> 우리나라와는 2015년 5월 18일에 조약에 서명하였으며, 2016년 9월 12일 발효되어 한국과 인도에서 각각 2017년과 1월 1일과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금 감면은 세금 거주 증명서(TRC)를 제출한 비거주자에게만 제공되며, TRC에는 일반 정보 외에도 세금 목적상 납세자의 거주 상태, TRC가 적용되는 기간 및 해당 기간 동안 납세자의 주소도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칙은 또한 인도 거주자가 TRC를 얻기 위해 세무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형식은 인도 직접세 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에서 2012년 9월 17일 발행한 Not.39/2012에서 규정하고 있다.

### 2. 인도의 이중과세 방지조약 체결 현황

인도는 1965년 그리스와 첫 이중과세 방지조약을 맺은 이후, 2019년까지 102개국과 관련 조약을 맺고 있다.

124) IBFD, "Indi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7.4.1.2. Treaty relief from double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in\\_s\\_007.html%23cta\\_in\\_s\\_7.4.1.2.](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in_s_007.html%23cta_in_s_7.4.1.2.), 검색일자: 2022. 12. 1.

〈표 2-3-2〉 인도의 이중과세 방지조약 체결 국가

순번	국가	체결일	시행연도(일)
1	그리스	1965. 2. 11.	1964. 4. 1.
2	이집트	1969. 2. 20.	1969. 1. 1.
3	아랍공화국	1969. 2. 20.	1969. 1. 1.
4	리비아	1981. 3. 2.	1983. 1. 1.
5	잠비아	1981. 6. 5.	1984. 4. 1.
6	모리셔스	1982. 8. 24.	1983. 4. 1.
7	슬로바키아	1986. 1. 27.	1985. 4. 1.
8	뉴질랜드	1986. 10. 17.	1987. 4. 1.
9	아제르바이잔	1988. 11. 20.	1990. 4. 1.
10	몰도바	1988. 11. 20.	1990. 4. 1.
11	브라질	1988. 4. 26.	1993. 4. 1.
12	네덜란드	1988. 7. 30.	1987. 4. 1.
13	일본	1989. 3. 7.	1990. 4. 1.
14	덴마크	1989. 3. 8.	1990. 1. 1.
15	페로제도	1989. 5. 8.	1990. 1. 1.
16	폴란드	1989. 6. 21.	1990. 4. 1.
17	미국	1989. 9. 12.	1991. 4. 1.
18	필리핀	1990. 2. 12.	1995. 4. 1.
19	호주	1991. 7. 25.	1992. 4. 1.
20	방글라데시	1991. 8. 27.	2013. 4. 1.
21	아랍에미리트	1992. 4. 29.	1994. 4. 1.
22	프랑스	1992. 9. 29.	1995. 4. 1.
23	영국	1993. 1. 25.	1994. 4. 1.
24	이탈리아	1993. 2. 19.	1996. 4. 1.
25	스페인	1993. 2. 8.	1996. 4. 1.
26	벨기에	1993. 4. 26.	1998. 4. 1.
27	우즈베키스탄	1993. 7. 29.	1993. 4. 1.
28	싱가포르	1994. 1. 24.	1994. 4. 1.
29	스위스	1994. 11. 2.	1995. 4. 1.
30	몽골	1994. 2. 22.	1994. 4. 1.
31	불가리아	1994. 5. 26.	1996. 4. 1.
32	중국	1994. 7. 18.	1995. 4. 1.
33	베트남	1994. 9. 7.	1996. 4. 1.
34	튀르키예	1995. 1. 31.	1994. 4. 1.
35	독일	1995. 7. 19.	1997. 4. 1.
36	캐나다	1996. 1. 11.	1998. 4. 1.
37	이스라엘	1996. 1. 29.	1994. 4. 1.

〈표 2-3-2〉의 계속

순번	국가	체결일	시행연도(일)
38	남아프리카공화국	1996. 12. 4.	1998. 4. 1.
39	카자흐스탄	1996. 12. 9.	1998. 4. 1.
40	나미비아	1997. 2. 15.	2000. 4. 1.
41	투르크메니스탄	1997. 2. 25.	1998. 4. 1.
42	러시아	1997. 3. 25.	1999. 4. 1.
43	오만	1997. 4. 2.	1998. 4. 1.
44	스웨덴	1997. 6. 24.	1998. 4. 1.
45	벨라루스	1997. 9. 27.	1999. 4. 1.
46	체코	1998. 10. 1.	2000. 4. 1.
47	모로코	1998. 10. 30.	2001. 4. 1.
48	포르투갈	1998. 9. 11.	2001. 4. 1.
49	오스트리아	1999. 11. 8.	2002. 4. 1.
50	트리니다드토바고	1999. 2. 8.	2000. 4. 1.
51	키르기스스탄	1999. 4. 13.	2002. 4. 1.
52	요르단	1999. 4. 20.	2000. 4. 1.
53	카타르	1999. 4. 7.	2001. 4. 1.
54	우크라이나	1999. 4. 7.	2002. 4. 1.
55	아일랜드	2000. 11. 6.	2002. 4. 1.
56	슬로베니아	2003. 1. 13.	2006. 4. 1.
57	수단	2003. 10. 22.	2005. 4. 1.
58	아르메니아	2003. 10. 31.	2005. 4. 1.
59	헝가리	2003. 11. 3.	2006. 4. 1.
60	우간다	2004. 4. 30.	2005. 4. 1.
61	부탄	2005. 11. 13.	2011. 4. 1.
62	몰디브	2005. 11. 13.	2011. 4. 1.
63	파키스탄	2005. 11. 13.	2011. 4. 1.
64	네팔	2005. 11. 27.	2011. 4. 1.
65	사우디아라비아	2006. 1. 25.	2007. 4. 1.
66	보츠와나	2006. 12. 8.	2008. 4. 1.
67	몬테네그로	2006. 2. 8.	2009. 4. 1.
68	세르비아	2006. 2. 8.	2009. 4. 1.
69	세르비아몬테네그로	2006. 2. 8.	2009. 4. 1.
70	쿠웨이트	2006. 6. 15.	2008. 4. 1.
71	아이슬란드	2007. 11. 23.	2008. 4. 1.
72	멕시코	2007. 9. 10.	2011. 4. 1.
73	타지키스탄	2008. 11. 20.	2010. 4. 1.

〈표 2-3-2〉의 계속

순번	국가	체결일	시행연도(일)
74	탄자니아	2008. 11. 20.	2010. 4. 1.
75	미얀마	2008. 4. 2.	2010. 4. 1.
76	시리아	2008. 6. 18.	2009. 4. 1.
77	룩셈부르크	2008. 6. 2.	2010. 4. 1.
78	핀란드	2010. 1. 15.	2011. 4. 1.
79	모잠비크	2010. 9. 30.	2012. 4. 1.
80	노르웨이	2011. 2. 2.	2012. 4. 1.
81	콜롬비아	2011. 5. 13.	2015. 4. 1.
82	에티오피아	2011. 5. 25.	2012. 4. 1.
83	대만	2011. 7. 12.	2012. 4. 1.
84	리투아니아	2011. 7. 26.	2013. 4. 1.
85	조지아	2011. 8. 24.	2012. 4. 1.
86	에스토니아	2011. 9. 19.	2013. 4. 1.
87	우루과이	2011. 9. 8.	2014. 4. 1.
88	말레이시아	2012. 5. 9.	2013. 4. 1.
89	인도네시아	2012. 7. 27.	2017. 4. 1.
90	스리랑카	2013. 1. 22.	2014. 4. 1.
91	북마케도니아	2013. 12. 17.	2015. 4. 1.
92	루마니아	2013. 3. 8.	2014. 4. 1.
93	몰타	2013. 4. 8.	2015. 4. 1.
94	알바니아	2013. 7. 8.	2014. 4. 1.
95	라트비아	2013. 9. 18.	2014. 4. 1.
96	피지	2014. 1. 30.	2015. 4. 1.
97	대한민국	2015. 5. 18.	2017. 1. 1.(한국) 2017. 4. 1.(인도)
98	태국	2015. 6. 29.	2016. 4. 1.
99	키프로스	2016. 11. 18.	2017. 4. 1.
100	케냐	2016. 7. 11.	2018. 4. 1.
101	이란	2018. 2. 17.	2021. 4. 1.
102	홍콩	2018. 4. 19.	2019. 4. 1.

자료: PwC, *Hong Kong Master Tax Guide 2019/20*, Wolters Kluwer, pp.1124~1140 내용 일부 발췌

### 3. 일방적 이중과세 방지조치

이중과세와 관련한 구제는 이러한 양국의 쌍방적 조치 외에도 인도의 일방적 조치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적용 가능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 방식을 통해 일방적 구제가 제공되는데, 이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되어 해운 또는 항공 운송 소득만을 다루는 조약과 같이 인도와 제한된 조세조약만 체결한 국가의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일방적인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인도 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의 과세당국이 부과한 소득세와 관련하여 인도 거주자는 일방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구제 대상이 되는 외국 소득세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해당 국가의 지방당국이 이익에 부과하는 초과이익세 또는 사업이익세가 포함된다.

인도 소득세에 대해 허용되는 공제는 인도와 상대국 중 세율이 더 낮은 방향으로 제공된다. 인도 세율은 이중과세 감면 후 인도 소득세법상의 공제를 적용한 후 총소득에 대한 평균 세율을 의미하며, 외국 세율은 모든 경감 금액을 공제한 후 외국에서 실제로 지불한 소득세 및 초과 세금을 이중과세 감면 전 외국에서 평가된 전체 소득금액으로 나눈 세율을 의미한다.

### 일방적 구제 조치에 의한 이중과세 감면 금액 산출 예시

기업 X는 인도와 해외 모두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2012/13년 동안, 500,000루피의 인도 과세대상 소득과 100,000루피에 상당하는 해외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 해외 과세소득의 경우 외국에서 20%의 최종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 이때 인도와 해당 국가 사이에 적용 가능한 소득세 조약이 없을 경우, 일방적 조치에 의한 구제가 허용되며, 감면 금액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산출된다.

(단위: 루피, %)

	인도	상대국
각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	500,000	100,000
각국의 과세대상 소득	600,000 <sup>1)</sup>	100,000
각국의 납부세액	185,400	20,000 <sup>2)</sup>
과세 대상 소득 대비 납부 세액	30.9%	20%
이중과세 소득	100,000	
적용 세율	20% <sup>3)</sup>	
이중과세 감면 금액	20,000	

주: 1) 인도 국내 발생 소득 50만루피와 국외 발생 소득 10만루피를 합산한 소득

2) 소득 발생국가의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세액

3) 인도와 상대국 중 과세 대상 소득 대비 납부 세액 비율이 낮은 국가의 비율을 채택함

자료: IBFD, "Indi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7.2.6.1. Business profits",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in\\_s\\_007.html%23cta\\_in\\_s\\_7.2.6.1.](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in_s_007.html%23cta_in_s_7.2.6.1.), 검색일자: 2022. 8. 1. 표 저자 재구성

이러한 외국 세액공제(FTC)는 해당 소득이 인도에서 과세대상이 되거나 과세대상이 된 해에 허용되며,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원에 대해 별도로 계산된다. 납부한 국외 세금은 납부 또는 공제된 날의 전신환 매입 환율로 환산하며, i) 인도 외 국가의 전년도 과세대상 소득 내역서, ii)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 또는 납부한 국외 세금 확인서식(form 67), iii) 소득의 성격 및 납세자가 공제 또는 납부한 세금 금액을 명시한 증명서, iv) 세무당국 또는 해당 세금 공제 책임자 또는 납세자가 서명한 증명서와 같은 증빙 자료의 제출이 요구된다. 또한 납세자가 국외 세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이 해결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세액공제(FTC)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납세자는 분쟁 해결과 관련한 증빙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 제4장 | 기타조세

### I 연방정부 소비세

#### 1. 과세대상<sup>125)</sup>

연방정부 소비세(central excise duty)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생산 및 판매에 부과되며 연방정부 부가가치세(CENVAT)이라고도 한다. 2017년 GST가 도입되면서 연방정부 소비세 또한 GST에 통합되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한 GST는 의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날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유보되어,<sup>126)</sup> 연방정부 소비세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아직 존재한다.

소비세는 상품이 이송될 때 소매업체 또는 중간 유통업체가 고객에게 징수하는 간접적인 형태의 과세로, Central Excise Act 1944와 Central Excise Tariff Act 1985의 두 가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연방정부 소비세의 징수 및 관리는 '중앙 간접세 및 관세 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이하 CBIC)'가 담당한다.

현재 연방정부 소비세는 i) 상품 제조업체, ii) 고용된 노동자가 제조한 물품을 수령한 업체, iii) 제3자가 제조한 상품을 보유한 업체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현재는 주류, 담배, 원유, 고속 경유(high speed diesel), 휘발유, 천연가스 및 항공터빈연료의 공급에 대한 GST 과세가 유보된 주류, 담배, 원유, 고유황경유(high sulfur diesel), 휘발유, 천연가스 및 항공터빈연료 등과 함께 금, 은 등의 품목에 과세되고 있다.

#### 2. 세율

연방정부 소비세는 1985년 연방정부 소비세법(Central Excise Tariff Act, 1985) Schedule I과 II에 각각 규정된 i) 기본 소비세와 ii) 특별소비세, 1957년 추가 소비세법(Additional

125) Groww, "Excise Duty", <https://groww.in/p/tax/excise-duty>, 검색일자: 2022. 11. 22.

126)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 §9(1),(2)

Duties of Excise Act of 1957) 제3조에 규정된 iii) 추가 소비세의 3가지로 구성된다. 2022년 12월 현재 유류 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연방정부 소비세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4-1〉 인도의 연방정부 소비세 세율

	기본소비세	특별소비세	추가소비세
원유	① 1루피/미터톤 ② ①의 20% ③ 50루피/미터톤 ①,②,③의 합산	4900루피/미터톤	-
휘발유	1.40루피/리터	11.00루피/리터	Rs.5.00루피/리터
휘발유(브랜드)	2.60루피/리터	11.00루피/리터	5.00루피/리터
(황)경유	1.80루피/리터	8.00루피/리터	2.00루피/리터
(황)경유(브랜드)	4.20루피/리터	8.00루피/리터	2.00루피/리터
항공터빈연료	11%	-	-
천연가스	0%	-	-
액화천연가스	0%	-	-
압축천연가스	14.0%	-	-

자료: Petroleum Planning & Analyss Cell, "Excise Duty - PPAC (Dec 5, 2022)", [https://www.ppac.gov.in/WriteReadData/userfiles/file/PP\\_2\\_CustomsExciseTariff.xls](https://www.ppac.gov.in/WriteReadData/userfiles/file/PP_2_CustomsExciseTariff.xls), 검색일자: 2022. 12. 5.

### 3. 신고 및 납부

소비세는 상품이 반출될 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소비세는 2002년 연방 소비세(개정) 규칙 8호에 따라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창고 또는 공장에서 가져온 날의 익월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비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익월 6일이며, 3월에 한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당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경우 CBIC의 조세 전자회계 시스템(EASIEST)을 이용하여 다음 단계로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sup>127)</sup>

- ① 1단계: EASIEST 접속 후 e-payment

127)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Electronic Payment of Central Excise Duty and Service Tax through EASIEST", <https://www.cbic.gov.in/htdocs-cbec/epaymnt-easiest-21dec2018>, 검색일자: 2022. 11. 21.

- ② 2단계: 부여받은 납부번호 입력
- ③ 3단계: 주소, 이름 및 관할 지역 등 세부 정보를 입력
- ④ 4단계: 세목(연방정부 소비세) 선택(6개까지 선택 가능)
- ⑤ 5단계: 결제 가능한 금융기관 선택
- ⑥ 6단계: 화면에 표시된 정보 확인
- ⑦ 7단계: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연결
- ⑧ 8단계: 납부 세액 및 계좌 입력
- ⑨ 9단계: 납부 완료 후 납부서 부분(납부서 확인번호, 결제내역, 은행 정보 등 포함) 생성
- ⑩ 10단계: EASIEST에서 납부서 조회 기능을 사용하여 납부 상태를 확인

#### 4. 제재

연방정부 소비세 과세대상 상품을 제외시키거나, 회계 처리하지 않거나, 제조에 사용되는 투입물 또는 자본재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적절한 증빙 없이 공제하는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제조자나 생산자에게는 상품의 몰수와 함께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1만루피 중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sup>128)</sup> 또한 회피한 세액이 500만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sup>129)</sup>

## II 인지세

### 1. 과세대상

인도의 인지세는 연방정부 법령인 1899년 인지세법(The Stamp Act 1899)을 통해 그 내용이 통합되었으며, 1925년 인지세 규정(The Indian Stamp Rules 1925)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졌다.

인도의 인지세 과세 권한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모두 가지고 있으며, 각 주는 연방정부의 인지세법을 고유한 거래에 적합한 개정과 함께 채택할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구자라트

128) Central Excise Rules 1944 §209

129) Groww, "Excise Duty", <https://groww.in/p/tax/excise-duty>, 검색일자: 2022. 11. 22.

주, 마하라슈트라 주, 카르나타카 주, 케랄라 주, 라자스탄 주와 같은 주들은 별도의 주 인지법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주 인지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인지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잠무 카슈미르주를 제외한 인도 전역에서 인지세가 과세되고 있다. 2004년 금융법에서는 ‘인지’를 주정부에 의해 공인된 기관 또는 개인에 의한 마크, 인감 또는 서명을 삽입하는 접착 또는 날인식 도장으로 정의한다.<sup>130)</sup>

인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포함된다.<sup>131)</sup>

- ① 모든 권리 또는 책임이 생성, 양도, 제한, 확장, 소멸 또는 기록되는 모든 문서
- ② 모든 권리나 책임이 생성, 양도, 제한, 확장, 소멸 또는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 거래소 또는 보관소의 거래를 위해 작성된 전자 문서
- ③ 인지세법 부칙 I(Schedule I)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채 증명서 및 채권, 입양 증서 등

## 2. 세율<sup>132)</sup>

아래는 연방정부 인지세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지세 세율이며, 주 인지세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에 근거하여 과세된다.

### 가. 정관 등

회사 협회의 각서는 인도 회사법에 따른 협회의 정관이 첨부된 경우 15루피, 그렇지 못한 경우 40루피가 부과되며, 회사 협회의 정관에는 25루피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 나. 동산 및 부동산의 양도, 채권

채권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며, 동산 및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인지세는 재산의 실제 가치가 아닌 양도증서에 기재된 가치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세무당국은 등

130) IBFD, “Indi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4.3. Stamp duty”,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in\\_s\\_014.html%23cta\\_in\\_s\\_14.3.](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in_s_014.html%23cta_in_s_14.3.), 검색일자: 2022. 11. 3.

131) Indian Stamp Act 1899 §1(14)

132) IBFD, “Indi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4.3. Stamp duty”,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in\\_s\\_014.html%23cta\\_in\\_s\\_14.3.](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in_s_014.html%23cta_in_s_14.3.), 검색일자: 2022. 11. 3.

록기관이 등록한 문서를 세무당국에 보낸 후에는, 인지세의 적절한 부과를 위해 양도된 재산의 가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표 2-4-2〉 동산 및 부동산 양도와 채권에 적용되는 연방정부 인지세 세율

(단위: 루피)

과세대상 가치	채권			양도 <sup>1)</sup>
	보증 또는 별도의 양도 증서에 따른 채권	인도에 따른 채권	기타 담보 가치가 있는 채권	
1~10	0.20	0.75	0.12	0.50
11~50	0.40		0.25	
51~100	0.75	1.50	0.50	1.00
101~200	1.50	3.00	1.00	2.00
201~300	2.25	4.50	1.50	3.00
301~400	3.00	6.00	2.00	4.00
401~500	3.75	7.50	2.50	5.00
501~600	4.50	9.00	3.00	6.00
601~700	5.25	10.50	3.50	7.00
701~800	6.00	12.00	4.00	8.00
801~900	6.75	13.50	4.50	9.00
901~1000	7.50	15.00	5.00	10.00
1,000루피 초과 매 500루피마다	3.75	7.50	2.50	5.00

주: 1) 주식을 제외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모든 수단과 매매를 포함함  
 자료: IBFD, "Indi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4.3.2 Rates",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in\\_s\\_014.html%23cta\\_in\\_s\\_14.3.2.](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in_s_014.html%23cta_in_s_14.3.2.), 검색일자: 2022. 11. 3.

#### 다. 주식의 양도

법인 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 100루피마다 0.75루피를 과세하며,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액면가 금액에 대해 동산 및 부동산의 양도 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의 50% 수준의 세금을 과세한다.

#### 라. 신용장, 보증 및 계약서

신용장의 경우 2루피, 정부 증권 및 법인 주식에 관한 매각 계약의 경우 1만루피당 0.06루피로 최대 10루피까지, 다른 계약의 경우 0.5루피의 세금이 과세된다.

### 마. 임대 증서

전대를 포함하는 모든 임대 계약 증서에 대해서도 인지세가 부과되며, 고정된 임대료에 대해 임대기간이나 보험료 및 요금, 선납금 등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된 인지세가 부과된다.

〈표 2-4-3〉 임대 증서에 적용되는 인지세 세율

임대기간 및 기타 요금 여부	적용되는 세율
1년 미만	전체 금액에 대해 기타 채권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함
1년 이상 3년 이하	평균 연간 임대료에 대해 기타 채권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함
3년 초과	평균 연간 임대료에 대해 동산 및 부동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함
무기한	첫 10년간 지불 예정인 평균 연간 임대료에 대해 동산 및 부동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함
영구 임대	첫 50년간 지불 예정인 전체 임대료의 20%에 대해 동산 및 부동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함
임대료 없이 보험료나 이용 요금, 선금 등만 납부하는 경우	이용료, 요금, 선금금의 금액에 대해 동산 및 부동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함
임대료와 보험료나 이용 요금, 선금 등을 함께 납부하는 경우	이용료, 요금, 선금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임대에 대해 과세되어야 하는 세금 외에, 이용료, 요금, 선금금의 금액에 대해 동산 및 부동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함

자료: IBFD, "Indi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4.3.2 Rates",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in\\_s\\_014.html%23cta\\_in\\_s\\_14.3.2.](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in_s_014.html%23cta_in_s_14.3.2.), 검색일자: 2022. 11. 3.

### 마. 파트너십 및 대출 증서

파트너십과 관련한 증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루피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파트너십의 자본이 500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5루피, 파트너십의 해산에는 5루피가 과세된다. 또한 대출 증서는 증서 또는 그에 포함된 재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자에 의해 부여된 경우 동산 및 부동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로, 이와 같은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기타 채권에 적용되는 세율로 인지세가 부과된다.

### 3. 신고 및 납부<sup>133)</sup>

인도에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문서는 집행 전 또는 집행 시점에 인지를 날인해야 하며,<sup>134)</sup> 인지는 증서의 첫 페이지에 날인되거나 대상이 되는 증서를 지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별도의 용지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신고 방식은 인지세 신고 및 날인의 온라인 진행 여부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가. 물리적 방식

납세자가 공인된 인지세 기관을 방문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지류 형태의 인지를 발급받는 방식이다. 인지는 접착식 인지나, 별지로 인쇄되는 인화식 인지, 혹은 날인 등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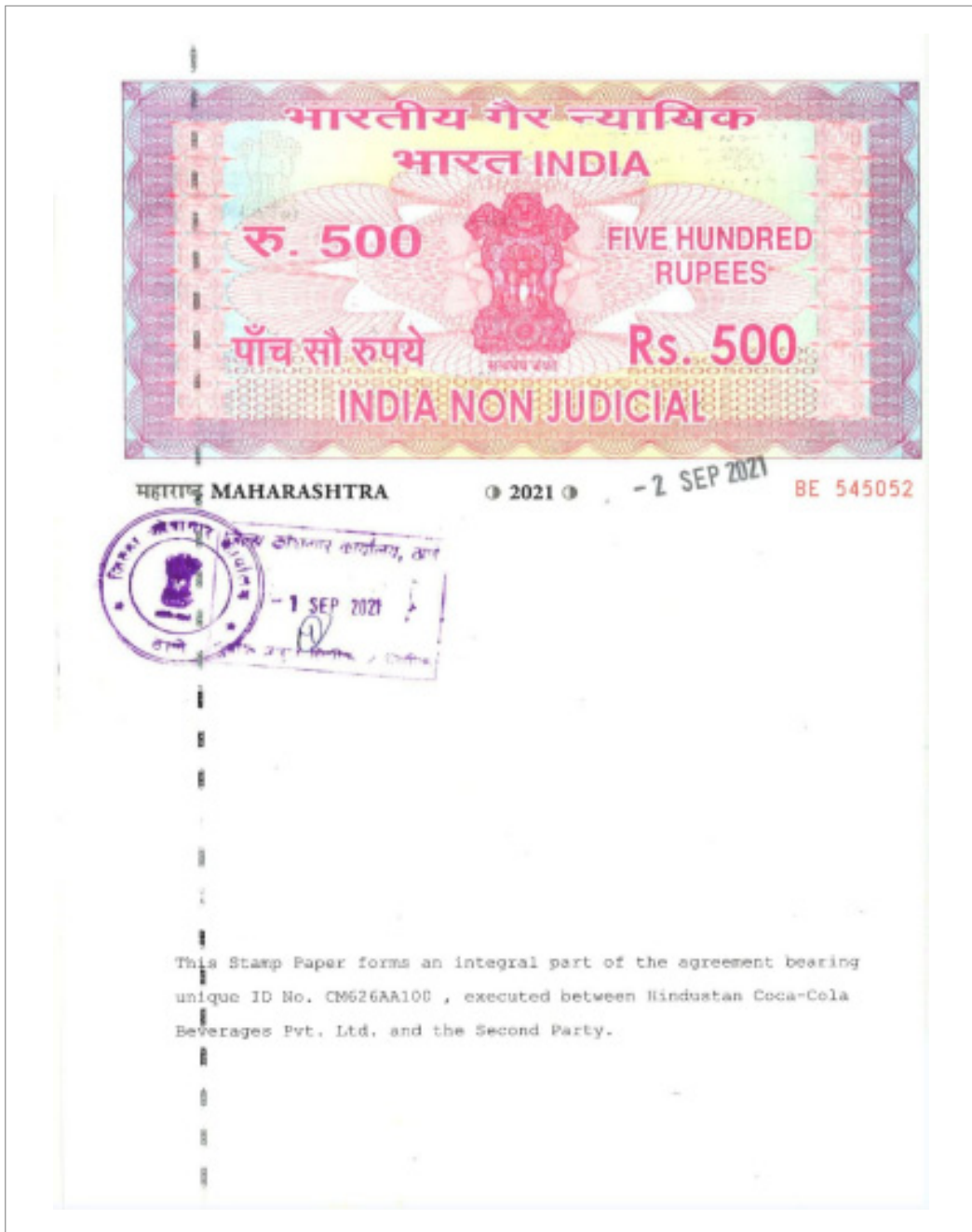
인화식 인지는 인지세 납부 후 해당 보안 인쇄기를 보유한 공인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좌측에 보안 스트립 기능까지 포함하는 별지 형태로 인쇄되어 복제가 불가능하다. 가장 많은 주에서 오랫동안 활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인화식 인지는 과세대상 증서의 첫 페이지가 되며, 납세액, 인지가 발행된 주, 인지 번호와 같은 정보가 기재되기도 한다.

([그림 2-4-1] 참조)

133) Leegality, "How to pay stamp duty in India - a comprehensive guide", <https://www.leegality.com/blog/stamp-duty-online>, 검색일자: 2022. 11. 3.

134) Indian Stamp Act 1899 §1(14)

[그림 2-4-1] 물리적 인지 예시(인화식 인지)



자료: Leegality, "How to pay stamp duty in India - a comprehensive guide", <https://www.leegality.com/blog/stamp-duty-online>, 검색일자: 2022. 11. 3.

날인의 경우 정부가 승인한 자동 날인 기계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인지세 납부 후 날인 기계를 보유한 하위 등록기관의 사무실이나 특정 은행에 과세대상 증서를 제출하여 붉은색 인장을 인쇄한다. 마하라슈트라, 서벵골, 텔랑가나와 같은 주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납세자의 이름 및 주소, 납부한 인지세 세액, 날인 기관의 라이선스 번호 등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그림 2-4-2) 참조).

[그림 2-4-2] 물리적 인지 예시(날인 형식)



자료: Leegality, “How to pay stamp duty in India - a comprehensive guide”, <https://www.leegality.com/blog/stamp-duty-online>, 검색일자: 2022. 11. 3.

#### 나. e-스탬핑

e-스탬핑은 ‘인도 주식 지주공사(Stock Holding Corporation of India, 이하 SHCIL)’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납세자가 인지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전자적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 그곳에서 실물 인지를 발급받는 형태이다. 현재 구자라트, 카르나타카, 우타라칸드, 델리, 차티스가르, 라자스탄 등의 주에서 e-스탬핑을 활용하고 있다.

e-스탬핑은 인쇄식 인지와 마찬가지로 별지 형태로 발급되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인지 발급을 진행할 수 있다.

- 1단계: SHCIL의 허가를 받은 공인 인지 발급기관 방문
- 2단계: 기관에 납세자가 필요한 인지 금액과 수량을 전달
- 3단계: 납세자가 인지세와 수수료를 인지 발급기관에 납부하면, 기관은 자신의 SHCIL 계정을 사용하여 인지세 납부를 완료
- 4단계: 인지 발급기관은 e-스탬프 인증서를 인쇄하여 제공

[그림 2-4-3] e-스탬핑 예시

INDIA NON JUDICIAL	
Government of 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	
e-Stamp	
Certificate No.	: IN-DL18456703091060T
Certificate Issued Date	: 02-Sep-2021 05:57 PM
Account Reference	: IMPACC (IV)/dl732103/ DELHI/ DL-DLH
Unique Doc. Reference	: SUBIN-DLDL73210333446745032256T
Purchased by	: Waterfield Fund Managers Private Limited
Description of Document	: Article 5 General Agreement
Property Description	: Not Applicable
Consideration Price (Rs.)	: 0 (Zero)
First Party	: Waterfield Fund Managers Private Limited
Second Party	: CUSTOMER
Stamp Duty Paid By	: Waterfield Fund Managers Private Limited
Stamp Duty Amount(Rs.)	: 500 (Five Hundred only)

सत्यमेव जयते

.....Please write or type below this line.....

This Stamp Paper forms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bearing unique ID No. XH601AAD52 executed between Waterfield Fund Managers Private Limited and the customer

**Statutory Alert:**

1. The authenticity of this Stamp certificate should be verified at [www.ehowtostamp.com](http://www.ehowtostamp.com) or using e-Stamp Mobile App of Stock Holding. Any discrepancy in the details on this Certificate and as available on the website / Mobile App renders it invalid.
2. The onus of checking the legitimacy is on the users of the certificate.
3. In case of any discrepancy please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y.

자료: Leegality, "How to pay stamp duty in India - a comprehensive guide", <https://www.leegality.com/blog/stamp-duty-online>, 검색일자: 2022. 11. 3.

다. 디지털 인지

인지세 납부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인지 역시 디지털 방식으로 랜더링되는 방식으로, 하리아나 주에서 2017년부터 이러한 형식의 전자 스탬핑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리아나 주가 발급하는 디지털 인지는 발급 후 스캔하여 문서에 부착하는 추가적인 단계 없이 전자문서에 쉽게 첨부할 수 있다.

[그림 2-4-4] 하리아나 주의 디지털 인지 예시



자료: Leegality, “How to pay stamp duty in India - a comprehensive guide”, <https://www.leegality.com/blog/stamp-duty-online>, 검색일자: 2022. 11. 3.

‘국가 e-거버넌스 서비스(National e-Governance Services Limited, 이하 NeSL)’는 2016년 ‘지급 불능 및 파산법’에 근거하여 시작된 금융 신용 계약에 대한 법적 증빙자료 저장소로, 모든 은행 및 기타 기관은 신용 사업에 대한 디지털 기록을 이곳에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따라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 실행 시 신용 거래의 모든 문서가 NeSL의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법적으로 유효한 증빙이 되며, NeSL은 개인이 원격으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종이 없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안 디지털 문서 실행(DDE) 기능을 포함시켰다. 금융기관은 이와 같은 NeSL의 DDE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디지털 스탬핑 솔루션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대출 문서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다.

[그림 2-4-5] NeSL의 디지털 인지 예시



자료: Leegality, "How to pay stamp duty in India - a comprehensive guide", <https://www.leegality.com/blog/stamp-duty-online>, 검색일자: 2022. 11. 3.

### III 증권거래세

#### 1. 과세대상<sup>135)</sup>

공인된 모든 증권거래소 및 뮤추얼 펀드 또는 보험회사의 지정된 거래자와 최초 공모 및 영업신탁의 최초 모집과 관련하여 선임된 투자금융회사의 직원은 과세대상 증권거래를 체결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증권거래세법」 제98조에 명시된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징수해야 한다.

#### 2. 세율<sup>136)</sup>

과세대상 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의 가치에 대해 다음 표에 표기한 세율로 증권 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 중 하나에게 납세 의무가 부과되며, 다음 표의 두 번째 열에 각 거래에 대한 납세 의무자를 표시하고 있다.

〈표 2-4-4〉 인도의 증권거래세 세율

(단위: %)

과세 대상 증권 거래	납세자	세율
회사 또는 영업신탁의 주식 구매 시	구매자	0.1
회사 또는 영업신탁의 주식 매각 시	판매자	0.1
주식형 펀드의 매각 시	판매자	0.001
회사의 지분이나 주식형 펀드(또는 영업신탁)의 지분 매각 시	판매자	0.025
유가증권의 옵션 매각 시	판매자	0.017
유가증권의 행사되는 옵션의 시	구매자	0.125
증권 선물의 매각 시	판매자	0.01
주식형 펀드를 뮤추얼 펀드에 매각 시	판매자	0.001
증권거래세법 제97조 13(aa)의 매각 제안에 따른 비상장 주식의 매각 시	판매자	0.2
증권거래세법 제97조 13(aa)의 매각 제안에 따른 영업신탁의 비상장 단위 매각 시	판매자	0.2

자료: Securities Transaction Act §98

135) Securities Transaction Act §100

136) Securities Transaction Act §98

### 3. 이자 및 과태료

증권거래세를 기한 내에 입금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가 지연된 세액에 대해 월 1%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sup>137)</sup> 그리고 증권거래세 미납 시 이자 외에도 미납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1일 1천루피 혹은 불이행된 세액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sup>138)</sup>

---

137) Securities Transaction Act §104

138) Securities Transaction Act §105



• 신흥국의 세정연구 인도 •

# 제3편 투자환경, 투자정책 및 투자이슈

제1장 투자환경

제2장 외국인 투자정책 및 투자이슈



## 제1장 | 투자환경(139)140)

### I 입지

#### 1. 입지여건 및 비용

한국과 인도는 지난 10년 동안 경제적, 지정학적 관계를 크게 강화하였으며, 2009년 양국은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CEPA)을 체결함으로써 분쟁해결 기반을 마련하여 투자 및 비차별 조약에 대한 불법 전용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 오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에 대한 세부 내용을 통상산업부 내 산업진흥국(DPIIT)에서 정책 규정(Consolidated FDI Policy Circular)으로 발표하고 매년 2월 발표 및 수시로 개정 내용을 고시하고 있어, DPIIT 웹사이트에서 외국인직접투자정책 규정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인도는 유럽, 아시아, 미주지역 국가 47개국 대상으로 실시한 cushman & wakefield's 2021 world manufacturing risk index 조사에서 제조업하기 좋은 국가 2위에 선정('21.8) 되었으며, 딜로이트의 글로벌기업 1,2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인도가 긍정적인 성장 전망과 숙련된 노동력으로 인해 투자유망국가로 선정('21.9)되기도 하였다.

인도 정부의 사업 환경 개선 노력에 따라 세계은행 사업용이성 평가에서 인도 순위는 '17년 130위, '18년 100위, '19년 77위, '20년 63위로 상승하였으며, 중국, BRICS 및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요 신흥국과 비교 시 중국을 제외하고 꾸준히 높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 전용 투자지역과 단지는 별도 존재하지 않으며, 투자 인센티브는 주정부에서 투자기업과 협상을 통해 제공한다.

139) KOTRA, 『2019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2019

140) KOTRA, 『인도 주요 주별 인센티브 안내서』, 2022

## 2. 주요 주별 부지 인센티브

인도는 28개주 8개 연방직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별로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부지 매입비용을 공시하고 저렴한 가격에 전기, 산업용수, 석유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 전역에 4,527개의 산업단지, 11.4만헥타르 규모의 산업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타밀나두,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3주 순으로 많은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부지 확인은 전용 웹사이트<sup>141)</su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자라트 주(州)정부는 구자라트주 산업개발공사(GIDC) 산업부지, 민간 산업단지, 물류 단지, SEZ(특별경제구역) 및 SIR의 세부정보를 구자라트 토지은행 홈페이지<sup>142)</sup>에 제공 및 지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해 “주정부 소유 용지”를 최장 50년간 시장시세의 6%로 산업기관에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라자스탄 주(州)정부는 토지 용도변경 및 토지 전환시 수수료 100%를 면제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근로자용 기숙사 주택 건설 시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하라슈트라 주(州)정부는 토지 할당 시 주요 산업 위주로 할당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안드라 프라데시 주(州)정부는 토지의 경우 33년간 임대하며, 투자액이 10억루피를 초과한 경우와 프로젝트의 회임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10년 후 토지를 완전매입할 수도 있다.

우타르 프라데시 주(州)정부는 산업농지, 농업단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대출이자의 연 50%를 7년간 최대 500만루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출이자의 연 60%를 7년간 최대 5억루피, 근로자 호스텔, 기숙사 건축을 위한 대출이자의 연 60%를 7년간 최대 3억루피까지 이자 보조금을 지급한다.

카르나타카 주(州)정부는 임대증서, 판매증서 등기 비용을 1천루피당 1루피로 계산하여 토지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간 투자자가 농업용지를 공업지역 용도로 전환 시 토지전환 수수료를 75~100% 환급한다.

케랄라 주(州)정부는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산업단지에 100만평 피크 규모의 다층 표준공장(SDF)을 건설할 예정이며, 부지 초과사용 또는 미사용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타밀나두 주(州)정부는 산업진흥공사(SIPCOT)에서 부지사용 적격대상으로 판정할 경우

141) India Industrial Land Bank, <https://iis.ncog.gov.in>, 검색일자: 2022. 12. 20.

142) Gujarat Land Bank, <https://gujarat.ncog.gov.in>, 검색일자: 2022. 12. 20.

A 및 B지역은 토지가격의 10%, C지역은 토지가격의 50%로 토지를 제공하고 있다.

편잡 주(州)정부는 토지 할당을 투명하게 시행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Business First' 포털에서 이용 가능한 산업용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토지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하리아나 주(州)정부는 메가 또는 울트라 메가 프로젝트 사업 제안자가 20년 이상 인도 또는 해외에서 수입대체 물품 제조업에 종사한 경우 하리아나 주 산업개발(HSIIDC)은 C&D 지역 토지를 최대 50%, B지역 토지는 최대 25%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하며, 민간기업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권 확인제도가 존재한다.

## II 노무

### 1. 임금수준

#### 가. 개황

인도의 평균 임금이나 최저임금은 주요 도시별, 주별,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기업의 급여가 중소기업 급여에 비해 약 30% 정도 높은 편이다.

인도의 공장 노동자 기준 평균 연봉은 2,359달러로 태국(7,632달러), 인도네시아(5,735달러)보다 낮고 중국(7,479)의 32%로 수준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공무원의 임금 인상에 물가상승률을 100%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도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 나. 최저임금

인도정부는 최저임금법(Minimum Wages Act, 1948)에 의거하여 몇 년에 한번씩 최저임금을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주(州) 정부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인도의 최저임금액은 정확하게 통일된 숫자로 나오지 않으며 산업분야 직업별, 숙련, 비숙련, 반숙련 근로자인지 여부, 주별로 수치가 다르다.

인도는 치솟는 물가에 비해 2022년 인도 전역 평균 최저임금은 하루당 178루피(한화 3

천원)로 2019년 이후 4년 동안 동결된 상태이다.

#### 다. 산업별 평균 임금

인도 근로자 급여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22년 인도의 평균 연봉은 387,500루피이고 평균 월급은 32,840루피이다. IT 계열의 평균 임금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항공기 조종사가 가장 높은 평균 연봉을 받는다.

## 2. 인도의 노동시장

### 가. 노동인구

인도의 노동인구는 약 9억명에 달하며 이는 2021년 인도 총인구 13.93억명의 64.6%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7년 46% 수준이었으나 2022년 현재 40%까지 급락했다고 몸바이 '인도경제 모니터링센터(CMIE)'에서 밝혔다. 이처럼 인도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일자리 창출 속도가 노동인구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급증하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9,000만 개의 새로운 비농업일자리와 8~8.5%의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나. 교육수준

모디정부는 2020년 7월 1986년에 만들어진 교육정책을 개편하여 새로운 국가교육정책을 발표하였다. 3~8세 기초단계는 액티비티 기반 학습 수업, 3~5학년(8~11세) 준비단계는 말하기, 읽기, 체육, 과학 및 수학 수업, 6~8학년(11~14세) 중등단계는 수학,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수업, 9~12학년(14~19세) 2차단계는 비판적 사고 등 심화과정과 복합적인 수업을 진행하여 단순암기보다는 비판적 사고와 전 세계적 추세인 다수학과의 융복합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다. 실업률 및 이직문화

2022년 인도의 실업률은 약 8%이다. 인도의 노동시장은 한국과는 달리 굉장히 유연하므로 해고 또는 사직으로 인한 이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인도 근로자의 상당수가 잦은 이직

을 하는 편이며, 중간관리자급은 50%의 이직률을 보이고 주니어 직급에서는 20~35% 이직률을 보인다.

### 3. 사회보험제도

#### 가. 사회보험제도 종류

인도의 사회보험제도는 개인을 위한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다.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사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한국과 같이 평상시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산재보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보험료 부담 및 보상

근로장려금 및 기타 충당금법인 EPF(Employees' Provident Funds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52) 국민연금은 20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여 15,000루피 이하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급여의 12%를 노동자와 기업측이 각각 부담한다.

### 4. 노무관리

#### 가. 채용관련 법규

인도의 노동법은 급여, 근무시간, 징계규정 및 고충처리 해소 절차, 해고통지기간, 휴가, 보험제공, 연금 및 기타 고용조건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인도는 복잡한 노동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2021년 노동법을 개편하여 현행 29개의 연방 노동관련 법률을 임금법, 사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사관계법 4개의 법률로 통합하였으나 노동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법률 추가 검토를 이유로 시행을 잠정 연기한 상태이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 나. 고용계약

인도는 서면, 구두 또는 명시 묵시적 계약 등 모든 형태의 고용계약에 계약법상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입사일자, 보수, 수습기간, 업무범위, 교육 및 수행규칙, 임무 변경, 연금, 퇴직, 비밀유지, 경쟁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다. 고용계약은 사업시설, 공장인지 여부, 해당 직원이 근로자, 관리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50인 이상의 상업시설, 100인 이상의 공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고용법이 적용되어 특정 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 다. 근로시간

공장법(The Factories Act, 1948)은 10인 이상 전력 사용 제조공장, 20인 이상 전력비 사용 제조공장에 대해 성인인 경우 일일 9시간, 주당 48시간근무, 100인 이상 공장근로자 근무하는 경우에는 산업고용법을 적용하여 주별로 상이하다. 인도는 산업이나 직종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1일 9시간을 초과하거나 주당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두 배의 임금이 지급된다. 초과근무의 범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지시하였거나, 승낙하였을 경우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초과근무가 아니라면 일요일 근무나 야간근무에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공휴일 근무는 통상 100% 수당이 지급되나 근로자들은 대체적으로 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을 선호한다.

인도의 법정 공휴일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의해 공시되며 통상 연간 10~15일의 공휴일이 있다. 공휴일 외에 별도로 연간 240일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는 20일당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되며 연간 7일의 유급병가가 허용되고 개인 경조사를 위해 7~10일의 임의 휴가가 주어진다.

## 5. 노사분규

#### 가. 노사관계

인도는 노동쟁의와 관련한 다양한 사법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도의 노무 소송은 조정관에서 시작하여 대법원에서 종결된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소송/사건은 해당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제기되며,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에 관련된 소송은 노동법원, 산업재판소, 국가 재판소, 지역법원에서 제기된다.

## 나. 노사분쟁 조정절차

인도의 노동분쟁 해결에 가장 기본은 노동쟁의법이며, 노동분쟁 해결기관은 노동부에서 임명하여 관리한다.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는 행정권만 지닌 조정관, 2~4명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 역할을 수행하는 조정이사회, 모든 지역/주에 설치되어 있고 제1심 재판관이 있는 노동법원, 특수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연방정부, 주정부가 설치하는 특별조사위원회, 노동법원이 내린 판결 명령을 집행하는 민사/집행법원, 노동쟁의법과 별개로 인도 헌법규정을 따라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노동법원의 판결에 불복을 진행하는 고등법원, 선고한 노동관련 판결들을 모든 하급 법원이 따라야 하는 판례 및 원칙을 생산하는 대법원이 있다.

## III 지식재산권

### 1. 지식재산권 개요

인도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식재산권 정책을 도입한 시기는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정책(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2016)을 통해서이다. 동 정책은 지식재산권의 인식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침해 대응을 위한 집행 및 사법제도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의 지식재산권 정책 이행은 산업정책진흥국(상공부 산하)이 특허청 및 지식재산권 진흥관리셀(CIPAM)을 통해 이행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한 행정집행 및 이행, 지식재산권 진흥관리셀은 지식재산권 인식, 상업화 및 정책집행을 촉진하며 부처 협력을 담당한다.

인도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률체계로는 상표법(The Trade Marks Act, 1999),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57), 특허법(The Patent Act, 1970),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상품지리적표시등록보호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 Act, 1999), 반도체 직접회로 레이아웃 설계법(The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Layout Designs Act, 2000), 식물품종 및 농민권리보호법(The Protection of Plants and Varieties and Farmers Rights Act, 2001), 생물다양성법(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이 있다.

## 2.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법령

인도에서 상표의 등록과 보호는 상표법에 따라 보호되며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상용하는 모든 표시이다, 인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상표의 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며 부분상표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등록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권의 양도는 그 전부 또는 부분이 영업권과 함께 또는 영업권 없이 이전이 가능하며, 미등록상표의 경우에도 영업권의 수반 여부 불문하고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인도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및 저작권 규칙에 따라 저작물의 무단사용 또는 복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6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인도의 특허시스템은 특허법 및 특허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허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나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국내단계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된다, 또한 인도는 발명이 아직 실험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가출원이 허용된다.

인도의 산업디자인 등록과 보호는 디자인법에 근거하며 디자인 등록의 존속기간은 최초등록 일로부터 10년이며 최초 10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한 경우 5년이 연장될 수 있다.

## IV 물류

### 1. 해상운송

인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안선이 길고 항구를 통한 물류이동이 많다. 주요 항구로 서해안은 칸들라·뭄바이·모르무가오·뉴망갈로르·코친 등이, 동해안에는 첸나이·비사가·파트남·파라딕·할디아·콜카타 등이 있다. 대표적인 두 항구로는 뭄바이와 첸나이가 있으며, 우리나라 화물도 대부분이 이 두 항구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인도 항만협회에 따르면 FY21/22 주요 항만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7.09% 상승하였으며, 주항구(나비쉐비항, 뭄바이항, 첸나이항)는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의 해상 운송은 무역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중요한 물류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다.

## 2. 항공운송

인도 전국에는 15개의 국제공항이 있으며, 뉴델리, 뭘바이, 콜카타, 첸나이 등 4대 거점 도시와 아메다바드(구자라트 주도), 벵갈루루(카르나타카 주도) 등 주요 대도시에는 국제공항이 존재한다. 인도의 공항시설은 원래 낙후된 시설이었으나 뉴델리공항, 뭘바이 공항이 2010년 영연방 행사를 대비해 공항시설을 현대화한 이후 현재는 벵갈루루, 첸나이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델리와 뭘바이 경우 미주, 유럽, 중동 아시아 각국과 직항편이 매일 운영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간 직항도 매주 3회 정도 운항되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항공 물량은 지난 3월부터 인도 정부가 정기 국제선 여객기 운항을 재개함에 따라 항공 물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3. 육상운송

인도의 도로는 2021년 기준 총길이 622만km로 세계에서 2번째로 길며 인도 전체 운송업 중 도로운송이 전체 47.28%를 차지할 정도로 도로 비중이 크다. 일반도로의 비중이 95%인 반면 국가, 주고속도로 총 비중이 5%로 비교적 낮은편으로 도로 사정은 열악하다. 인도 정부는 IMD의 2020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43위로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2018년 44위 대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전반적인 고용성장, 경상수지, 첨단기술 수출, 외환보유고 등 영역에서 개선을 보였으나 아직 인프라 부분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 인도 정부는 글로벌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항만, 공항, 도로, 철도에 아낌없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 V 공공서비스

인도 전력부에 따르면 인도의 전체 발전설비는 392GW로 화력에너지 발전량이 약 236.1GW로 총발전량의 59.1%를 차지하며, 석탄발전이 51.1%로 주 비중을 보이고 있다. 원자력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5.6GW(39.2%)로 태양열(13.5%), 수력(11.17%), 풍력(10.1%) 순으로 나타난다.

## VI 법인 설립

### 1. 회사설립제도

#### 가. 회사의 종류

인도를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외국기업 신분을 가진 비법인 형태인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지사(Branch Office), 프로젝트 사무실(Project Office) 형태가 있으며, 현지 회사 종류는 주식회사(공개, 비공개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파트너십, 유한책임파트너십), 개인 사업자가 존재한다.

공개주식회사는 주식 공모를 위해 기업 공개를 한 회사나 향후 주식 공모를 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말하며, 7인 이상 주주와 3인 이상의 이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사 중 최소 1인은 회계연도 기준 인도에서 183일 이상 체류한 자(인도인, 외국인 모두)이어야 한다.

공개회사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나뉜다. 비공개 주식회사는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형태로 한국의 상장을 전제하지 않은 주식회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주주와 2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하며, 최소 1인은 회계연도 기준 인도에서 183일 이상 체류한 자(인도인, 외국인 모두)이어야 한다. 주주는 최대 200명을 넘을 수 없으며 비공개회사가 공개회사에 비해 회사 운영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십은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파트너들은 모든 수익을 공동으로 향유하며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 및 각각의 파트너로서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진다. 외국인 및 비거주자는 인도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는 파트너십 형태로 인도에 투자할 수 없다.

유한책임파트너십은 인도 기업으로 간주되며 회사와 파트너십의 특성이 섞여 있는 법인 형태로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없다. 유한파트너십은 회사법을 적용 받지 않고 별도의 유한책임파트너십법을 적용받으며, 최소 2인 이상의 파트너가 필요하며 이 중 1인은 인도에 거주하여야 한다.

#### 나. 회사설립 절차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한국 기업은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를 90% 택하고 나머지 10% 정도가 유한책임파트너십(LLP)을 선택하는 추세이다.

아래 내용은 한국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비공개회사 설립 절차 순서이다.

- ① 전자서명인증서(DSC,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등록
  - 한국의 공동인증서와 유사한 것으로 인도 정보통신부 산하 CCA에서 인정한 6개 대  
행기관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인 이름 사전 등록(RIN, Reserve Unique Name)
  - 인도 정부가 법인 설립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RUN: Reserve Unique Name' 제  
도를 실시하고 있어 과거처럼 많은 서류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법인 이름  
을 사전 등록 가능
- ③ SRN(Service Request Number) 발행
- ④ 법인 설립 신청 서류 제출 - SIPCe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이사 및 주주의 거주지 증명서와 신분증
  - DIR-2(이사 등기 동의서)
  - 이사 및 주주의 협약서
  - MOA와 맵(인도 법인 정관)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실존을 증명할 전기세 또는 관리비 납부영수증
- ⑤ 해외직접투자신고(국내 주거래 은행)
- ⑥ 자본금 인지세 납입
- ⑦ 법인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발급

## 2.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인도는 외환관리법(FEMA, 1999)에 의거, 인도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은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으나 인도에 회계연도 4월 1일과 3월 31일 사이 인도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인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은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인도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을 비공개로 한다.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인도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구매 후 90일 내에 인도 중앙은행에 Form IPI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법에서 정한 부동산 사업은 마을 개발, 주거/ 상업단지 건설, 교육기관 건설, 다리도로 건설,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부동산 임대수수료 수익 등이 있으며,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 사업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토지 또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부동산 사업운영, 농업용 토지 또는 농장부지 구입 등이다.

## 제2장 | 외국인 투자정책 및 투자이슈<sup>143)</sup>

### I 투자정책

#### 1. 외국인투자법

인도 투자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주요 투자 관련 법률로는 산업법, 외환관리법, 회사법, 한-인도 상호조약이 있다. 상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산업법(Industries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51)은 각종 산업별 개발 관련 규제를 망라하고 있는 법률이다. 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 38가지로 분류되며 주요 산업은 금속산업, 연료, 보일러, 전자장비, 기계 등이 있다.

외환관리법(The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은 인도 중앙은행의 외환 규제국이 관장하며, 자본금융거래, 자산 및 청산자금 송금, 해외 자금 차입과 상환에 관련한 모든 외환 유출입을 관리한다.

회사법(The Companies Act, 2013)은 기업부에서 관장하는 법률로 인도회사의 형태, 회사 설립절차, 이사임명, 이사회 운영 등 기업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인도에서 실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규정도 이 법에서 정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 양국 사이의 통상관련 주요 조약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인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10.1.1.발효)로 양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관세의 면제 또는 인하 관련 협정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2016.9.12.발효)으로 인도 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원천징수세율, 이전가격과세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 2. 외국인투자 제외 및 제한업종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 회사에 대한 최고투자 허용 한도 및 분야별 제한은 산업분야에 따

143) KOTRA, 『2022 인도 진출전략』, 2022.

라 상이하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비거주자에 의한 인도 회사 지분참여 자동승인 또는 승인 조건부에 따라 허용된다. 이 경우 FDI 정책에 규정된 특정한도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연금, 보험, 민간항공 등 투자가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100%까지 투자를 허용한다.

### 3. 인도의 투자유치기관

인도 정부의 공식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는 인도 상공부 산업진흥국(DIPP) 산하기관인 Invest India가 담당하고 있다. 2014년 취임한 모디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활성화를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채택하면서 이에 따라 Invest India에 대대적인 정부지원과 조직 확대가 이루어졌다. 양국은 2016년 9월 한국 기업을 위한 투자유치 전담부서인 Korea Plus를 발족시켰으며 2019년에는 인도 총리가 ‘한-인도 스타트업 허브’를 출범시키는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 현재 우수하고 재능 있는 전문가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의 파트너사 발굴, 사업계획 및 자문, 시장조사 및 정보 제공, 인도 주별 산업정책 및 인센티브 정보제공 등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 II 투자이슈

### 1. 인도 정부의 투자이슈

인도 정부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제조업의 GDP 기여율을 25%까지 확대 목표로 ‘Make In India’ 정책을 추진중이며 2020년에는 Make In India 2.0버전인 자주인도(Self-Reliant India) 정책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도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2020~2021년간 주요산업 14개 분야에 대해 인도내 생산을 독려하는 생산연계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s) 정책을 추진해 제조업을 확대하였으며, 인도 투자의 주요 애로사항이었던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방정부 및 주(州)정부의 인프라 계획을 통합하여 Gati Shakti(국가인프라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몇 년간 외국인투자정책 규제 완화를 마련해왔으며, 위성방송분야 100% FDI 허용 및 라이선스 수수료를 총수입의 10%에서 조정 총수입의 80%로 완화(‘20.12), 보험산업 FDI 지분

투자 자동승인 한도를 49%에서 74%로 확대(21.2), 석유가스분야 국영기업이 매각한 지분에 한해 자동승인 경로를 통해 100%까지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 변경(21.7), 통신서비스 및 통신 인프라 제공자에 대한 지분투자 자동승인 한도 허용 및 FDI 100% 사업자가 라이선스 계약 중 통신부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은행보증 경감 제도 시행(21.10), 보험산업 중 생명보험 공사에 대해 자동승인 경로를 통해 20%까지 외국인이 투자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22.3)하는 등 정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인도 정부는 자동차산업 국가계획 2026(Automotive Mission Plan, AMP 2026)을 발표하여 자동차 산업의 GDP 기여도를 12% 증가 및 일자리 창출 5,000만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인도 양국은 현재 200억달러 교역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향후 확대 가능성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기업은 전통적인 수출품목외 다양한 품목 확대가 절실하며,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등 정부 추진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도 필요하다.

### III 유관기관

〈표 3-2-1〉 유관기관

기 관	연 락 처	주 소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 <a href="https://overseas.mofa.go.kr/in-ko/index.do">https://overseas.mofa.go.kr/in-ko/index.do</a> )	+91-11-4200-7000	9, Chandragupta Marg, Chanakyapuri Extension, New Delhi-110021, India
인도 한인회 ( <a href="http://indo.korean.net">http://indo.korean.net</a> )	+91-11-4165-5063	Plo no.90, sector-28, gurgaon,haryana-122001, India
KOTRA 뉴델리 무역관	+91-11-4230-6300	3rd Floor, Asset 307, Worldmark3,Aerocity,New Delhi-110037, India
KOTRA 첸나이 무역관	+91-44-2847-2281	3rd Floor, Bannari Amman Tower, No.29, Dr.Radha Krishnan Road, Mylapore, Chennai 600004, India
KOTRA 뭄바이 무역관	+91-22 4925-5400	1001A, Tower 1, Indiabulls Finance Centre, Senapati Bapat Marg, Elphinstone(W), Mumbai 400 013
KOTRA 벵갈루루 무역관	+91-80-6809-9200	9th Floor, Pinnacle Tower, Embassy One, No. 8, Bellary Road, Ganganagar, Bengaluru, Karnataka 560032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관세청, 『인도 수출통관 알기』, 2019.  
 관세청, 『인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 세법 이해』, 2016.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KOTRA, 『인도 통합부가가치세의 이해』, 2017.  
 KOTRA·관세청, 『인도로 가자! 인도 수출통관 알기: 인도 관세 핸드북』, 2019.  
 KOTRA,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2019.  
 \_\_\_\_\_, 『2022년 인도 비즈니스 가이드』, 2022.  
 \_\_\_\_\_, 『2022 인도 진출전략』, 2022.  
 \_\_\_\_\_, 『인도 주요 주별 인센티브 안내서』, 2022.

### 해외문헌

- Dr. H.C. Mehrotra and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wC, *Hong Kong Master Tax Guide 2019/20*, Wolters Kluwer, 2019.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2020.

### 법률

- Constitution of India(인도 헌법)  
 Central Excise Rules 1944(중앙소비세법)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Act(중앙 물품 및 소비세법)  
 Faceless Assessment Scheme(인도 익명·비대면 세무조사 지침)  
 Income Tax Act 1961(소득세법)  
 Indian Stamp Act 1899(인지법)  
 Integrated Goods and Service Tax Act(통합 물품 및 소비세법)  
 Securities Transaction Act(증권거래법)

### 웹사이트

- 외교부, <https://www.mofa.go.kr>  
 주 인도 대한민국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in-ko/index.do>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무역통계서비스, <https://stat.kita.net>

KOTRA, <https://www.kotra.or.kr>

KOTRA 해외경제정보 Dream, <https://dream.kotra.or.kr>

Aditya Birla Capital, <https://www.adityabirlacapital.com>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https://www.cbic.gov.in>

Clear Tax, <https://cleartax.in>

Coverfox, <https://www.coverfox.com>

Faceless Compliance, <https://facelesscompliance.com>

Groww, <https://groww.in>

GST e-Invoice System, <https://einvoice1.gst.gov.in>

GSTN, <https://gstn.org.in>

GSTzen, <https://www.gstzen.in>

Gujarat Land Bank, <https://gujarat.ncog.gov.in>

IBFD, <https://research.ibfd.org>

Income Tax Department, <https://incometaxindia.gov.in>

Income Tax e-Filing System, <https://www.incometax.gov.in>

India Industrial Land Bank, <https://iis.ncog.gov.in>

Leegality, <https://www.leegality.com>

Lendingkart, <https://www.lendingkart.com>

Petroleum Planning & Analyss Cell, <https://www.ppac.gov.in>

Tax2win, <https://tax2win.in>

World Bank-Data, <https://data.worldbank.org>

## 신흥국의 세정연구 인도

---

발행	행	2022년 12월
발행인	인	김재진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TEL: (044)414-2114(代)
홈페이지	지	<a href="http://www.kipf.re.kr">www.kipf.re.kr</a>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I S B N	N	979-11-6655-170-3
조판및인쇄	쇄	주식회사 다원기획 (044)865-8115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